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연구



이상정
김지민·류정희·김지연·김무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책임자】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지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무현 워싱턴대학교 박사과정

연구보고서 2020-38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연구**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발|간|사

최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2019년도에는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가 도입되는 되는 등 이들의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 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에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가출청소년은 배제되어 있다. 이들 또한 원가정 내의 학대와 폭력, 빈곤이나 가정 해체 등으로 가출이 아닌 '탈출'을 하였고, 장기간 쉼터에서 생활하여 부모,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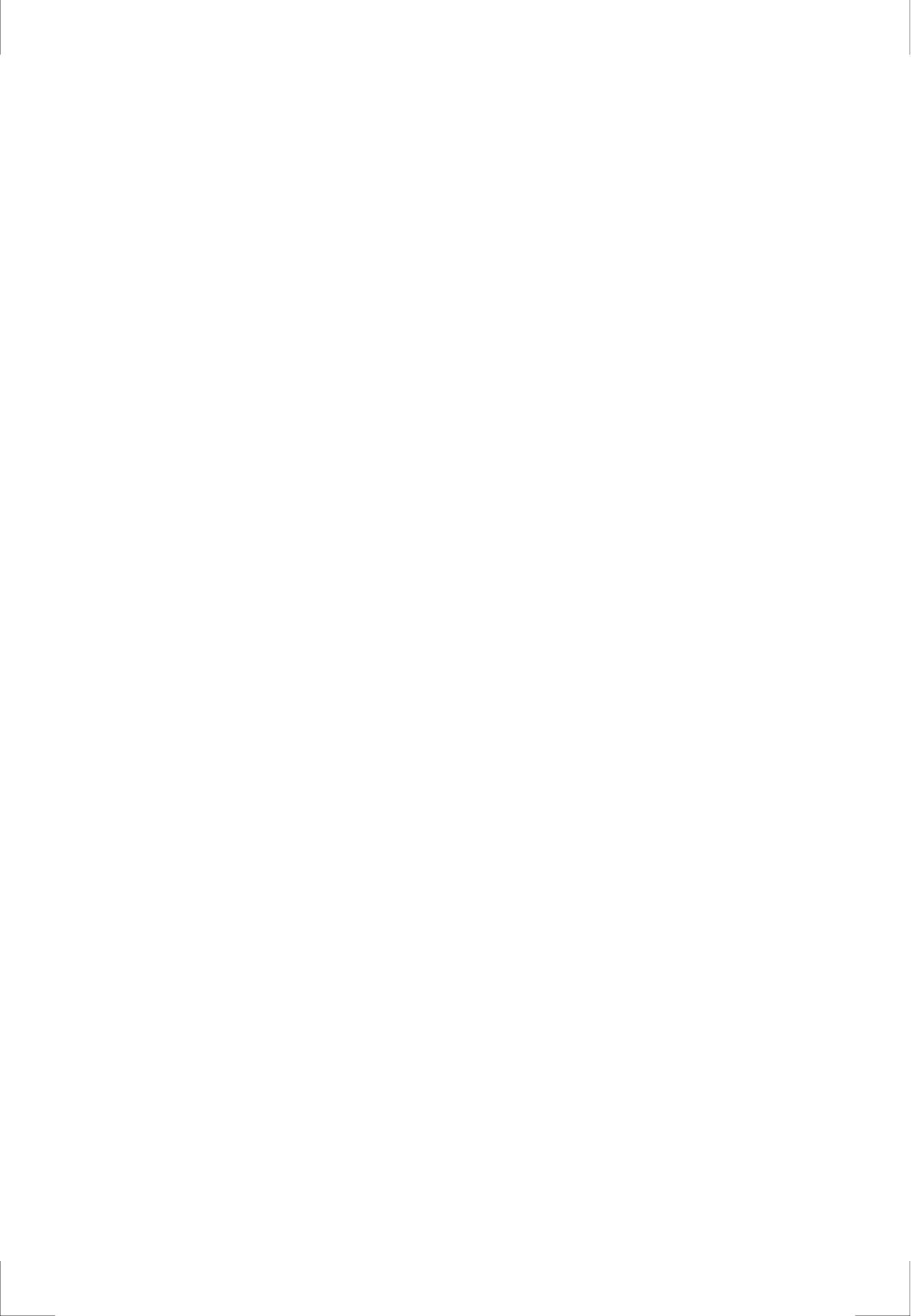
본 연구는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간 보호 및 지원 서비스의 격차와 분절의 문제점을 자립지원으로 확대하여 분석하였고, 두 체계의 보호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욕구는 동일하나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지원은 더욱 열악한 상황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쉼터 청소년과 이들의 보호와 자립지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기를 희망한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정 부연구위원의 연구책임하에 류정희 연구위원, 김지민 연구원이 참여하고, 외부 전문가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김지연 선임연구위원과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Social Work 김무연 박사가 참여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와 FGI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과 실무자, 그리고 자문에 응해 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임성은 부연구위원과 경기여성가족재단 전민경 연구위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1
제3절 연구 방법	12
제2장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	19
제1절 자립지원 대상 현황 및 특성	21
제2절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41
제3절 자립지원 서비스 현황	49
제4절 소결	61
제3장 보호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해외 사례연구	67
제1절 미국	69
제2절 영국	90
제3절 소결	112
제4장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준비 및 서비스 욕구 비교 분석 ..	119
제1절 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의 특성	121
제2절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준비도 비교 결과	157
제3절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서비스 욕구 비교	170



제4절 자립준비 및 자립서비스 욕구에 관한 FGI 결과	177
제5절 소결	20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07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및 결론	209
제2절 연구 함의 및 정책 제언	220
참고문헌	231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가정 외 보호 아동 자립준비실태조사 내용	13
〈표 1-2〉 중장기 청소년쉼터 거주 아동 인원 및 응답 인원	16
〈표 1-3〉 청소년보호체계 아동·청소년 및 종사자 FGI 그룹 및 대상자 특성	17
〈표 2-1〉 연도별 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수	23
〈표 2-2〉 자립준비 지원 대상 아동 현황	23
〈표 2-3〉 연도별 청소년쉼터 입소 현황	26
〈표 2-4〉 자립준비 지원 대상 청소년(2019.12.31. 기준)	27
〈표 2-5〉 청소년쉼터 만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자 현황(2019.12.31. 기준)	28
〈표 2-6〉 청소년쉼터 입소자 주요 문제(2019.12.31. 기준)	29
〈표 2-7〉 청소년쉼터 입소 경로(2019.12.31. 기준)	30
〈표 2-8〉 청소년쉼터 퇴소 사유(2019.12.31. 기준)	31
〈표 2-9〉 아동·청소년보호체계 퇴소청소년의 자립 경험에 관한 연구	37
〈표 2-10〉 연도별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현황	47
〈표 2-11〉 청소년자립지원관 자립지원 서비스 내용	58
〈표 2-12〉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서비스 주요 현황	59
〈표 2-13〉 자립지원기관	64
〈표 4-1〉 인구사회학적 특성	122
〈표 4-2〉 가정 외 보호 경험 특성	124
〈표 4-3〉 자립 프로그램 경험률	125
〈표 4-4〉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	126
〈표 4-5〉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사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삶 만족도	128
〈표 4-6〉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사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주관적 웰빙	129
〈표 4-7〉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사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회복탄력성	131
〈표 4-8〉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사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자기효능감	133
〈표 4-9〉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인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재학 상태	134
〈표 4-10〉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인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진로	135
〈표 4-11〉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인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학업 성적	136

〈표 4-12〉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인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자격증 준비 경험 유무	138
〈표 4-13〉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인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자격증 준비 영역(복수 응답)	139
〈표 4-14〉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인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원가족 교류	141
〈표 4-15〉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인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원가족 연락 빈도 ..	142
〈표 4-16〉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인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원가족 만남 빈도 ..	143
〈표 4-17〉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사회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사회적 지지	144
〈표 4-18〉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사회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사회적 관계망 크기	146
〈표 4-19〉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사회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사회적 관계	147
〈표 4-20〉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과 자립 수준 - 자립지원관 이용	148
〈표 4-21〉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과 자립 수준	
- 직업교육 또는 훈련, 자격증 취득 서비스	150
〈표 4-22〉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과 자립 수준 - 자립생활 멘토와의 멘토링	151
〈표 4-23〉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과 자립 수준 - 용돈 지원	152
〈표 4-24〉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과 자립 수준 - 장학금	153
〈표 4-25〉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과 자립 수준 - 자립지원관 선생님의 사례관리	154
〈표 4-26〉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과 자립 수준 - 의료서비스	155
〈표 4-27〉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과 자립 수준 -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156
〈표 4-28〉 응답자 특성 비교(쉼터는 보호기관 수가 아닌 보호기관 유형수임)	158
〈표 4-29〉 자립 프로그램 이용 경험 비교	160
〈표 4-30〉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 비교	161
〈표 4-31〉 디딤씨앗통장 이용 경험 비교(공동생활가정)	162
〈표 4-32〉 디딤씨앗통장 이용 경험 비교(아동보호체계 전체)	162
〈표 4-33〉 자립 수준 비교 - 사적 자본 영역	163
〈표 4-34〉 자립 수준 비교 - 인적 자본 영역	167



〈표 4-35〉 자립 수준 비교 - 사회적 자본 영역 1	168
〈표 4-36〉 자립 수준 비교 - 사회적 자본 영역 2	169
〈표 4-37〉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필요 자립서비스	171
〈표 4-38〉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필요 자립서비스(1순위)	173
〈표 4-39〉 필요 자립서비스 종합 비교	174
〈표 4-40〉 필요 자립서비스	176

그림 목차

[그림 2-1] 가출팜 형성 및 해체 과정	32
[그림 2-2] 아동보호체계 자립지원전담기관 분포	42
[그림 2-3] 아동보호체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도	44
[그림 2-4] 아동보호체계의 보호조치 및 자립준비지원 단계	45
[그림 2-5] 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도	46
[그림 2-6] 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도	48
[그림 2-7] 디딤씨앗통장(CDA) 운영 절차	54
[그림 3-1] 위탁보호 및 가출·노숙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78
[그림 3-2] 위탁보호 및 가출·노숙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98
[그림 4-1] 디딤씨앗통장 이용 경험 비교(아동보호체계 전체)	162
[그림 4-2] 삶의 만족도 비교	164
[그림 4-3] 주관적 웰빙의 영역별 비교	165
[그림 4-4]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 비교	166
[그림 5-1] 미국과 영국의 위탁보호 및 가출·노숙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214
[그림 5-2] 자립지원기관 분포	225



Abstract

Study on Independent Living Policy For Transition-age Youth in Child and Youth Protection Sys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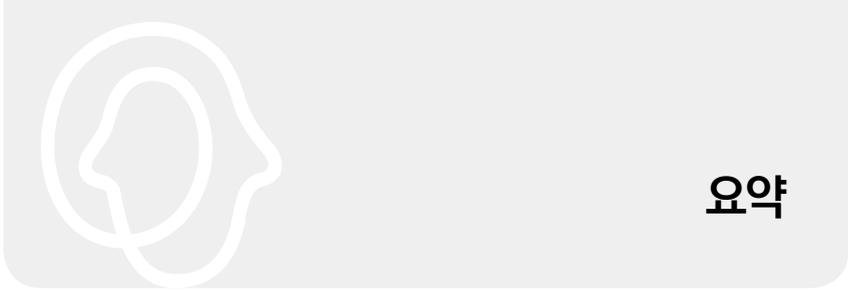
Project Head: Lee, Sang Jung

This study aims to make suggestions to reduce the gaps between child and youth protection systems in terms of independent living policy and services. To do so, this study firstly examines differences in policies and services that are designed to support independent living between foster care and run-away/homeless youth in each system. Second, experiences on preparation for independent living,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needs for related services of transition-age are compared between foster care and run-away/homeless youth. This study finds out that all the transition-youth in two systems have the same levels of needs in terms of independent living assistances but run-away/homeless youth have less supports and assistances from the system. Suggestions related to law, polices and services are made to reduce the gaps based on the study findings.

*Key words: independent living policy, child protection system, youth protection system

Co-Researchers: Kim, Jimin · Ryu, Jeong-hee · Kim, Jiyon · Kim, Moo-Hyun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때 체계 간 형평성 및 연속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호·지원 서비스의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자립지원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간 비교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 체계의 자립지원에 대한 실태 파악에 기초해 체계 간 비교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호 서비스의 연장선에서 자립 지원 서비스의 연계·통합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정책과 서비스를 비교·분석하여 보호서비스의 연속성상에서 자립지원 서비스의 체계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체계 자립지원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보호체계 보호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와 서비스 욕구를 양적·질적 자료를 기반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서비스 사각지대 및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은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 체계는 서로 다르지만, 학대·폭력, 가정 해체 등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이 된 원인과 경로, 자립 과정의 경험은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되

었다. 보호종료 후 부모나 원가족으로부터 지원이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열악한 자립 환경과 부정적 자립 경험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아동·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문제를 경험하였고,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재로 외로움 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에 대한 욕구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보호체계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이 아동보호체계의 아동·청소년보다 낮아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 그런데 현재까지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은 아동보호체계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자립지원의 체계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3. 결론 및 시사점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보편적 자립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개별 법률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보호받고 있는 체계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보편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광역시도 거점 자립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유사 기능을 하는 기관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자립지원 업무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와 관계없이 시·군·구 단위 일선 시설 간의 정보와 자원, 사례 연계가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아동·청소년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 DB를 구축하는 등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도적, 공식적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퇴소 또는 보호종료에 임박한 아동·청소년에

계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을 중심으로 통합적 자립지원 서비스를 체계에 상관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입·전세 임대주택 등을 지원받는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퇴소 청소년 또는 보호종료아동이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와 교육 및 취업, 심리정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자립지원 서비스의 최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자립서비스의 사각지대와 배제,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하위 법령을 기반으로 자립지원 서비스 내용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이 이를 공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보호체계로 진입했는지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상황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자산형성을 포함한 기초적인 자립준비 내용과 보호종료 후 주거 지원, 사후관리 등 핵심적 자립지원 내용에 대한 기준선을 제시해야 한다.

*주요 용어: 자립지원, 아동보호체계, 청소년보호체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가 구별되어 있어서 보호서비스의 분절, 중복, 공백 그리고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관련 연구를 통해서도 구조적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류정희 외, 2018; 박세경 외, 2016; 박진규, 2008; 정영철 외, 2014).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로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간 서비스를 연계·통합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5.23.;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과, 2020.5.11.). 이때 보호·지원서비스의 마지막 단계인 자립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보호서비스를 분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보호체계 내에서도 보호와 자립지원 관련 서비스는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2019a), 청소년보호체계에서는 분절적이거나 제공할 수 있는 자립지원 자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현 정부에서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시작한 자립수당(4월)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7월) 사업에도 청소년쉼터 퇴소 아동·청소년은 포함되지 않았다.

청소년보호체계에 속하는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 또한 아동보호체계

1)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2020.9.1.), “여성가족부 2021년 예산안, 전년 대비 5.3% 증액된 1조 1,789억 원 편성”.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87에서 인출.

의 아동·청소년과 같이 자립준비와 자립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와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김희진, 백혜정, 김은정(2018)은 청소년보호체계의 아동·청소년 또한 주거와 경제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지만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보호 체계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다(류정희 외, 2018). 특히, 청소년보호체계의 중장기 청소년 쉼터에서 장기간 보호받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사실상 부모 또는 가족과 관계가 단절되어 원가정으로 복귀하기가 어렵고 동시에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아동보호체계의 보호아동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다(이상정 외, 2019a). 따라서 이들은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아동보호체계의 보호아동과 같은 정책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에 대해 문제 제기는 있어 왔으나(김희진·백혜정·김은정, 2018; 류정희 외 2018),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상정 외(2019a)는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보호체계 내에서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위탁가정 보호 아동 간 자립준비와 지원 서비스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체계와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 실태를 비교해 봄으로써 자립지원 관련 체계 간의 격차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보호·지원 서비스 연계·통합 방안을 마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자립지원 서비스의 체계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보호서비스의 연속성과 자립지원 서비스의 체계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각 체계의 자립준비대상 아동 현황과 특성, 자립지원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체계 간 격차 유무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아동·청소년보호체계 보호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와 서비스 욕구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양적·질적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자립준비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 실태와 서비스 욕구 관련 체계 간 차이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의 사각지대 및 체계 간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법을 소개한다. 제2장은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아동·청소년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특성, 각 체계의 자립지원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심층 분석하고 각 체계의 보호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해외의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사례를 살펴본다.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가정 외 보호와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체계와 서비스에 대해 탐색한다. 궁극적으로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특성, 자립 서비스와 전달체계와 관련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간 자립지원의

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아동·청소년체계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수집한 양적 자료를 분석하여 자립준비 실태와 관련 서비스 욕구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각 체계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과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통해 수집한 질적 자료를 분석해 아동·청소년체계 간 자립준비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 실태와 관련 서비스 욕구에 대한 심층적 탐구 결과를 함께 제시한다. 5장에서는 선행연구 및 문헌 분석, 양적·질적 자료 분석에 기초한 연구 결과를 요약·제시하고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간 자립지원의 형평성 제고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제3절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와 각 체계를 통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문헌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격차 유무를 확인하고 체계 개선을 위한 문제점과 쟁점을 파악하였다.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논문, 보고서, 통계 자료 등 국내 문헌을 탐색하였다. 또한,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해외 사례 조사를 위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외의 관련 문헌을 조사하였다.

2. 설문조사

아동·청소년보호체계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 정도와 자립지원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비교·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양적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아동보호체계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과 비교·분석하기 위해 아동보호체계 자립지원 대상아동 자료는 ‘2019년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실태조사2)(이상정 외, 2019a)’를 활용하고, 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은 동일 설문지를 적용하여 자료를 직접 수집하였으며(〈표 1-2〉 참조),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1-1〉 가정 외 보호 아동 자립준비실태조사 내용

영역	항목	척도 설명 및 출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가정 외 보호 특성	인구학적 특성	문항: 생년월일, 성별, 사는 곳(시도)
	가정 외 보호 특성	문항: 현재 가정 외 보호 유형 및 지낸 기간 과거 가정 외 보호 경험 유무 및 기간
사적 자본	삶의 만족도	척도: 단일 문항 10점 척도(칸트릴의 사다리) 출처: The pattern of human concerns(Cantril, 1965)
	주관적 웰빙	척도: 5문항 11점 척도 출처: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OECD, 2013)
	회복탄력성	척도: 27문항(9개 유형 각 3문항) 5점 척도 출처: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자기효능감	척도: 3문항 5점 척도 출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VI-중등6차 설문지 49-2번(이경상, 안선영, 박수민, 유동훈, 반호 준, 2009)
인적 자본	주관적 학업 성적	척도: 단일 문항 11점 척도 출처: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용 설문지 23번 문항(류 정희 외, 2018)
	학업 중단	척도: 학업 중단 여부

2) 본 조사에 대한 구체적 개요는 해당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제4장 참조.

14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정책 연구

영역	항목	척도 설명 및 출처
		출처: 연구진 작성
	진로	척도: 대학 진학, 취업 등 출처: 연구진 작성
	장래 희망	척도: 개방형 문항 출처: 연구진 작성
	직업교육 및 훈련	척도: 자격증 교육 경험 및 취득 여부 출처: 한국교육고용패널 자격증 분류(한국직업능력개발원), 특성화고 학과 자격증 길라잡이(교육과 학기술부) 등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사회적 자본	사회적 지지	척도: 6문항 4점 척도 출처: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박지원, 1985)
	원가족 관계	척도: 단일 문항 4점 척도(교류 정도), 단일 문항 8점 척도(문자, 전화 정도), 단일 문항 8점 척도(만남 정도) 출처: 자립 지원 업무 매뉴얼 자립준비도 점검 척도 중 일부 발췌하여 수정(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2018)
	사회적 관계망	척도: 4문항 개방형 척도(관계망 인원) 및 11개 보기(관계 대상) 출처: Multi-site Evaluation of Foster Youth Programs(Chaffee Independent Living Evaluation Project), 2001-2010 (Courtney, Stagner & Pergamit, 2013)
정책 욕구	자립 프로그램 참여 경험	척도: 8문항 5점 척도(도움 정도) 출처: 자립 지원 업무 매뉴얼 Ready? 프로그램(아동자립지원단, 2018)
	자립준비 서비스 경험	척도: 10문항 예, 아니요, 모름 응답 출처: 자립 지원 업무 매뉴얼,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프로그램 우선순위	척도: 자립준비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13개 보기 출처: 연구진 작성

자료: 이상정 외. (2019a).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연구. p.28

가. 조사방법

청소년보호체계의 중장기 청소년쉼터 보호 아동·청소년 자립준비 실태조사는 중장기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가능한 한

많은 수의 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전체 중장기 청소년쉼터 39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조사원이 전화 및 공문을 통해, 전체 거주 아동·청소년에게 조사 참여 협조를 구하였으며, 협조 수락 시설들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조사 진행에 앞서 응답한 아동·청소년으로부터 IRB 심의에 기초한 동의서에 동의를 받았다.

‘2019년도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조사(이상정 외, 2019a)’에서 사용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웹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여건상 요청이 있는 일부 시설은 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 담당자의 안내로 아동·청소년이 설문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보내왔다. 최종 응답자 수는 147명이었으며, 이 중 웹조사 응답자 수는 144명, 우편 응답자 수는 3명이다.

나. 모집단 및 표본추출

설문조사 대상은 전국의 39개 중장기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는 보호 아동·청소년이다. 중장기 청소년쉼터 보호 아동·청소년 수(조사시점 기준)는 각 청소년쉼터 담당자로부터 우선으로 확인하여 추정하였다. 이에 따른 중장기 청소년쉼터 보호/거주 아동·청소년 수는 전국 39개 시설, 241명으로 추정되었다.

모집단 규모(241명)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수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 참여를 안내하였으며, 유의추출(purposive sampling) 방식으로 표본을 확보하였다. 최종 유효 응답자는 147명이다. 거주 아동·청소년 인원 대비 응답률은 60.9%를 나타냈다. 최종 표본 수, 147명의 자료가 통계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자료는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쳐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

석되었다.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진행하였고, 카이제곱, T-test, F검정을 실시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1-2〉 중장기 청소년쉼터 거주 아동 인원 및 응답 인원

(단위: 명)

청소년쉼터명	거주 인원	응답 인원	응답률
합계	241	147	60.9%
서울시립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5	3	60%
어울림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3	3	100%
고양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5	0	0%
구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4	4	100%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11	8	73%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10	7	70%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여자)	4	3	75%
안양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호숙	7	0	0%
용인시중장기청소년쉼터(여자, 푸른꿈)	7	2	29%
인천시중장기청소년쉼터(여자,예꿈)	10	6	60%
인천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별마루	6	5	83%
강원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보급자리	5	2	40%
강원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5	2	40%
공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8	0	0%
공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8	8	100%
대전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4	3	75%
대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6	6	100%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6	6	100%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6	6	100%
경상남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클라라의집)	6	3	50%
경상남도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7	6	86%
경상북도청소년여자쉼터	7	3	43%
대구광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5	3	60%
대구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5	2	40%
부산광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4	3	75%
부산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7	4	57%
울산남구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10	7	70%
울산울주군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10	0	0%
포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5	3	60%
포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4	0	0%

청소년쉼터명	거주 인원	응답 인원	응답률
광주광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7	4	57%
광주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백지쉼터)	4	3	75%
군산꽃동산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5	1	19%
목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9	7	78%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2	2	100%
전주임마누엘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8	6	75%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7	7	100%
서울시립급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3	3	100%
서울시립신림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6	6	100%

3. 초점집단인터뷰(FGI)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이 자립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과 자립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으며, 실무자 대상의 FGI를 수행하여 실무자 관점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간 자립 지원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FGI는 2020년 8월 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중장기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아동·청소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중장기 청소년쉼터 거주 아동·청소년,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 중장기 청소년쉼터 종사자와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로 구성된 총 5개 그룹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조사 개요와 참석자는 <표 1-4>와 같다.

<표 1-3> 청소년보호체계 아동·청소년 및 종사자 FGI 그룹 및 대상자 특성

그룹	구분	고유 번호	지역	성별	만 연령
A (3명)	중장기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	A1	부산	남자	21세
		A2	부산	남자	20세
		A3	부산	남자	21세
B-1 (1명)	중장기쉼터 거주 청소년	B1	공주	남자	23세

18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정책 연구

그룹	구분	고유 번호	지역	성별	만 연령
B-2 (3명)		B2	성남	남자	19세
		B3	서울	여자	18세
		B4	서울	여자	18세
C (4명)	청소년 자립지원관 거주 청소년	C1	서울	여자	22세
		C2	인천	여자	24세
		C3	경기	남자	24세
		C4	경기	남자	24세
D (3명)	중장기쉼터 종사자	D1	경기	여자	33세
		D2	대전	여자	34세
		D3	충남	남자	35세
E (4명)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	E1	서울	남자	37세
		E2	경기	남자	32세
		E3	경기	여자	50세
		E4	인천	여자	35세



제2장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

- 제1절 자립지원 대상 현황 및 특성
- 제2절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 제3절 자립지원 서비스 현황
- 제4절 소결



제 2 장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

제1절 자립지원 대상 현황 및 특성

이 절에서는 원가정을 대신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리 양육하고 보호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립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현재 중앙부처 수준에서 아동과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각각 이원화되어 있어 일선 아동·청소년보호체계도 사실상 별도로 구축·가동되고 있다. 먼저 아동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상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예정)하거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예정)된 아동을 말한다. 다음으로 청소년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³⁾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즉, 현행 아동·청소년 보호체계는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에 관계없이 공급자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에 이 절에서는 아동·청소년보호체계 내 주요 보호유형을 중심으로 자립지원 정책대상의 규모와 특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검토하였다.

3)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상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 대상자를 6개월간 보호자 대신 위탁보호하는데 최장 1년간 생활할 수 있다.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자립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보호기간 동안 숙식 제공과 생활 지원을 통해 재비행을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자료: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2017.07.31.), “(2017-08)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http://www.mogef.go.kr/io/in/d/io_ind_s044d.do?mid=info310&bbtSn=703125에서 2020.08.12.에 인출).

1. 아동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대상 현황 및 특성

아동 인구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 등 가정 외 보호체계에서 보호하는 18세 미만 아동은 약 3만 명에 달하고 매년 약 4,000여 명을 신규로 보호조치하고 있다. 18세에 달하여 시설 퇴소 및 위탁보호가 종료되는 ‘보호종료아동’은 매년 약 2,600명 수준인데, 「아동복지법」상 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보호종료 5년 이내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 정책대상이다(동법 시행령 제38조). 이들을 보호 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과반을 차지하고 그다음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순이다(표 2-1).

이들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자립준비지원은 사실상 입소 또는 위탁이 결정된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에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며 본격적인 자립준비지원이 이루어지는 연령을 15세로 정하고 있고 원칙상 보호종료 시기가 18세임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자립준비지원 기간은 3년⁴⁾ 정도로 극히 짧은 실정이다. 이에 연간 약 1,000명에 달하는 아동이 연장보호⁵⁾ 되는 상황인데 이는 연간 보호종료아동 규모와 비교할 때 약 40%에 달한다.

4) 연장보호 아동의 경우, 18세 이후의 연장 기간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음.

5)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이거나, ②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③ 이 외 위탁가정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사실상 주거 등 자립준비 여건이 미흡한 경우를 포함한다(아동복지법 제16조).

〈표 2-1〉 연도별 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수

	합계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소계	만기	연장	소계	만기	연장	소계	만기	연장
2013년	2,207	1,065	679	386	85	51	34	1,057*	-	-
2014년	2,172	1,008	635	373	82	47	35	1,082*	-	-
2015년	2,677	980	578	402	140	85	55	1,557	793	764
2016년	2,703	1,042	673	369	139	74	65	1,522	696	826
2017년	2,593	1,034	687	347	153	108	45	1,406	652	754
2018년	2,606	1,065	754	311	192	157	35	1,349	647	702

자료: 허민숙, (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p.7.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9). 2018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p.48

주: *만기·연장 종료 구분 불가.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현황을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서 2017년부터 수집함에 따라 2013~2016년 현황은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를 통해 확인함. 2018년 자료는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를 통해 확인함.

한편, 위탁가정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받고 있는 만 15세 이상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8년 기준 5,640명의 아동이 자립지원 계획 수립 대상이었으며 보호 유형별로 살펴 보면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전체의 55.0%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양육시설(35.5%), 공동생활가정(9.5%) 순이다(표 2-2).

〈표 2-2〉 자립준비 지원 대상 아동 현황

(단위: 명)

	합계	보호유형별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2018년	5,640	2,003	535	3,102

주: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계획 수립 대상은 만 15세 이상 아동이지만 2018년 아동자립지원 통계 현황보고서에서는 연 나이 16~18세를 기준으로 하여 2001.1.1.~2003.12.31.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수를 제시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9). 2018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p.34.

현재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가정 외 보호체계에서 보호하는 아동 가운데 약 90%가 이들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허민숙, 2018; 이상정 외, 2019a, p.17, 재인용). 그러나 아동보호체계 내 보호유형별로 아동의 자립준비 여건이 상이하고 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자립 관련 프로그램이나 아동의 서비스 수혜 경험이 양육시설에 집중되어 있어 위탁가정 보호아동이 상대적으로 배제된 경향이 관찰되고, 위탁가정 역시 위탁 유형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상정 외, 2019a, p.262).

한편 보호대상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부모(보호자)의 학대로 인한 경우가 전체의 약 40%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부모의 이혼과 미혼부모 및 혼외자가 각각 18%, 11% 정도를 차지한다. 보호조치되는 아동 10명 중 6명은 시설에 입소하고 나머지는 위탁가정과 입양 등 가정보호 조치가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19). 이렇게 시설과 위탁가정 등에 배치된 아동은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될 때까지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데, 시설과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기간은 아동별로 차이가 크다. 2019년도 자립수당 수혜 대상 보호종료아동의 경우를 참고하면 보호기간이 평균 12.2년(표준편차=5.7년)에 달하였다(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정희선, 2019b, pp.98).

보호종료아동의 대부분은 보호종료 후 별도의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주로 생활비와 학비 등 경제적 문제, 거주할 곳이 마땅하지 않는 주거 문제,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였다(이상정 외, 2019b). 물론 보호기간 중에도 'Ready? Action!'과 같은 자립역량 증진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자산형성(아동발달지원계좌, CDA) 프로그램과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 자립준비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시설을 퇴소하거나 위탁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인 18세는 자립준비를 완성할 수 있는 시

기가 아니다. 이로 인해 아동들은 퇴소 직전까지도 ‘자립’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해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비자발적이고 소극적으로 참여하다가 막상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결되면 그때야 비로소 생계와 주거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장정은, 전종설, 2018).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4명 이상이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있다는 점도 이러한 상황을 반증한다(전선미, 이주연, 주보라, 2016).

이와 함께 보호아동과 보호종료아동, 그리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들의 특성과 요구를 살펴보면 보호대상 아동은 전반적으로 생활 및 학습 의욕이 저조하고 퇴소 후에는 시설과 거리를 두면서 시설 출신임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 보호종료 직후 주거 대안이 없더라도 주거비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립생활관’ 입소를 꺼려 전국 12개 시설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이들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보호종료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자립준비 과정에서 심리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경제·주거 지원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이재완, 2018; 최경옥, 김수정, 2018). 최근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자립지원 서비스가 확대된 만큼 제도 운용과정에서 정책대상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지 환류(feed back)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청소년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대상 현황 및 특성

먼저 청소년쉼터의 각 연도 입소자 현황을 보면 매년 시설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입소자 규모도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청소년쉼터 입소자 수는

2016년에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선 이래 현재까지 연간 3만 2,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7일 이내 단기보호가 가능한 일시 청소년쉼터 입소자(이용자) 규모가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018년에 처음으로 국비지원이 이루어졌고 연간 약 200명 이상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표 2-3).

한편 2004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정 당시 청소년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그 동안 청소년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았다. 201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되었다.

〈표 2-3〉 연도별 청소년쉼터 입소 현황

(단위: 명)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9,350	11,657	11,764	15,242	24,079	25,012	30,329	31,197	32,109	32,402
청소년자립지원관 ¹⁾								88	220

자료: 여성가족부. (2019a). 청소년백서, p.192. 여성가족부 (2019b). 내부자료.

주: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018년부터 국비 지원함.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에서 입소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고정형, 이동형)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한다. 일시쉼터는 가출 상황에 있는 청소년뿐 아니라 거리를 배회하는 위기청소년, 가족이나 사회와 유대를 상실했거나 관계가 단절되어 거리생활에 익숙한 노숙청소년과 가출팸(가출+family), 가정 내 문제로 가출행동을 반복하는 청소년을 주로 지원한다. 현행 사업지침에서 일시쉼터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입소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단기쉼터는 가족 간 갈등 및 해체, 부모(보호자)가 양육능력을 상실하여 가정에서 이탈한 청소년을 3개월(최장 9개월)

정도 보호하는 생활시설이다. 중장기쉼터는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어 다년간 입소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3년(최장 4년) 이상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입소기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보호인원을 고려하여 인력배치에 차이를 두고 있으나 입소자의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11세에 단기쉼터에 입소한 아동이 입·퇴소 과정을 반복하면서 24세까지 생활해도 제재나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2019년 청소년쉼터 입소자(이용자)는 실인원 기준 연간 약 3만 2,000명에 달하는데 전국 청소년쉼터의 총 정원을 기준으로 보면 매일 약 1,500명 정도가 생활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20명을 지원하였다(표 2-4).

〈표 2-4〉 자립준비 지원 대상 청소년(2019.12.31. 기준)

(단위: 명)	
청소년쉼터 ¹⁾	청소년자립지원관 ¹⁾
385,862(32,402)	27,843(220)

자료: 여성가족부. (2019b). 내부자료.

주: 1) 입소자 연인원(실인원)

청소년자립지원관 입소자 및 이용자 관련 통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2019년 기준 청소년쉼터 입소자 3만 2,402명 중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은 52.4%(1만 6,975명)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6~18세 학교 밖 청소년이 6,926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중학교 재학 또는 15세 학교 밖 청소년이 4,988명 순이다(표 2-5). 「민법」상 성인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청소년도 5,161명에 달하였는데 청소년쉼터 입소자의 약 절반 정도가 14세 이하 아동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쉼터에는 아동·청소년·청년이 함께 생

활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체계와 달리 특정 연령, 즉 15세가 되면 자립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거나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다.

〈표 2-5〉 청소년쉼터 만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자 현황(2019.12.31. 기준)

(단위: 명)

구분	만15세 이상 현황				소계
	만15세 이상 중학생 추정치	만16~18세 고교생 추정치	대재 만19세 이상	기타 (확인 불가 등)	
청소년 쉼터	4,988	6,826	5,161	0	16,975

자료: 여성가족부. (2019b). 내부자료.

다음으로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 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쉼터 입소자의 주요 문제를 살펴보았다. 2019년 한 해 동안 약 2만 3,000건(명)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가족 문제가 약 11만 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족해체 및 가족갈등 등 가족 내 문제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것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주된 사유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입소 관련 문제(약 4,000건), 일탈 및 비행(약 3,000건), 학업/진로(약 2,600건), 기타 지원(약 1,500 건) 순이다. 연령별로 보더라도 가족 문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고등학생 또는 만16~18세 후기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요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9세 이상 청(소)년, 중학생 또는 만13~15세 청소년, 초등학생 또는 만12세 이하 아동 순이다(표 2-6).

〈표 2-6〉 청소년쉼터 입소자 주요 문제(2019.12.31. 기준)

(단위: 명, 건)

구분	초등학생 만12세 이하	중학생 만13~15세	고등학생 만16~18세	대학재학 만19세 이상	계
가족	330	2,302	4,728	3,721	11,081
일탈 및 비행	62	1,039	1,231	730	3,062
학업/진로	82	580	1,433	570	2,665
성	6	38	87	32	163
성격	1	26	41	13	81
대인관계	2	184	190	64	440
정신건강	3	28	152	191	374
생활습관/외모	1	11	46	20	78
컴퓨터/인터넷사용	3	15	17	1	36
정보제공	4	8	52	11	75
법률정보	0	1	7	5	13
활동 및 생활지도	0	32	84	58	174
지원 사항	18	188	678	647	1,531
입소 상담	157	888	1,561	1,587	4,193
계	669	5,340	10,307	7,650	23,966

자료: 여성가족부. (2019c).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 내부자료.

청소년쉼터 입소 및 서비스 이용 경로를 보면 ‘본인 스스로’라는 응답이 38.6%(약 9,000건)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어 원가정에서 분리된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과 서비스를 스스로 찾고 이용하는 경향을 일부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다음은 친구(약 3,400건), 거리상담(약 2,400건), 타 기관의 의뢰(약 1,500건), 타 청소년쉼터 및 경찰의 의뢰(각각 약 1,400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교사의 권유(약 1,100건)나 부모·가족친척이 의뢰한 경우(267건)도 있어 아동보호 체계 내 아동과 마찬가지로 원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렵거나 이탈한 아동·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7).

〈표 2-7〉 청소년쉼터 입소 경로(2019.12.31. 기준)

(단위: 명, 건)

구분	재학생	학업 중단 (무직)	고졸 미진학	계
친구	2,085	1,087	302	3,474
거리상담	2,390	55	46	2,491
홍보물	174	10	32	216
홈페이지(인터넷)	363	256	449	1,068
114문의	2	3	2	7
신문방송보도	1	0	1	2
부모·가족·친척 의뢰	210	47	10	267
친구부모 권유	16	0	9	25
교사권유	1,093	12	1	1,106
쉼터 의뢰	428	616	440	1,484
경찰 의뢰	987	342	113	1,442
1388전화	173	152	75	400
보호시설 의뢰	267	53	18	338
타 기관 의뢰	918	400	190	1,508
본인 스스로	3,642	3,230	2,367	9,239
기타	541	201	157	899
계	13,290	6,464	4,212	23,966

자료: 여성가족부. (2019c).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 내부자료.

마지막으로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사유를 살펴보았다. 2019년 한 해 동안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2만 3,876명으로 이 가운데 가정에 복귀한 경우가 약 46%(1만 97410,974명)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자립에 대한 욕구로 합의하에 퇴소’가 약 27%(6,420명), 타 기관(시설)으로 이관한 경우가 약 9.4%(2,234명) 순이었다. 취업·창업 등 자립 퇴소는 전체의 1.5%(367명)에 불과하여 대다수가 안정적인 주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쉼터를 퇴소하고 있음을 반증한다(〈표 2-8〉). 이와 함께 일부 연구에서 청소년쉼터 입소자의 자립준비 정도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하였는데(조규필, 2016), 이는 청소년쉼터의 자립지

원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으나 개별 아동·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 전부터 다종다양한 학대와 폭력, 노숙을 경험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입·퇴소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2-8〉 청소년쉼터 퇴소 사유(2019.12.31. 기준)

(단위: 명, 건)

구분	남성	여성	계
가정복귀	5,358	5,616	10,974
7일간 보호기간 만료(단기쉼터)	593	279	872
보호기간 만료(단기·중장기쉼터)	67	24	91
취업·창업으로 자립 퇴소	306	61	367
학원·대안학교·기숙사 입소	101	44	145
타기관 연계가 필요하여 이관	1,288	946	2,234
구속 등 법률기관 강제 이관	68	27	95
규율위반 및 문제발생으로 강제퇴소	114	125	239
무단퇴소	303	264	567
자립생활 욕구로 합의 퇴소	4,407	2,013	6,420
군입대입원 퇴소	890	982	1,872
합계	13,495	1,0381	23,8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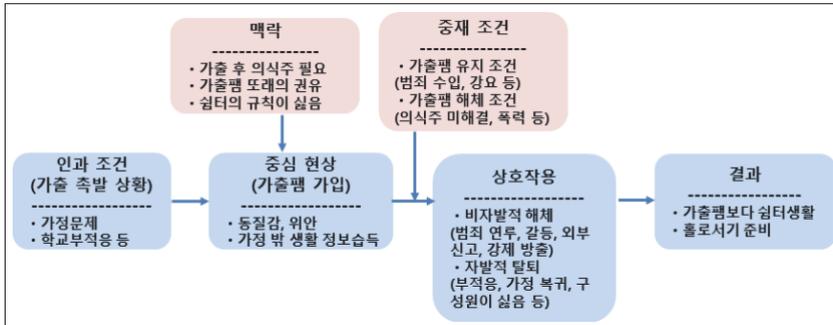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 (2019c).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 내부자료.

한편, 아동·청소년이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거리에서 생존하는 과정에서 3명 중 1명은 ‘불가피한 자발적 선택’으로 가출팸(가출+family)을 경험하는 실정이다. 가정 밖 위기 상황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동질감에 의한 심리적 위안이 가출팸에 유입되는 동기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가출팸이 유지·해체되는 과정에서 해당 아동·청소년이 각종 범죄의 가피해 상황에 연루되는 등 부정적인 사회화를 경험하여 자립준비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그림 2-1).

특히 미성년 아동·청소년이 가출팸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보호체계는

이들의 존재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미성년 아동·청소년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체계적인 자립준비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가출팸을 경험한 아동·청소년 대다수가 가족해체, 가정폭력 및 학대, 가족갈등 등 가족 문제 요인을 동반하고 있고, 우울·자살 시도 등 심각한 수준의 심리·정서·정신적 문제를 호소한다. 그러나 부모(보호자)가 가출인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출팸에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 밖 상황에서 가출팸을 경험하기 전에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이 최선인 실정이다.

[그림 2-1] 가출팸 형성 및 해체 과정



자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19). 가정 밖 청소년 가출팸 과정 연구, p.42. (연구자 수정)

3.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아동·청소년의 자립 경험

다음으로 아동·청소년보호체계로부터 퇴소 또는 보호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이 성인기 이행과정 동안 경험한 자립준비 또는 자립에 대해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가. 아동보호체계 보호종료 전·후 아동·청소년의 자립 경험

아동보호체계 아동·청소년의 자립경험과 관련된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와 관련하여 최경옥, 김수정(2018)은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의 퇴소 준비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보나 조언을 제공할 사회적 지지체계가 필요하지만 원가족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지선, 이민주, 정익중(2018)은 자립을 유예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 생활이 적성이나 진로를 탐색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지만, 사회적 지지체계의 여부, 시설선생님과의 관계 등에 따라 대학생활과 자립준비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황정하, 박수지(2017)는 미래에 대한 희망 수준과 사회적 지지, 진로 장벽 수준이 양육시설 아동의 자립생활기술의 유의미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아동보호체계 아동의 자립준비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체계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정혜옥, 손병덕(2018)은 양육시설에서 중도 퇴소한 아동은 학력 단절과 정서적 불안으로 자립을 더욱 어려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정 외(2019a)는 아동보호체계 간 비교 연구를 통해 가정위탁 아동의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의 자립준비도가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보다 낮은 수준이며, 또한 삶의 만족도는 낮고 걱정 및 우울 수준은 높은 반면, 회복탄력성과 인적 자본 영역에서는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보다 자립준비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 지표별로 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간에도 보호 아동·청소년간의 자립준비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호종료 후의 자립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16년도 보

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진선미, 이주연, 주보라, 2016)에서 보호종료 후 자립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의 1, 2위는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문제로 약 88%의 응답자가 보호종료 후에 자립지원이 필요하며 그중에서 생활비 지원과 주거 지원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보호종료아동 대상으로 수행된 이상정 외(2019b)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 자립수당을 이용한 응답자 중 70% 이상이 보호종료 후에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이 부족했던 경험이 있었고 40% 이상은 거주할 집 문제로 걱정했다고 응답했고, 자립 후 필요 서비스로 역시 생활비 지원과 주거 지원을 우선순위로 응답하였다.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이용자들은 거주할 집 문제를 1위, 생활비 부족을 2위로 응답하여 우선 순위에 변동이 있었지만 역시, 주거 및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언급했다. 또한, 아동보호체계의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들에서도 보호종료 후에 안정적인 주거가 없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장정은, 전종설, 2018; 장혜림, 정익중, 2017).

이 밖에 사회적 고립, 양육시설 출신이라는 편견과 낙인이 자립 과정의 어려움으로 보고되었다(장정은, 전종설, 2018; 장혜림, 정익중, 2017). 한편, 2016년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의 자료를 2차 분석한 연구는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자립생활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정애, 이화조, 정익중, 2017; 이정애, 정익중, 2018). 보호종료아동의 건강 관련 경험을 탐색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퇴소청소년이 자립 과정에서 생활의 불규칙과 영양상태 불균형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 했다(이정애, 정익중, 2020).

나. 청소년보호체계 퇴소 전·후 아동·청소년의 자립 경험

전반적으로 아동보호체계의 자립에 관한 연구에 비해 청소년보호체계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퇴소 후의 자립과정에 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보고된 연구 결과들은 아동보호체계 아동의 자립 경험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퇴소 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장주현, 김정애(2015)는 중장기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이 퇴소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 및 취업, 주거 문제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으며, 역시 퇴소 준비 부족과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재를 보고하고 있다. 정문진, 김수정(2016)은 역시 자립을 준비하려고 하지만 지원과 지지체계의 부재로 어려움을 보고했다.

전미숙, 김형모(2017)는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립준비가 잘 이루어지며, 종사자와의 관계, 시설 프로그램과 취업 관련 지원이 자립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김은녕, 서보람(2018)은 실무자의 지지보다 또래의 지지가 자립준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진로태도성숙도가 자립준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중장기쉼터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가 자립의지와 역량 미치는 우수명, 정지원, 김재환(2020)은 또래관계가 좋고, 관계 네트워크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청소년의 자립역량이 높고, 또래 관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청소년의 자립의지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 밖에 김희진, 백혜정, 김은정(2018)은 청소년보호체계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스트레스 수준은 높은 반면, 자존감과 사회적 역량 및 건강에 대한 인식, 삶의 만족도 수준은 낮고, 취업계획을 가진 비율은 높지

만 희망하는 교육 수준은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 역시 자립을 위해 아동보호체계에서 제공하는 자립정착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존감, 사회적 역량, 삶의 만족도, 심리사회적 지원이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청소년보호체계 퇴소 후의 자립 과정을 살펴보면, 자립은 실패와 절망, 희망이 반복되고 기복이 많다고 묘사되고 있으며(김은녕, 2019), 사회적 지지체계가 자립의 중요한 자원이 되고 주거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은녕, 2019). 최경옥, 김재환, 김형태(2019)는 고등학교 졸업이나 대학 진학 등의 교육적 성취가 삶의 의욕과 도적 의식 등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쉼터에서의 상담, 교육 서비스가 자립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해당 연구의 참여자는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쉼터 퇴소자의 자립지원에 격차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였다(최경옥, 김재환, 김형태, 2019).

요약하자면 자립은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영역에서의 독립 상태를 의미하는데(신혜령, 2001), 사회적 보호 대상인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에게는 모두에게 경제적 영역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보호종료나 퇴소 전·후 사회적 지지나 관계가 심리사회적 자립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중에서도 보호받았던 시설의 종사자나 또래가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 진학과 같은 교육은 자립준비와 성공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은 자립지원에 있어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보호기간 동안에 체계적인 자립준비와 보호종료 및 퇴소 후의 지원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2-9〉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청소년들의 자립 경험에 관한 연구

아동보호체계		청소년보호체계	
연구	자립 경험	연구	자립 경험
보호종료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예성, 이경상, 2015) • 양적 연구,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중장기청소년쉼터 1,244명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연령, 자아존중감, 주관적 건강상태, 아르바이트 경험, 진로준비 프로그램 참여, 시설 선생님과의 애착, 시설 친구와의 애착, 학교성적 변인이 자립준비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를 앞둔 중장기 쉼터 입소 기술 청소년의 퇴소 준비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 연구 (장주현, 김정애, 2015) • 질적 연구, 중장기쉼터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소 후 경제적 어려움, 미취업, 주거 문제, 스스로에 대한 관리, 대인관계의 어려움, 진학 등이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나타남 -퇴소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있으며 등록금에 대한 걱정으로 진학을 포기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임 -퇴소 준비 부족, 사회적 지지망의 미약으로 퇴소 과정에 여전히 도움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최은숙, 이태연, 2015) • 양적 연구, 양육시설 14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지지와 자립의지, 자아탄력성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지지와 자립의지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 작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쉼터 청소년 자립준비 경험 연구 (정문진, 김수정, 2016) • 질적 연구, 단기/중장기쉼터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이 질실하게 다오가고, 자립준비를 위해 노력을 기울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현실이 암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홈 아동의 자립 기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연정, 2015) • 양적 연구, 그룹홈 172명(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생: 심리사회적 발달요인(문제대처 및 해결능력), 환경적 요인(참여경험)이 자립기술능력에 영향을 미침 -고등학생: 환경적 요인(참여권, 자율성보장)이 자립기술능력에 영향을 미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쉼터 이용 청소년의 생태체계적 요인이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 (진미숙, 김형모, 2017) • 양적 연구, 일시/단기/중장기쉼터 20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립준비가 잘 이루어짐 -교사와의 관계, 시설 프로그램, 취업 관련 시설 지원이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자립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외 보호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을 매개로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신지혜, 강현아, 2017) • 양적 연구, 양육시설/그룹홈/가정위탁 35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자본이 자립의지에 학교적응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진로태도 성숙이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 (김은남, 서보람, 2018) • 양적 연구, 일시쉼터 17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지지 중 친구 지지가 심부자 지지보다 자립준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 -진로태도 성숙은 자립준비의 하위변인 모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

이동보호체계		청소년보호체계	
연구	지립 경험	연구	지립 경험
보호종료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자립생활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황정화, 박수지, 2017) • 양적 연구, 양육시설 452명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에 대한 희망 수준과 사회적 지지(의미 있는 타인)에 의한 지지 수준이 높고, 긴박감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자립생활 기술 수준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2018) • 혼합연구, 증장기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등 7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청소년보다 스트레스 수준은 높고, 자존감, 사회적 역량 및 건강에 대한 인식, 삶의 만족도 수준은 낮음. 희망 교육수준은 낮고 취업계획 비율은 높음 -자아존중감, 사회적 역량, 삶의 만족도, 심리사회적 지원의 도움 정도가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장착금(80.7%), 주거 지원(83%)이 필요 서비스로 나타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홈 퇴소 청소년의 자립준비 과정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최경옥, 김수정, 2018) • 질적 연구, 그룹홈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소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퇴소 청소년들은 대화, 조언, 정보 교류의 상대를 필요로 하는데 원가족은 지지체계 가 되지 못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장기센터 내 청소년 간 사회적 지지 네트가 자립의지와 자립역량에 미치는 영향(우수명, 정지음, 김재환, 2020) • 증장기센터 청소년 17명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밀네트워크의 근접중심도와 위세도가 자립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화네트워크의 매개중심도가 자립의지에, 다선중심도가 자립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시설 중도 퇴소 청소년의 자립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정혜옥, 손병덕, 2018) • 질적 연구, 양육시설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내의 과도한 규율 등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가출하여 홀로살기를 함 -빈곤, 홀리스, 도박 등 경제적 문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나 학력단절 등 사회생활도 불안정하고, 외로움 등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보호 종료 후 자립을 유예한 대학생의 자립준비 경험 (김지선, 이민주, 정익중, 2018) • 질적 연구, 아동양육시설/자립지원시설/자립영그룹홈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활을 통해 적성·진로탐색, 자축, 진 마음 등 자립준비 그러나 지지자의 여부, 거주지 형태와 사실 선생님과의 거리·관계 등에 따라 차이 발생 		

이동보호체계		청소년보호체계	
연구	지립 경험	연구	지립 경험
보호종료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이상정 외, 2019a) 양적 연구,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 95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역별 자립준비 정도와 경험에서 체계 간 차이가 있음 -사적 자본 영역에서는 공동생활가정, 인적 자본 영역에서는 위탁가정 아동의 자립 준비에 관한 관련 지표가 높았고,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는 공동생활가정과 양육시설 아동의 지표가 높았음 	퇴소 전	
보호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종료 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 조사 (진선미, 이주연, 이보라, 2016) 양적 연구,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 1,22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종결 후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문제로 나타남 -약 88%가 보호종결 후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생활비 지원과 주거 지원을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응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자 기출청소년의 쉼터 퇴소 후 자립 경험에 관한 연구(김은영, 2019) 질적 연구, 쉼터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은 실패와 절망, 희망의 반복적이고 기복적인 경험임 -가족이나 부모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중요한 자원이 됨 -주거 지원이 필수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외 보호 청소년의 자존감, 사회적 지지와 자립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의식의 매개 효과 (이정애, 이희조, 정익중, 2017) 양적 연구, 양육시설 65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소 대학생의 경제적인 문제, 기초생활수급비가 대학생활에 도움이 됨 -돈 관리, 가사기술 등 부족으로 관리가 필요함 -학업·취업 압박, 낙인 등으로 대화 진화를 후회함 -외로움, 대인관계 기술 부족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장기 쉼터 자립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퇴소 여자 청소년의 목소리(최경우, 김재현, 김형태, 2019) 질적 연구, 증장기쉼터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졸졸업, 대학 진학 등 배움을 통해 삶의 의욕, 도전의식 등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 -쉼터에서의 상담, 교육이 자립 과정에 자선이 되었으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차별에 분노를 느낌

40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정책 연구

이동보호체계		청소년보호체계	
연구	지립 경험	연구	지립 경험
보호종료 전		퇴소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위험요인이 자립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정애, 정익중, 2018) • 양적 연구, 양육시설 640명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존감, 사회적 지지, 공동체의식은 자립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침 -자존감은 불안우울에서, 사회적 지지는 불안우울에서, 공동체의식은 공격성과 불안우울에서 개별 매개효과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초기 자립 경험 (왕정은, 전홍실, 2018) • 질적 연구, 양육시설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식적인 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자립 준비에 효과적이지 못함(교육에 대해 부정적 무기력) -퇴소 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 열악한 경제 상황, 소원한 가족 관계와 외로움 등이 꼽힘 -양육시설 출신이라는 편견과 낙인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주거지원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및 효과성 연구 (이상정 외, 2019b) • 양적 연구,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 480명(자립수당, 133명(추거지원통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종료 후 가장 큰 어려움은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과 거주할 집 문제 -상당수의 아동이 경험함 -필요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 주거 지원이 높게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외 보호 퇴소청소년의 건강 관련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이정애, 정익중, 2020) • 가정 외 보호 퇴소청소년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상생활의 불규칙과 영양 상태의 불균형 경험 -아파도 병원에 갈 가지 못하고, 정서적인 어려움 호소 		

주: 공동생활가정과 그룹홈은 이동보호체계의 동일한 보호형태로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됨. 원저자가 사용한 용어로 정리함.

제2절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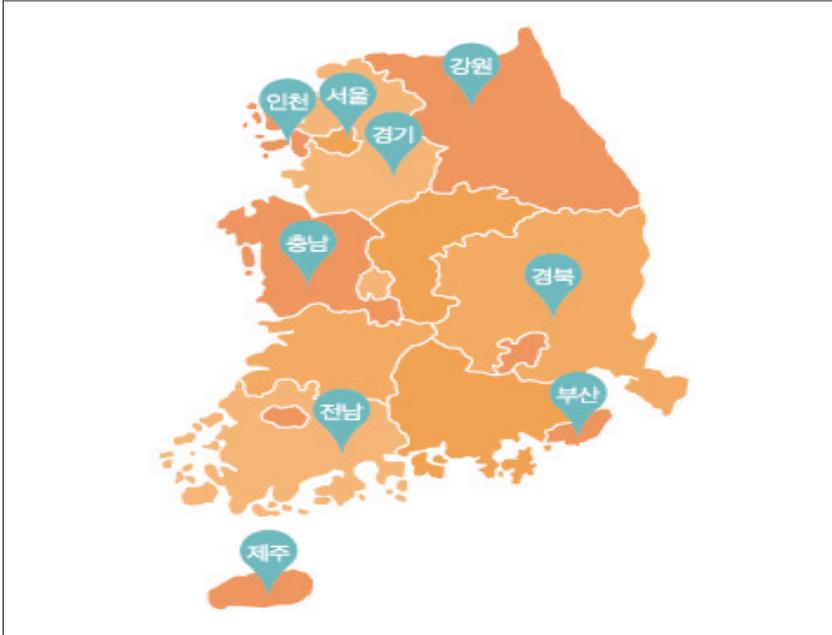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각각 검토하고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각각의 주요 보호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앙 및 지역(시·군·구) 수준에서 연계 가능성과 협력이 필요한 지점을 확인하였다.

1. 아동보호체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아동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사업관리체계는 보건복지부, 광역시·도, 시·군·구이며, 사업운영체계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과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일선의 아동복지시설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법」상 설치와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로 위탁할 수 있는데⁶⁾,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2019년도 기준으로 전국 10개⁷⁾ 광역시·도만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시설운영 기준과 인력배치와 처우에 편차가 크다(김지연, 강현주, 유미나, 이상정, 주보라, 2017).

-
- 6)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162504#searchId1>에서 2020.03.18. 인출)
- 7) 부산, 강원도는 현재 각각 원스톱지원센터, 자립통합지원센터의 형태로 운영 중이며, (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기능을 함께 수행 중 (중앙아동청소년자립통합사업단, (n.d.-a)“사업단 소개”, <http://www.adongbokji.or.kr/jarip/html/3.asp>에서 2020.08.21. 인출)

[그림 2-2] 아동보호체계 자립지원전담기관 분포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2020 자립정보북. p.18.

보호유형별로 보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자립지원 인력 배치 여건이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과 차이가 있다. 또한 기존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에 한 조직으로 흡수되면서(아동보호기획부) 중앙에서 일선 시·군·구까지의 서비스 전달체계 형태는 구축되어 있다.

반면,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보장원 내 별도 지원조직이 부재하여 차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만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10개 중 9개가 아동복지협회 위탁운영인데, 아동복지협회는 아동복지시설을 회원기관으로 하는 단체이다. 현재 시도 전담기관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인력 배치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담기관이 양육시설 보호

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이마저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부산, 강원도는 더 이상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현재는 자립통합지원센터(자립지원시설)를 운영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를 흡수한 형태로 아동보호체계와는 별개로 지역별·기관별로 자립지원 대상아동을 지원하고 있다(중앙아동청소년자립통합사업단, n.d.-a). 자립통합지원사업은 아동복지보호체계 퇴소 예정 아동에게는 자립체험관을, 그리고 퇴소한 아동에게는 생활관을 제공하여 독립 주거공간에 대한 훈련 기회와 함께 전문적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자립 지원을 하는 민간 기금의 사업으로, 현재 부산, 강원도를 포함하여 대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광주, 경북과 함께 2기 사업으로 선정된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로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⁸⁾. 민간기금 사업이 종료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승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중앙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아동보호체계 내에서의 통합적 운영과 관리는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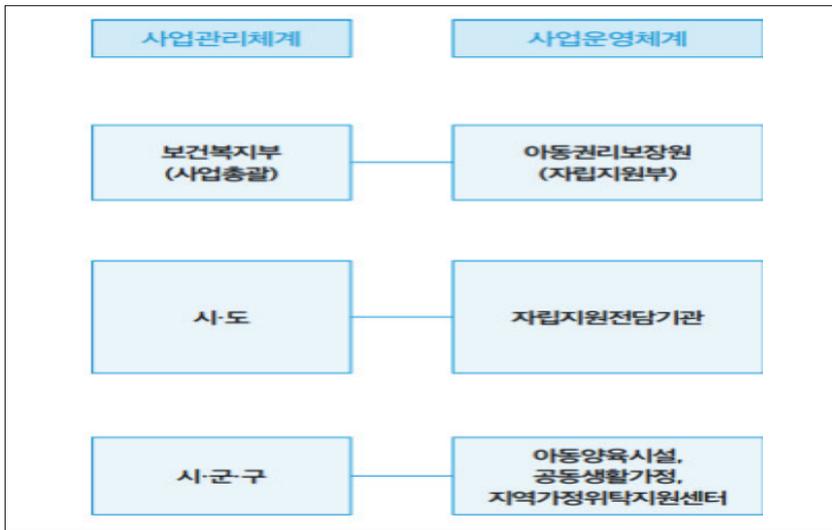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광역시·도 단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자립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각 센터에 배정된 자립지원전담요원은 1명~2명으로(이상정 외, 2019a, p.67), 시·도 전역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보호 및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와 자립 지원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용자인 아동·청소년의 자립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사례관리와 자립지원 업무 보완(이상정 외, 2019a)이 필요하며, 사례관리자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의 확충

8)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한국아동복지협회, “삼성희망디딤돌센터 사업개요”, [http://www.adongbokji.or.kr/adong/html/3_4.asp?PB=%BA%B8%C8%A3%C1%BE%B7%E1%BE%C6%B5%BF%C3%BB%BC%D2%B3%E2%C0%DA%B8%B3%5%EB%C7%D5%C1%F6%BF%F8%BB%E7%BE%F7\(%BB%EF%BC%BA%C8%F1%B8%1%B5%F0%B5%F5%B5%B9%BC%BE%C5%CD](http://www.adongbokji.or.kr/adong/html/3_4.asp?PB=%BA%B8%C8%A3%C1%BE%B7%E1%BE%C6%B5%BF%C3%BB%BC%D2%B3%E2%C0%DA%B8%B3%5%EB%C7%D5%C1%F6%BF%F8%BB%E7%BE%F7(%BB%EF%BC%BA%C8%F1%B8%1%B5%F0%B5%F5%B5%B9%BC%BE%C5%CD)에서 2020.09.01. 인출)

이 필수적인 상황이다(이상정 외, 2019a; 정선옥 외, 2019).

요약하면 아동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가 보호유형별로도 차별적으로 구축되어 서비스의 편차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각 체계 내에서 인력과 서비스 인프라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중앙 및 시도 단위 지원기능이 미흡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아동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아동보호체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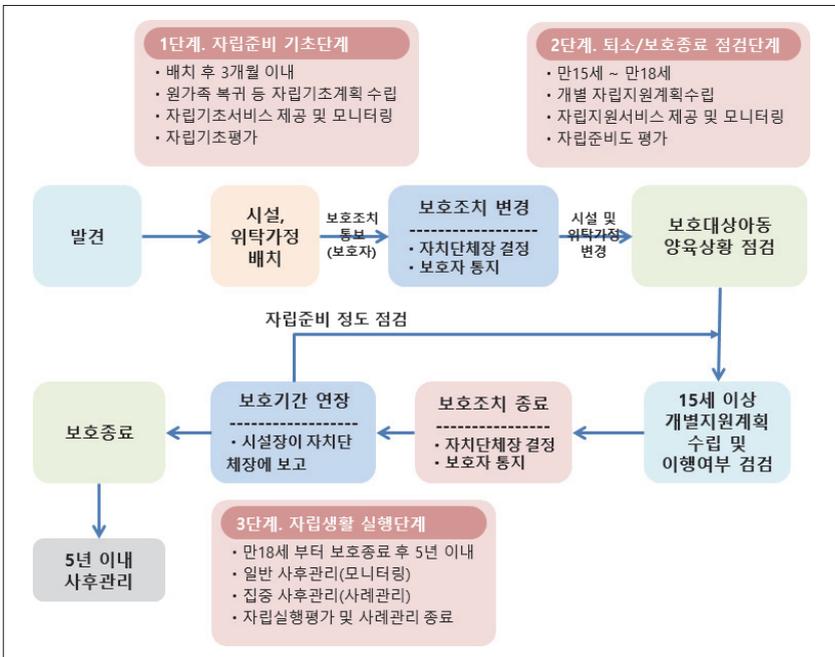


주: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광역시·도 단위에 설치되어 있으나 시·도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보다 관할 지역의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개별 아동의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시·군·구 단위의 직접서비스 제공자로 포함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p.15. 수정

한편, 보호조치 중인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양육 상황 점검이 이루어지며, 보호대상 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수립된 자립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1조).

특히 보호조치된 아동이 시설을 퇴소하거나 위탁보호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절차는 아동의 이익과 관계없는 무분별한 퇴소로 인해 자립준비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 친권자(보호자)가 보호기간 중 마련된 아동의 자립을 위한 종자돈(아동발달지원계좌)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특히 보호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면 시설장이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 연장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시설퇴소 및 위탁보호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하여 법령을 기반으로 자립지원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2-4).

[그림 2-4] 아동보호체계의 보호조치 및 자립준비지원 단계



자료: 저자 작성

2. 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청소년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사업관리체계는 여성가족부, 광역시도, 시·군구이며, 사업운영체계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복지시설지원부, 이하 개발원)과 일선 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이다. 아동보호체계와 달리 시도 단위의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부재하고, 중앙지원기관인 개발원은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종사자 교육연수 지원, 평가컨설팅 지원, 홍보 및 민관자원 발굴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현재 개발원 내에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 전담 부서가 부재하고 청소년복지시설지원부가 설치된 지 불과 5~6년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 6명 수준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청소년복지시설과 위기청소년을 아우르는 자립지원 서비스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쉼터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동복지협회와 마찬가지로 회원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기능상 제약이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청소년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도식화 하면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 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청소년보호체계 내 자립지원을 담당하는 주요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2-10). 2020년도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청소년육성기금) 규모는 총 24,396백만원 수준이며 청소년쉼터 19,385백만원(쉼터 146개소, 거리상담전문요원 124명, 야간보호상담원 131명), 청소년자립지원관 1,009백만원(8개소), 청소년복지시설 내실화 485백만원(평가우수시설 인센티브 등), 사회복지요원 배치지원 786백만원,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2,053백만원(노후시설 개보수, 장비·기자재 교체) 등이다(여성가족부, 2020, p.98).

〈표 2-10〉 연도별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현황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										
일시	10	10	13	21	22	26	28	30	30	31
고정형	8	8	8	15	16	18	18	20	19	18
이동형	2	2	5	6	6	8	10	10	11	13
단기	49	48	49	50	50	52	51	53	62	63
남	24	24	25	26	26	26	26	27	30	30
여	25	24	24	24	24	26	25	26	32	33
중장기	24	25	30	32	37	41	40	40	38	40
남	10	10	11	11	16	17	18	18	18	19
여	14	15	19	21	21	24	22	22	20	21
소계	83	83	92	103	109	119	119	123	130	134
청소년 자립지원관	-	-	-	-	-	-	-	-	4	6

주 : 국비 지원 시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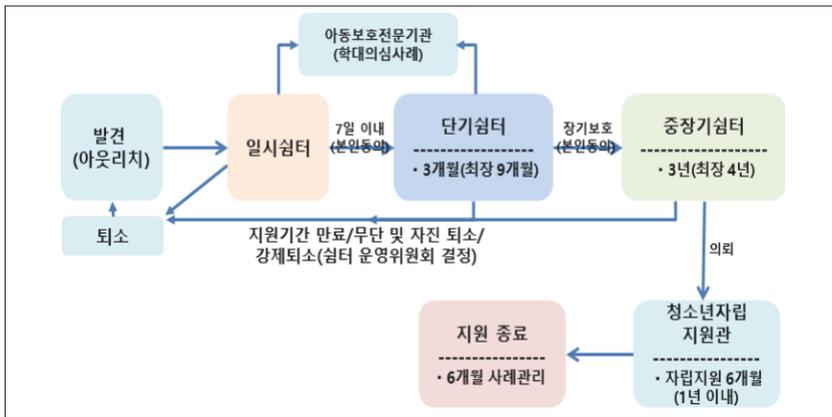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 (2019a). 청소년백서, p.190; 여성가족부. (2020). 내부자료.

아동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와 구별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시도 단위 지원기관이 부재하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자립지원 대상인 청소년의 시설 입·퇴소 과정에서 시도와 시·군·구의 개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지방

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청소년보호체계의 경우 별도의 지방비 출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중앙 수준에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 보장원)와 여성가족부(상담복지개발원) 간의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광역 시도 단위에서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간 지원기능을 통합, 강화하여 사각 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고 일선 기관의 서비스 질과 내용을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후자와 관련하여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아동보호시설과 달리 시설 배치부터 퇴소까지 전 과정에서 지자체가 개입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아웃리치 과정에서 발견한 가출·노숙 청소년에게 학대피해가 의심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보호절차는 청소년이 자의로 청소년쉼터의 입·퇴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안정망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순기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청소년이 시설 퇴소를 원할 때 이를 제지할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 탈위기와 자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그림 2-6]).

[그림 2-6] 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다만 이와 같은 문제는 입·퇴소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이어지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구조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즉, 아웃리치와 단기보호만으로 가정복귀와 위기상황 해소가 불가능한 사례의 경우 아동보호체계에 준한 입·퇴소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일시쉼터와 단기쉼터 입소 및 이용단계에서 세심하게 위기도 사정(assessment)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1년 이상 장기간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기청소년은 지자체의 감독하에 있는 ‘보장시설’에서 체계적인 자립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중장기 청소년쉼터를 ‘대리양육시설’로 정체성을 명확히 하여 아동복지시설과 유사한 수준의 입·퇴소 절차를 마련하고 자립준비와 퇴소 시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청소년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중장기 청소년쉼터가 아닌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나 위탁가정에 연계하는 등 지자체 단위의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자립지원 서비스 현황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아동·청소년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서비스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법률과 하위법령을 기반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보호체계 간 지원내용의 격차와 차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1. 아동보호체계 자립지원 서비스 현황

보호대상 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은 「아동복지법」 제38조부터 제44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명시한 자립지원은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크게 네 가지다(동법 제28조).

가.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주거 지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8조를 근거로 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이 대표적이다. 보호종료 아동 가운데 가정복귀, 기숙사 입소 등을 제외한 자료, 연간 6,000명의 범위에서 매입임대는 보증금 100만원, 월세 12~19만원, 전세임대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9~17만원(만 20세까지 무상, 보호종료 후 5년까지 50% 감면) 수준에서 지원한다. 보증금과 임대료의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보호종료아동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냉장고, 책상 등이 빌트인 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택물색 도우미'로부터 계약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19년에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간 「아동복지법」 상 보호종료아동에 국한되던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청소년쉼터 및 소년원 출원생이 생활하는 자립생활관 퇴소청소년까지 확대하여 대상자 간 차별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주거복지정책과, 2019.10.24. 보도자료).

한편, 2019년에 보건복지부는 전국 7개 광역시도 시범사업으로 보호

종료아동 대상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신설하였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청년매입임대주택과 원룸형 주택 총 240호⁹⁾를 사례관리 기간 2년 동안 보증금, 월세 일체를 면제하고 수도·전기료 등 관리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 자립지원전담요원 경험을 지닌 통합사례관리사의 사례관리에 기초한 지원을 기반으로 하며 주택당 150만 원¹⁰⁾ 이내에서 주거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기본적인 가전과 집기 구입을 지원하고, 아동 1인당 월 20만 원¹¹⁾의 사례관리비가 제공된다. 본 사업에 참여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n=133), 전체의 87.2%가 안정적인 집이 생겨서 좋고 10명 중 8명 이상이 재계약을 희망하였다. 반면 계약 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 직장, 학교 등과 원거리거나 냉방·방음 등 주거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정 외, 2019b).

주거 지원과 관련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인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이 전국 12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본 시설은 보호종료아동이 취업 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동안 주거비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는데, 보호종료아동이 30명 이상일 때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이 배치된다. 그러나 매년 시설당 30명 내외인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생활관이 교통이 불편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시설’과 비슷한 환경과 형태로 운영되어 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이 다시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밖에 보호종료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보호종료아동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거주 지역에 따

9) 306호로 확대(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p.53

10) 50만 원으로 변경(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p.53

11) 15만 원으로 변경(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p.53

라 최소 15만 8,000원, 최대 26만 6,600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생활지원의 경우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이 대표적이다. 전자는 보호종료된 당해 연도에 아동 1인당 일시 500만 원의 자립 종자돈(seed money)을 지원하는데, 주거비 마련(보증금 등)을 위해 조기 지급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이나 위탁부모가 아동의 동의하에 신청할 수 있고 보호종료일 30일 전부터 아동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아동은 자립정착금 신청 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¹²⁾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정착을 돕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아동에게 지급되었으나 2020년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되어 지원대상 규모는 약 5,000명에서 7,800명으로 증가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예정자의 경우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이버 강의 이수증을 첨부하여 아동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수당액은 월 30만 원이며 최대 3년 간 아동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나.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CDA)가 있다. 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가정위탁 보호 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이다. 해당 아동이 후원자와 보호자 등의 지원을 받아 매월 일정

12) 부산광역시의 경우 일반 아동은 500만 원, 장애아동은 7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며, 이 외 16개 시·도는 모두 500만 원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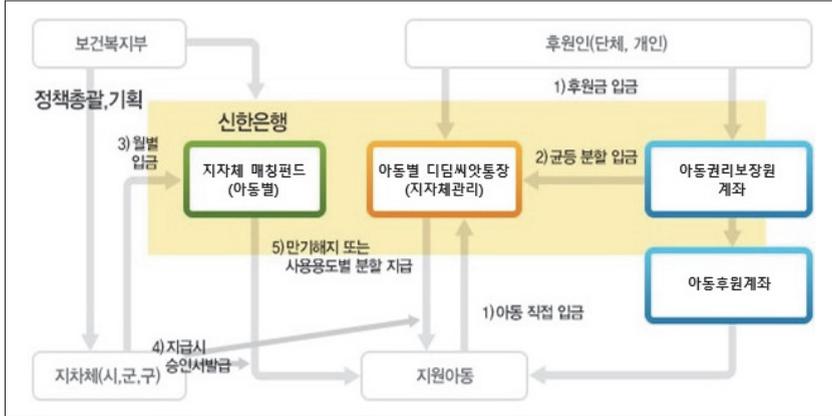
금액을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하면 최대 월 5만 원, 동일한 금액을 만17세 까지 정부 매칭 지원으로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에 적립된다. 단, 저축은 월 1,000원 이상 5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부터 만 24세 미만까지 학자금(대학·대학원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창업지원(사무실 보증금, 장비 구입비, 시설 설치비), 취업훈련 및 기술자격(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운전면허 등 학원등록금), 주거 마련(임대아파트 보증금, 주택 구입자금, 전세금 등), 의료비(진료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결혼자금(본인 희망 시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이 밖의 자립 목적 이외의 해지는 제한된다. 단,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한 경우는 2회까지 조기인출이 가능하고 만 24세 이후에는 별도의 사유 없이 해지 및 인출이 가능하다.

2018년 12월 기준 지원 아동은 8만 1,412명이며,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가구 내 아동이 69%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시설 보호아동이 14%, 가정위탁 아동 9%,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복귀 아동이 각각 3%, 소년소녀가정 및 장애인시설 아동이 각각 1% 순이다¹³⁾. 현재 아동의 총 저축액은 3,852억 원(정부지원 1,624억 원), 후원금 지급액은 55억 원 규모이며 관련 사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래의 절차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그림 2-7).

13)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통계로 보는 디딤씨앗통장(n.d.-a)”, <https://www.adongcda.or.kr/?goPage=177>에서 2020.08.21. 인출.

[그림 2-7] 디딤씨앗통장(CDA) 운영 절차



자료: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n.d.-b), “디딤씨앗통장 소개”, <https://www.adongcda.or.kr/?goPage=107>에서 2020.06.02. 인출.

다. 자립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근거기반의 정책 추진과 환류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38조 제3항을 근거로 2008년부터 매 4년을 주기로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08년과 '12년에는 양육시설의 (연장) 보호아동과 보호종료아동만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16년에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종료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각 연도 조사대상 아동의 범위에는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이에 '20년에는 보호유형별 (연장)보호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을 모두 포함한 첫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와 같은 법정실태조사는 보호대상 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국가 수준의 자립지원 서비스 개발과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라.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법률에서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시행령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이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일부 마련되어 있다. 특히 2019년 7월 16일에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 설립되면서 기존의 민간단체인 ‘아동자립지원단’이 보장원의 ‘자립지원부’로 흡수되어 자립지원을 위한 중앙지원기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광역시·도 단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미흡하여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현재 일부 광역시·도에서 지방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확대하고 국비 투입을 통해, 향후 보장원(중앙)과 광역시·도, 일선 시설과 위탁가정(시·군·구)으로 이어지는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보호종료아동의 사후관리 사무는 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가정위탁지원센터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광역시·도 단위의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전담요원, (주거지원통합서비스)통합사례관리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DB 구축 및 통계관리 업무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퇴소아동 사후관리까지 시설 종사자가 담당하거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사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이상정 외, 2019b).

2. 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서비스 현황

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서비스에 관한 법적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이다. 다만 해당 조문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를 규정한 것이라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이 보호하는 청소년의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라는 정도만 언급하고 있다. 즉, 현행 법률과 하위 법령에서 청소년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서비스의 세부내용과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청소년보호체계에서는 각 시설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자립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자립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한다.

가. 청소년쉼터의 자립지원 서비스

청소년보호체계에서는 중장기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자립생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퇴소 후 생활계획, 자립생활 준비, 사회적응 지원이 포함된다. 먼저 퇴소 후 생활계획의 경우 청소년쉼터는 지자체나 시설장의 허가가 없더라도 청소년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입·퇴소가 자유롭지만, 퇴소 이후의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예상되는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상담한다.

다음으로 자립생활 준비의 일환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이나 다른 시설에 재입소를 연계하거나 독립생활을 계획할 경우 주거비 부담 및 계약 관련 지원과 지출 관리, 가사 관리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응 지원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거나 응급상황 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

과 하위 법령에서 청소년보호체계 내 청소년에 대한 주거 지원을 포함한 자립지원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시설별 자립지원 내용 간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청소년쉼터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과 같이 자립을 지원하는 별도의 전담인력이 부재하고, 입소 청소년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CDA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과 퇴소 시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 가운데 대다수는 안정적인 주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퇴소를 맞이하는 실정이다.

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자립지원 서비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법적 근거는 2012년에 마련되었으나 국비 지원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서울(2), 인천(2), 경기(3), 충남(1) 지역에 총 8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4곳은 생활관이 없는 비숙박형, 나머지 3곳은 혼합형(비숙박형+숙박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활관을 운영하지 않는 비숙박형 지원관은 ‘주거지원통합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자립지원관 1개소당 인건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가 연간 2,500만 원 수준에 불과하여 직접지원보다 연계를 통한 월세 지원, 생활관 입소, 금융교육 및 저축 관리, 일상생활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아동보호체계의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 기능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운영 개요 및 자립지원 서비스 내용을 요약하면 <표 2-11>과 같다.

〈표 2-11〉 청소년자립지원관 자립지원 서비스 내용

구분	비숙박형 이용시설 (주거연계형)	혼합형 (생활관+주거연계)
운영형태	독립주거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생활관 운영 + 독립생활 지원 + 자립지원
생활관 입소기간	-	최초 3개월 이내(추가 3개월 연장) *자체 사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지원기간	기본 1년 이내(6개월씩 2회 연장), 지원종료 후 사후관리	
지원내용	자립역량(수준) 평가, 개별화된 자립계획 수립, 주거 지원, 독립생활 사후관리	
통합사례관리	자립지원요원 1인당 청소년 기본 8명 사례관리(최소 5명으로 하고 사례심의위원회에서 자립준비도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청소년 1명을 1.2명, 0.8명 등으로 간주 가능) 자립지원요원이 4명인 시설은 연간 50사례를 목표로 함	
사례심의위원회	대상자 선정 기준, 서비스 연장 여부, 종결 관련 심의 분기별 1회 사례회의(시설장, 지자체 공무원, 외부 실무자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 구성)	
예산	사업비	1억 2,761만 8,000원(1개소 기준, 국비50%) 사업비는 정정보조금의 20% 이상을 책정(연간 2억 5,000만 원 수준) 사업비는 운영비, 교육비, 자립준비 지원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포함
	운영비	주부식비, 경비(치약칫솔수건 구입), 피복비, 연료비, 의료비 등
	교육비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등
	자립준비 지원비	초대졸 이상 학위취득, 취업준비 활동(직업훈련, 취업훈련, 면접 등) 등 자립활동 비용 지원
	프로 그램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자료 : 여성가족부. (2019e).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매뉴얼, pp.1~62를 요약함.

〈표 2-12〉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원지원 서비스 주요 현황

구분	아동보호체계*			청소년보호체계		
	아동양육시설 (240개소)	공동생활가정 (507개소)	가정위탁 (8,955세대)	자원지원시설(자립생활 관)** (14개소)	청소년쉼터 ¹⁾ (131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²⁾ (6개소)
보훈기간 (지원기간)		18세 미만		취업 중 시설탈락 아동 우선 ·18~24세 이하 취업준비 중 시설청소년 아동 ·24세 이하 보호종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년 이내	·9~24세 이하 ·일시 24시간~7일 ·단기 3개월 이내 (최장 9개월) ·중장기 3년 이내 (최장 4년)	·19~24세 우선 ·숙박형 3개월 이내 (3개월 1회 연장 가능) ·자립지원 6개월 (1년 이내)
보호연장	「아동복지법」 제16조 대하 이하의 학교 재학, 교육훈련 중 기타 주거 등 자립여건 미흡				·가정폭력 또는 친족 성폭력, 아동학대피해 청소년(17~) ·청소년자립지원관 미설치 지역	-
퇴소 및 보호종료 조건		기초자치단체장 승인			·지원기간 만료 ·가정복귀/취업 등 ·자진퇴소/무단퇴소 ·강제퇴소 (운영위원회 결정)	-
자신형성 지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
의료지원		의료보호			의료보호 비혜당 (1인당 의료비 연간 지원한도 100만 원)	의료보호 비혜당
자립계획수립		「아동복지법」에 따라 15세 이상 의무			·단기 1주 내 개별계획 ·중장기 10일 이내 독립 생활계획서 작성	지원종료 후 6개월 간 사후관리
자원지원 진담요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동 30명 이상, 1명	-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	-	자원지원요원 1인당 사후관리 대상 8명

퇴소 및 종결 이 전

구분	아동보호체계*			청소년보호체계	
	아동양육시설 (240개소)	공동생활가정 (507개소)	가정위탁 (8,955세대)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 관) ** (14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²⁾ (6개소)
	(100명 초과 추가 1명)		배치		
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I 등		취업성공패키지 I	취업성공패키지 I ·청년희망키움통장 ·국가장학금(I, II유형)
지립정착금	퇴소 시 일시 500만 원		-	-	-
자립수당	보호종료 후 2년 이내 18세 이상 매월 30만 원		-	-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자립수당과 별도의 원통형 임대주택+ 사례관리비 월 20만 원 (19년 신규사업)			-	·숙박형 자립지원관 (생활관) 입소 지원 ·임대료 및 월세 지원 ·서비스 이용기간 2년 이상 ·퇴소 후 5년 이내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의 경우 임대주택(1순위)
보호대상 아동 자립 실태조사	「아동복지법」 제38조 '08년부터 매4년 주기			-	-

주: *2019년 말 기준(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_N005에서 2020.08.21. 인출); 아동복지시설 현황, http://www.adongbokji.or.kr/adong/html/news_view.asp?num=60602703398793&page=1&keyword1=&keyword2=&cate=4&PB=보건복지부발간자료&mode=에서 2020.08.21. 인출; 공동생활가정 현황,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 p에서 2020.08.21. 인출)

**아동권리보장원(n.d.) 자립지원시설 현황(<http://www.ncrc.or.kr/jarip/info/jaripFacility.do>에서 2020.08.21. 인출). 이 가운데 강원도아동자립지원시설(R.A.U.M) 현황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흡수된 형태의 생활시설을 갖춘 통합기관임(http://www.gwjatip.co.kr/user_sub.php?gid=www&mu_idx=16에서 2020.08.21. 인출).

자료: 1) 여성가족부. (2019d).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매뉴얼. 서울: 여성가족부. 2) 여성가족부. (2019c).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매뉴얼. 서울: 여성가족부. 3)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2020 자립정보북. 4) 보건복지부. (2020a). 자립지원업무 매뉴얼. 세종: 보건복지부.

제4절 소결

1.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특성의 유사성

아동보호체계 내 위탁가정과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5세 이상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들은 연간 약 1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동일 연령대의 가출·노숙 청소년을 보호 및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체계의 청소년쉼터 입소자 수는 연간 3만 2,000명이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쉼터에서 장기적으로 거주 및 생활하며, 자립지원이 필요한 15세 이상의 대상자는 아동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대상의 14.5% 정도인 약 1,600명 정도로 추산되었다.

아동보호체계 내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은 부모의 학대(40%), 부모의 이혼(29%)과 미혼부모 및 혼외자(29%)로 인해 보호조치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쉼터 입소자의 경우에도 가족해체 및 가족갈등(46%)이 입소 사유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이는 아동보호체계 내 아동과 마찬가지로 원가정으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아동·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가정 내 문제로 인해 보호체계에서 대리양육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고 아동 및 청소년보호체계의 아동·청소년 모두 퇴소나 보호종료 후 부모나 원가족으로부터 지원이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보호체계의 아동·청소년이 놓여 있는 자립 과정의 위기 내용과 경험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아동·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문제를 경험하였고(이상정 외, 2019a; 진선미, 이주연, 주보라, 2016; 장정은, 전종설, 2018; 장주현, 김정애, 2015; 장혜림, 정익중, 2017),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정은, 전종설, 2018; 장혜림, 정익중,

2017; 정문진, 김수정, 2016).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은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 체계는 다르지만,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이 된 이유와 경로, 자립 과정의 위기 경험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2.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가. 시·도 지원 기관 공백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는 현재 두 체계 모두 시도 단위 지원기관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자립서비스의 지역적 격차와 서비스 전달의 분절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아동보호체계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의 자립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연계할 시·도 차원의 전달체계의 공백이 있다. 아동복지법상의 권고 사항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는, 모든 광역시·도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다(이상정 외, 2019a). 더 나아가 민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립통합지원센터사업 선정 지역이 늘어나면서 아동보호체계 전달체계로서의 통합적 기능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부산과 강원도 지역은 자립통합지원센터사업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기능을 흡수하였고, 중앙 정부 차원의 노력이 부재한다면 향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수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지원과 운영이 담보되어야만 민간자원 기반의 자립통합지원센터사업을 할 수 있지만 민간사업이 완수되는 상당 기간 동안 시·도 단위 자립 업무 전달체계가 부재하거나 공백이 있는 지역이 있으며, 자립지원 서비스의 공공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자립통합지원센터 혹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전 지역에 걸쳐 설치되더라도 국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고 현재와 같이 전액 지방비로 운영된다면 시설운영과 인력배치, 자립 서비스의 격차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보호체계는 사실상 광역시·도 단위의 지원기관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시·도 단위로 설치되고 있는 청소년보호체계의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최근에 개소한 충남 지역과 2020년 7월부터 운영 예정인 대구 지역을 포함하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9개소가 분포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의 증장기슭터가 장기 보호에 따른 자립지원 기능 위주로 개편해 나가는 과정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은 전무한 상황이다. 나아가 청소년보호체계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시설 입·퇴소 과정에서 시도와 시·군·구의 개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광역시·도 단위에서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간 지원기능을 통합,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고 일선 기관의 보호 및 자립 서비스 질과 내용을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 자립지원기관 기능의 유사성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기관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자립지원 관련 자원 연계와 발굴, 사례관리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주거 지원, 사후관리로서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숙박형 청소년자립지원관과 유사하다. 또한, 생활관 운영과 사례관리 기능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자립통합지원센터는 역시 생활관 운영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동 체계 내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시설) 그리고 청소년보호체계의 혼합형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그 기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전자와 후자의 특성이 모두 반영되어 지역사회에서 주거와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의 형태로 일부 시·도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유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과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에 세종, 울산과 같은 지역에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 통합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역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자립지원 업무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백과 중복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유사 기관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표 2-13〉 자립지원기관

지역		아동보호체계					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시설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자립통합지원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시도	합계				1기	2기**	혼합형	비숙박형
서울	7	1	3	1			1	1
인천	4	1		1			2	
경기	6	1		1		1		3
강원	1				1			
충남	4	1		1		1	1	
충북	2		1	1				
세종	0							
대전	2		1	1				
경북	2	1			1*			
경남	2			1		1		
대구	3		2		1			1 ⁺
울산	0							
부산	3		1	1	1			
전북	3		1	1		1		
전남	4	1	1	1		1		
광주	3	1		1	1*			
제주	1	1						
합계	50	8	13	10	5	5	4	5

주: *사업 예정 상태; **2020년도 선정 지역
+2020년 7월 운영 예정

자료: 중앙아동청소년자립통합사업단(n.d.-b)(http://www.adongbokji.or.kr/adong/html/3_4.asp에서 2020.6.26.인출), 아동권리보장원(n.d.) (<http://ncrc.or.kr/jarip/info/jaripOrgan.do>에서 2020.6.26.인출), 보건복지부, (2020b), 아동복지시설 현황,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https://www.kyci.or.kr/userSite/Local_recovery/list.asp?basicNum=1에서 2020.6.26.인출)

다.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간 자립지원 서비스 격차

아동보호체계의 보호대상 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은 「아동복지법」 제38조부터 제44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명시한 자립지원은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이다. 따라서 아동보호체계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은 주거 지원과 관련하여 매입·전세 임대주택,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자립지원 시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한점이 있지만 자립지원전담요원을 통해 자립준비와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아동 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CAD)를 통해 보호기간 동안 자산형성이 가능하며,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으로 생활지원을 받는다.

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서비스 법적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이 보호하는 청소년의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만 명명하고 있을 뿐 청소년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서비스의 세부내용과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는 ‘자립생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립 관련 상담 정도가 제공되고 있다. 자립생활 준비의 일환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이나 다른 시설로 재입소를 연계하거나 독립생활을 계획할 경우 주거비 부담 및 계약 관련 지원과 지출 관리, 가사 관리 등의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2018년도부터 국비 지원이 시작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사업비가 연간 2,5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직접 지원보다 연계를 통한 월세 지원, 생활관 입소, 금융교육 및 저축 관리, 일상생활 상담 등을 주로 지원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아동보호체계의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 기능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과 하위 법

령에서 청소년보호체계 내 청소년에 대한 주거 지원을 포함한 자립지원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시설별 자립지원 내용 간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청소년보호체계의 증장기 청소년쉼터와 같은 시설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과 같이 자립을 지원하는 별도의 전담인력이 부재하고, 입소 청소년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CDA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과 퇴소 시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아동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를 고려할 때, 체계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한 ‘자립지원’의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역할 중 하나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하위 법령에서 자립지원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보호기간 중 자산형성 지원, 주거 지원, 실태조사,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 자립준비 및 자립지원을 위한 핵심요소가 사실상 공백 상태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복지시설의 사업비(전체 사업비의 20% 수준) 중 일부가 자립지원에 사용되기 때문에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예산 자체도 미미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보호체계 모두 자립지원 서비스는 지자체가 아닌 개별 법률에서 각각 명시한 시설(agency)을 중심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해당 시설의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자립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구조다. 즉, 같은 아동보호체계 내에서도 자립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고, 아동·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퇴소 시 아동·청소년보호체계에 제공하는 자립지원은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립지원 서비스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보호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해외 사례연구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소결



제 3 장

보호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해외 사례연구

본 장에서는 보호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위탁보호와 가출·노숙 아동·청소년 담당 부서를 보건 복지부 산하에 두고 있고 영국은 보호 아동·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지원의 의무를 지방 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각각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보호아동·청소년 체계 간 자립지원의 격차 해소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1절 미국

1.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현황

가. 아동보호체계

미국의 가정 외 보호아동은 위탁보호체계 (foster care system)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 Adoption and Foster Care Analysis and Reporting System(AFCARS)에서 2018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위탁보호시스템 내 아동·청소년 규모는 약 43만 명이다. 이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시설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친족위탁 27%, 일반가정위탁 52%, 입양 전 위탁 12%, 보호시설 및 그룹홈 8%, 기타: 1% 정도로 일반가정위탁이나 친족 위탁의 경우가 가장 많다.

이들 중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령인 만 14세(체이피법에서

지원 가능한 최소 연령)부터 AFCARS상에서 추적 가능한 최대 연령인 만 20세를 잠재적인 자립지원 대상이라고 본다면, 2018년 기준으로 약 9만 9,000명 정도가 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이들 중 위탁보호가 종료될 예정 청소년들의 규모는 약 5만 7,000여 명에 달한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 DHHS], 2019). 또한, 미국 전환기 청소년 데이터베이스(National Youth in Transition Database)에 따르면, 2011년~2016년을 기준으로 매년 9만 7,000명~11만 2,000여 명의 청소년이 자립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ernandes-Alcantara, 2019).

나. 청소년보호체계

위탁보호체계를 통해 그 규모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가정 외 보호 아동·청소년들과는 달리, 미국에서도 가출이나 노숙 등의 생활을 하는 아동·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다양한 조사방법을 통해 대략적인 규모를 추정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조사에는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연례 조사와 Voices of Youth Count의 조사가 있다.

먼저 2019년 1월에 실시된 주택도시개발부 연례조사¹⁴⁾에 따르면 부모나 보호자 없이 노숙 중인 아동·청소년(Unaccompanied Homeless Children and Youth)은 3만 5,0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약 절반 정도는 시설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숙(unsheltered homelessness)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거주지가 없이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의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U.S. Department

14) HUD에서는 매년 1월, 하룻밤 동안의 노숙인들 규모를 조사하고 있음.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U.S. DHUD], 2020). Voices of Youth Count 조사¹⁵⁾는 2016년~2017년에 약 26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전국 단위 무작위 조사인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노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13~17세 조사 참여자 중에서는 3.0%, 18~25세 조사 참여자 중에서는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Morton, Dworsky, Samuels & Patel, 2018). 노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약 10%의 18~25세의 청소년을 동 연령대의 전체 인구 비율로 환산하면 약 350만 명 정도가 된다 (Morton et al., 2018).

이 가운데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은 주별 혹은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가출·노숙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서비스 이용자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연방정부에서 가출·노숙 청소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주요 프로그램 두 가지의 대상자 규모를 살펴보면, Continuums of Care 프로그램¹⁶⁾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전환주택 서비스(Transitional Housing) 대상자 중 만 18세~24세의 청소년들이 약 8,600명이었고, 전환주택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¹⁷⁾)의 경우 2012년~2020년을 기준으로 매년 약 3,000~6,000명 정도로 나타났다 (Office of Housing Voucher Programs, 2017; U.S. DHUD, 2019).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들 이외의 연방지원 프로그램들이나 연방정부의 지원이 아닌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만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들의 대상자 규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출·노숙 청

15) Voices of Youth Count와 시카고 대학 연구진이 함께 청소년 노숙 실태를 다양한 조사방법(전국 설문조사, 노숙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서비스 제공자 대상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함.

16) 연방정부 HUD에서 운영기금을 보조하는 노숙예방지원프로그램.

17) 연방정부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아동가족부, ACF)에서 운영기금을 보조하는 청소년 노숙예방지원 프로그램.

소년 중 자립지원 대상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대상의 중복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보호체계 내 보호대상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에도 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과 가출 및 노숙 아동·청소년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들이나 가출·노숙 아동·청소년들 모두 가정폭력이나 주거 불안정 등을 이유로 위탁보호나 가출·노숙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주거 불안이라는 공통적인 사회적 위험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체계를 넘나들며 위기를 경험한다. 위탁보호 중 가출하는 경우, 위탁보호 종료 후 주거 불안을 겪는 경우, 가출 후 위탁보호체계에 편입되는 경우 등 다양한 경로로 아동 및 청소년보호체계를 이동한다.

한편 위탁보호체계의 보호를 받은 경험은 가출이나 노숙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보호를 받은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조사대상과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최소 11%(Brandford & English, 2004)에서 최대 37%(Collins, Spencer & Ward, 201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노숙 경험과 관련해서는 2016년에 노숙 경험이 있는 청소년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3~25세의 참여자들 중 29%는 위탁보호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Morton et al., 2018).

2.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가. 중앙: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미국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연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방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 및 평가하며,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각종 정부 부처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보호체계 내의 아동·청소년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에서 위탁보호 아동·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서와 가출·노숙 아동·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서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대상 지원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연방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연방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완벽히 통합적인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가 주거 지원을 중심으로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아동정책국(Children's Bureau)을 중심으로 위탁보호 및 위탁보호종료 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체이퍼 프로그램과 ETV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고,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가족청소년정책국(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의 경우, 가출·노숙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인 전

환주택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을 관리한다. 한편, 주 거도시개발부의 경우, 노숙자 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인 Continuums of Care 프로그램, Family Unification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데, 이들 프로그램 대상자에는 위탁보호 및 위탁보호종료, 가출/ 노숙 아동·청소년이 포함된다.

나. 지방

1) 주정부 및 지역정부(State/Local Government)

주정부 및 지역정부는 주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과 주정부/지역정부의 기금을 혼합하여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주정부/지역정부만의 예산이나 기금을 통해 자체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립지원 프로그램들은 연방정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주거불안을 겪는 노숙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주정부 및 지역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운영하거나 혹은 위탁을 맡긴다.

이러한 계획과 운영의 과정에서 주정부 및 지역정부는 주 내 혹은 지역 사회 내 비정부 사회서비스기관 및 주거서비스 사업자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하게 된다. 특히 주정부 및 지역정부 산하의 공공아동복지기관(Public Child Welfare Agencies)의 경우, 직접 사례관리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공공아동복지기관에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노숙 관련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하게 되는 경우, 공공아동복지기관은 해당 청소년의 수혜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역할을 맡고, 프로그램 지원 결정은 공공주택기관(Public housing agencies PHAs)에서 맡는다(Office of

Housing Voucher Programs, 2017).

2) 비정부 사회서비스 기관

앞서 언급했듯이 주정부나 지역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위탁운영이나 협력을 통해 수행될 수 있는데, 비정부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주로 주정부 혹은 지역정부와 계약하여 위탁보호 청소년들에게 사례관리나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이상정 외, 2019a). 한편, 가출 및 노숙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기관들 또한 존재하며, 이 경우, 연방정부의 가출 및 노숙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Runaway and Homeless Youth Program grants)을 받아 자립지원을 포함한 각종 예방 및 긴급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비정부 사회서비스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기금은 기관의 여력에 따라 정부기관에서 제공되는 부분 외에도 후원단체의 지원 혹은 자체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한 재원이 포함되기도 한다.

3) 주거서비스 사업자

공공주택기관과 정부와 연계된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주거서비스 기관에 해당된다. 특히 공공주택기관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공공아동복지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연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아동복지기관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연계하면, 공공주택기관이 서비스 지원자를 대기자 명단에 올리고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Office of Housing

Voucher Programs, 2017).

4) 기타 자립지원 서비스 관련기관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이나 사회서비스 기관들 이외에도 이러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및 혜택을 제공하는 협력기관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병원 및 의료서비스 기관, 학교 및 교육기관, 직업교육 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주 혹은 지역사회에 따라서는 청소년 자립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에 포함되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하기도 한다(이상정 외, 2019a).

5) Continuum of Care

Continuum of Care는 현재 미국의 노숙자예방정책의 핵심이 되는 지역사회 협의체들로서 주거도시개발부의 지원금을 받아 다양한 주거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 Continuum of Care로 선정되려면 해당 지역사회 내 노숙예방계획을 제출하여 다양한 후보들과 경쟁을 거쳐야 하며, 역량만 갖추고 있다면 주정부나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비영리조직까지 협의체의 주체인 입찰후보가 될 수 있다(HUD Exchange, n.d.). 2015년~2019년 기준으로 약 400여 개의 Continuum of Care가 운영되고 있으며(HUD Exchange, 2020), 이들이 운영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영구 임대주택(Permanent Housing), 전환주택(Transitional Housing), 노숙지원서비스(Supportive Services Only), 노숙인 관리정보시스템(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노숙예방(Homeless Prevention) 프로그램 등이 있다(HUD Exchange, n.d.).

다. 정보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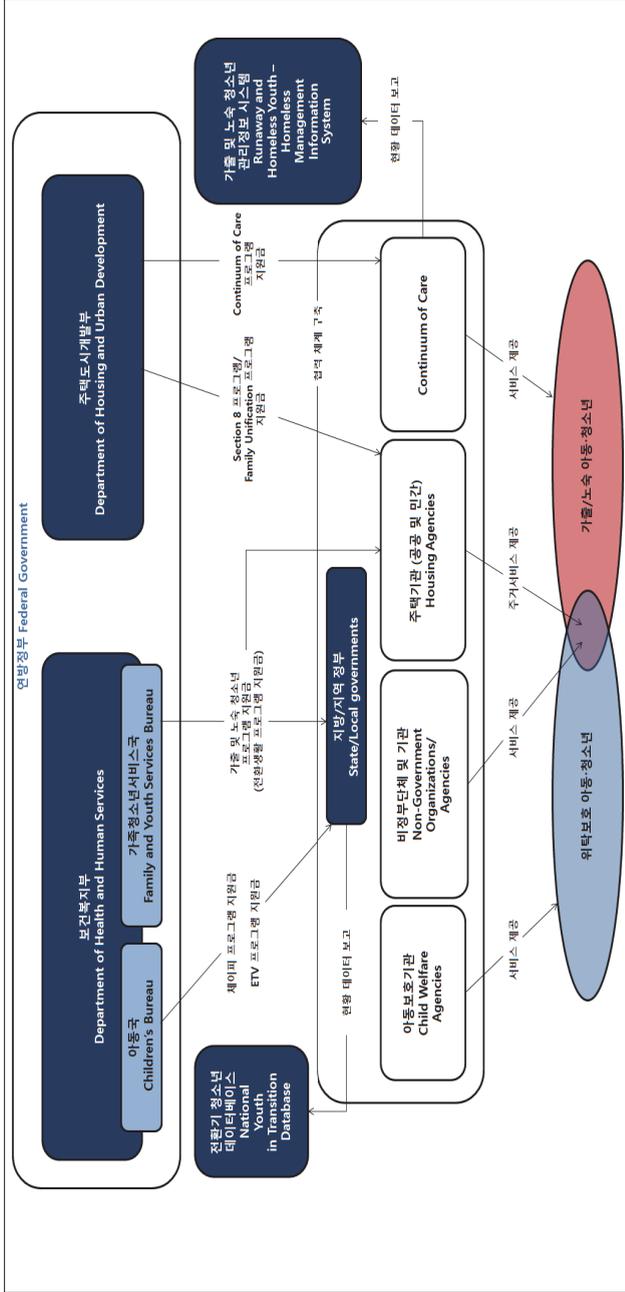
1) 전환기 청소년 데이터베이스(National Youth in Transition Database)

미국의 경우, 위탁보호 혹은 위탁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제공되는 자립지원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통합데이터관리 시스템인 전환기 청소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보호 혹은 보호종료 아동·청소년들과 관련된 자료를 해당 아동·청소년이 만 17세가 되면 수집하기 시작하며, 이후 2년 주기로 만 19세와 만 21세까지 자료를 추적하여 수집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 수집의 주체는 주정부들로, 각 주정부들은 이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Fernandes-Alcantara, 2019). 이렇게 보고된 데이터는 사회복지부 산하 아동정책국을 통해 취합된다.

2) 가출 및 노숙 청소년 관리정보 시스템(Runaway and Homeless Youth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앞서 Continuum of Care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언급했던 노숙인 관리정보 시스템(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 포함된 청소년용 노숙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이 가출 및 노숙 청소년 관리정보 시스템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노숙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존재하던 기존의 노숙인 관리정보 시스템을 확장한 것으로 Continuums of Care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의 현황과 지원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는 주체는 각 지역사회의 Continuums of Care이며, 데이터의 통합과 관리는 주택도시개발부에서 담당한다.

[그림 3-1] 위탁보호 및 가출·노숙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자료: 저자 작성.

3. 주요 자립지원 서비스

가. 위탁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자립지원 프로그램

미국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위탁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핵심은 체이피 프로그램과 교육 및 훈련 바우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프로그램들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재량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쓰이는 용도 혹은 서비스 내용은 주마다 혹은 지방정부마다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체이피 프로그램(John H. 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체이피 프로그램은 만 16~21세의 위탁보호 혹은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지원금과 주정부/지방정부의 예산을 혼합하여 운영하게 된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교육 및 직업훈련을 위한 서비스, 정서적 지원(emotional support), 기본생활(room and board) 관련 지원 등이 있다. 특히 기본생활 관련 지원의 경우, 주로 만 18~21세 청소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Fernandes-Alcantara, 2019). 체이피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주정부는 전환기 청소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한편, 체이피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방식은 주에 따라 혹은 지역정부에 따라 다르다. 메인 주의 예를 들어 보면, 한 명의 주정부 자립생활 코디네이터(independent

living coordinator)의 관리하에 인생기술교육 코디네이터들이(life skill education coordinators) 지역별로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을 담당하여 자립지원을 한다.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정부가 아닌 카운티 정부들이 각각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정부는 운영을 지원 및 감독만 하고 있다. 또한,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는, 주정부가 민간 사회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위탁하고 있다 (Fernandes-Alcantara, 2019).

2) 교육 및 훈련 바우처 프로그램(Chafee 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s)

교육 및 훈련 바우처 프로그램은 체이피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이지만 그 목적이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특화되어 있고, 지원 가능한 연령도 체이피 프로그램과 다르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을 위한 교육비를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며, 대상은 만 14세 이상부터 만 26세까지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으로, 연간 최대 5,000달러의 바우처를 최장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Fernandes-Alcantara, 2019).

나. 가출·노숙 및 위탁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자립지원 프로그램

1) 가족결합 프로그램(Family Unification Program)

가족결합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주거 지원 제도인 Section 8(Housing Choice Voucher)에서 파생된 프로그램으로, 초기에는 주거문제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하지만 이후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들의 주거 문제에도 이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Dion, Kleinman, Kauff & Dworsky, 2014).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저소득층 혹은 노숙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청소년, 성인, 가족이며, 위탁보호체계 내에 보호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조건에 따라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개인이 신청할 경우, 만16~25세 사이에 최장 36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Fernandes-Alcantara, 2019).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주거비용(월세)의 70%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자립 관련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공공주택기관은 수혜자를 선정하고 바우처를 제공하며, 공공아동복지기관이 자립 관련 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제공하거나 연계한다. 또한 검정고시 준비, 중등 과정 후의 교육, 그리고 직업교육 같은 교육과 관련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취업상담 그리고 취업 알선 같은 일자리 찾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와 개인 상담이나 집단상담도 받을 수 있다(Dion et al., 2014).

2) 전환주택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 TLP)

전환주택 프로그램의 경우, 가출 및 노숙 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을 근거로 제공되는 세 가지¹⁸⁾ 지원 프로그램들 중 하나로, 나머지 두 가지 프로그램들이 긴급 혹은 예방지원인 것에 반해 중단기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들을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만 16~21세의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이며, 프로그

18) 여기서 세 가지 프로그램은 Basic Center Program, Transitional Living Program, 그리고 Street Outreach Program을 말한다. Basic Center Program은 쉼터에 머무는 청소년들을 위한 긴급 혹은 단기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며, Street Outreach Program은 가출 및 노숙청소년들을 거리로 나가 발굴하고 사정하기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다 (Family & Youth Services Bureau, n.d.).

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540일까지이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최장 635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일 경우 635일이 지나도 주거 지원이 연장될 수 있다(Dworsky, Dillman, Dion, Coffee-Borden & Rosenau, 2012). 이 프로그램은 주거서비스를 기반으로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공하고 있는 거주시설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다. 그 종류에는 호스트 가족과 함께 지내는 형태인 host family homes, 청소년들의 공동거주형태인 그룹홈과 임산부 그룹홈, 그리고 관리감독하의 독립임대아파트(supervised apartment) 등이 있다. 여기서 독립임대아파트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거나 개인 임대주의 도움으로 임대된 곳으로 정하게 된다. 한편 이 프로그램의 이용자는 반드시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와 자립이나 다른 적절한 거주지로 전환을 위해서 구체적인 개별화된 사례 계획(individualized case plan)을 세워야 한다(Dworsky et al., 2012). 프로그램 이용자는 소비자 교육, 재정관리, 집안살림기술, 요리 그리고 양육기술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 기술을 익힐 수 있다. 또한 가족결합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검정고시 준비, 중등 과정 후의 교육, 그리고 직업교육 등의 교육 기회를 마련하거나 취업 관련 서비스나 건강/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전환주택 프로그램의 사업대상자는 주정부, 지역정부 기관들뿐만 아니라 일반 비정부기관도 포함될 수 있으며, 미국 전역의 약 200여 개 기관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U.S. DHHS, 2019).

이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가출·노숙 청소년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위탁보호 아동·청소년 역시 수혜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의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는 전환주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탁보호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탁보

호를 받은 적이 있는 청소년들이 전환주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노숙을 경험한 뒤에야 수혜 대상이 되지만 미시간주의 경우에는 위탁보호가 종료되는 연령의 청소년을 위해서 노숙 경험 유무와 무관하게 전환주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Pergamit, McDaniel & Hawkins, 2012).

다. 기출·노숙 아동·청소년 대상 자립지원 프로그램: Continuum of Care

앞서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언급했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협력체인 Continuum of Care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대상은 만 18~24세의 기출·노숙 청소년들이다(Dworsky et al., 2012). 지원 기간은 주거서비스에 따라 상이하며, 앞서 언급한 다른 주거중심 자립지원 서비스들처럼 주거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Continuum of Care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그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과 자립지원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계층의 노숙 예방을 위한 서비스들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 자립 수준이나 대상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 서비스 모델 세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전환주택(Transitional Housing)

독립적인 생활을 할 준비가 된 청소년에게 제한된 시간(최대 21~24개월) 동안 주거지를 제공한다. 이 모델은 생활 기술 개발과 학교나 안정적인 직장에 속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둔다. 제공되는 주거지 유형으로는 야간 상주 직원이 있는 congregate housing(특히 18세 이하 청소년 또는 구조화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함), 현장에 거주하는 슈퍼바이저

가 있는 군집 주거지(clustered units), 슈퍼바이저가 없는 군집 주거지, 산발 주거지(scattered site apartments), 청소년이 스스로 임대계약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공용주거지(shared units) 등이 있다. 또한 청소년이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결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연결해주는데, 이를 위해 주거서비스 탐색을 돕는 기관과 영구적인 주거지 제공자 간의 종료계획이 필요하다. 이 종료계획은 청소년이 선택권에 대해 인지하고 독립생활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대로 바로 독립생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초기에 미리 논의된다. 일반적으로 Continuum of Care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종료 후 최대 6개월까지 사후 사례관리를 제공한다(U.S. DHUD, n.d.).

2) 신속주택(Rapid Re-Housing)

신속주택은 가족과 재결합이 불가능하거나 재결합에 시간이 걸리는 청소년 중 높은 수준의 자립생활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연령에 맞게 개별화된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집약적(매일 또는 1주일에 2~3번)이며, 청소년의 생활이 안정화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여기서 사례관리자는 문제를 중재하고 지지적인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시행착오들을 받아들이면서 자립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다. 특히 사례관리자는 자립생활기술(재정관리, 요리, 기본적인 생활기술, 관계의 경계 설정 등)을 익히게 해주고, 필요에 따라 임상 지원(Clinical support)을 위해 조율한다. 또한 신속주택 모델은 청소년들에게 임대인과 계약하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 임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을 돕고, 집 계약 시 서명 또는 공동서명을 하거나 감독하며, 이사를 돕고 집세 지출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훈련된 전담 직원이나 주택관련 기관이 협력한다. 마지막으로 신속주택은 장기 주거안정성 달성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최대 24개월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집세는 소득의 30% 이하가 되도록 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을 하도록 돕는다(U.S. DHUD, n.d.).

3) 무기한 지원주택(Non-time Limited Supportive Housing)

이 모델은 복잡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노숙자들을 위한 영구지원주택(permanent supportive housing)을 연령대와 서비스를 청소년에게 맞춘 모델이다. 무기한 지원주택은 정신건강, 약물남용, 트라우마와 관련된 서비스가 필요한 노숙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이성애자 또래보다 더 높은 비율로 트라우마와 정신건강장애를 경험하는 성소수자 청소년도 포함되며, 보통 18~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 모델은 고위험의 복잡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맞춰 자발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서비스와 함께 위기관리와 트라우마 보호 중심(trauma-informed care)의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현장에 상주하는 종사자는 청소년의 적응속도에 맞춰 돕고, 개별화된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이 독립성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신체적, 사회정서적, 지적, 생활기술 개발을 돕는다. 더욱이 이 모델은 정해진 서비스 기간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준비되었을 때 독립하거나 성인을 위한 영구지원주택으로 옮겨가도록 돕는 “moving on”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 이 모델 역시 신속주택과 마찬가지로 소득의 30%를 집세로 내고 임대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U.S. DHUD, n.d.).

4. 통합적 자립지원 우수사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 자립지원 프로그램들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주정부/지역정부 혹은 비정부 서비스제공자들 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혼합되어 제공될 수 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수많은 프로그램들 또한 혼합되어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서비스제공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관련 우수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뉴멕시코주: 체이피 프로그램과 전환주택 프로그램의 결합¹⁹⁾

뉴멕시코는 체이피 주거생활지원 예산(Chafee room and board)의 일부를 이용하여 5개 지역사회 내 청소년서비스기관과 계약을 맺고 주 전역에서 전환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개별화되어 있으며, 체이피 주거생활지원 예산의 한도 내에서 각자의 규정과 요건을 결정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관리하는 clustered housing을 제공하며 기본적으로 가출 및 노숙 청소년 전환주택 프로그램 모델(Transitional Living Program Runaway and Homeless Youth model)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체이피 주거생활지원 예산도 일부 투입되며, 이는 위탁보호종료 연령의 청소년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다. 뉴멕시코의 프로그램은 주택도시개발부의 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며, 연방 전환주택 프로그램의 기준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뉴멕시코의 모든 프로그램은 교육이나 직업 관련 요구 조건이 있지만, 일부만 상담 및 지역사

19) (Pergamit et al., 2012)에서 요약 및 재구성.

회 봉사(community service work)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소득이나 재정과 관련된 요구조건은 없다.

나. 위스콘신주: 전환주택 프로그램과 취업교육 연계²⁰⁾

위스콘신주 Green Bay 지역의 Family Services of Northeast Wisconsin은 청소년들의 관심 직업에 맞는 직업훈련과 취업기술 향상을 위한 독창적인 방법을 개발해왔다. 전환주택 프로그램은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고용 프로그램(Pathway to Employment Program)과 협력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취업 장벽을 확인하고 취업과 관련된 선입견을 깨는 것을 돕기 위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관 내 자체적인 프로그램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청소년의 80%는 직업 탐구 교육과정을 완수하였고, 73%는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전체 참가 청소년의 1/3은 인근 전문대(Technical College)의 간호사 또는 자동차 관련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평가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환주택 프로그램과 취업/교육 관련 연계는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다. 켄터키주 Louisville: Continuum of Care를 통한 적극적인 지역사회 파트너십²¹⁾

켄터키주 Louisville의 노숙 청소년 위원회(Homeless Youth Committee)는 지역사회의 노숙 청소년의 숫자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

20) (Wubbenhorst, 2018)에서 요약 및 재구성.

21) (Coalition for the Homeless, 2019)에서 요약 및 재구성.

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을 세우고, 주거지와 그 외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명단을 만들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자원을 사정했다. 위원회는 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주택도시개발부와 협력하고 노숙자 아웃리치 서비스 그리고 노숙 청소년을 위한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Continuum of Care의 재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 노숙을 예방하고 종결시키기 위해 결성된 지역사회 파트너십인 노숙 청소년 위원회에서 2016년에 처음 시작하였다. 이 파트너십에는 Louisville County Continuum of Care, Coalition for the Homeless, CSYA, 그리고 (노숙 경험이 있는 대표를 포함하는) 청소년 조직과 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²²⁾ 등이 포함되었다.

이 위원회는 노숙 청소년에 관한 지역 설문조사, 노숙 관리 정보 체계(The 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지역 통계자료, 지역 노숙 청소년 서비스 검토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했으며, 현재의 서비스가 노숙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 주류 서비스기관에서 파트너를 모집했다. 이 위원회는 이전에 재향군인과 만성 노숙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룬 경험을 토대로 청년 노숙을 없애기 위한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이를 보고서로 발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Louisville Continuum of Care가 범위를 확대하고 노숙 청소년 위원회를 창설하는 데 기반이 되었다.

22) 인신매매 대책위원회(Human Trafficking Task Force), True Up(위탁보호를 떠난 청소년과 청년을 돕기 위한 청소년/청년 자체 주도), 루이빌 청소년 그룹(LGBTQ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비영리 지역사회 조직), YMCA Safe Place 서비스(가출, 노숙 청소년 프로그램 수령자(grantee)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성년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자), Centerstone(드롭인 센터와 장애가 있거나 만성 노숙 중인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 REimage(청소년, 청년관련 정의 서비스를 조율하는 리더 기관), 제퍼슨 카운티 공립학교와 고등교육 파트너, 청년을 지원하는 연합, Home of the Innocents(10대 부모를 포함한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전환주택/신속주택 서비스 제공자) 등

또한 노숙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 행동 위원회(Youth Action Board)와 파트너십을 맺고 Louisville 청소년 노숙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행동 위원회는 25세 이하의 노숙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 위원회이다. 노숙 청소년 위원회는 관련 프로젝트와 지원금 할당에 관련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교육, 취업, 그리고 사회적/정서적 안녕을 위한 서비스에 연결해주고, 지역사회 내 알려진 노숙 청소년 목록을 만들고 업데이트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사정 과정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향상되었다. 특히 교육과 취업 관련 분야의 서비스 접근이 향상되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지역의 교육, 취업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기회의 스펙트럼을 만드는 일을 했으며, 청소년이 빠르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정/연계 체계를 개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개발하는 일도 하였다. Family Scholar Hous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전에 위탁보호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24개의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했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사례관리를 위해서 Volunteers of America와 파트너십을 맺고 위탁보호 체계를 떠나는 청년들이 주거지 안정성을 유지하고 위탁보호를 떠남에 따라 노숙을 경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과 함께 일할 사례관리자를 배정해주기도 하였다. 취업과 관련해서는 Home of the Innocents 기관 내의 소득/취업 전문가들이 청년들의 취업과 인근 주거지를 구하는 것을 돕는다. 이들은 적절한 사정과 연계를 위해 고용 위원회(Employment Committee)와 함께 일한다.

제2절 영국

1.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현황

가. 아동보호체계

영국의 위탁보호 아동·청소년들은 국가보호체계 내의 청소년(Looked After Children)들이나 보호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Care Leavers)들을 포함한다.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위탁보호체계 내의 아동·청소년(Looked After Children)의 규모는 약 7만 8,000명이다. 친족·지인 위탁 13%, 일반가정위탁 58%, 원가정 관리 보호 7%, 보호시설 및 준자립지원시설 12%, 자립생활시설 4%, 입양 전 위탁 3%의 비율로 위탁보호체계를 구성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DE], 2020a).

이 중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주요대상자는 전환기 보호 청소년(Care leaver)으로 만 16세가 되기 전까지 정부의 보호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보호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자립을 위해 필요한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모두 포함한다(Roberts et al., 2019). 교육부의 2019년 3월 31일 조사에 따르면, 약 4만여 명의 전환기 보호 청소년이 존재한다(DE, 2019)²³⁾. 전환기 보호 아동·청소년 중 자립준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태이거나 혹은 지방정부와 연락 가능한 상태인 전환기 보호아동은 약 3만 7,000명 정도이다

23) [National tables: children looked after in England including adoption 2018 to 2019]에서 직접 산출. (자료는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50322/Children_looked_after_in_England_2019_National_Tables.xlsx에서 2020.06.23. 인출)

(DE, 2019)²⁴). 또한, 현재 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 중 자립 관련 시설에 거주하며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들이 약 6,200여 명이다(DE, 2020b)²⁵).

나. 청소년보호체계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s)의 지원을 받아 민간단체인 Homeless Link는 전국 노숙자 조사를 실시했다. 188개의 노숙자 지원 단체 및 지방 당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18~24세의 청소년 2,830명이 주거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Homeless Link, 2019). 그러나 이는 지원받은 청소년들만이 통계에 드러난 수치일 뿐, 노숙 관련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노숙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대나 가정 해체 등을 경험하고도 보호체계에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들의 규모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분명 필요하다(Centerpoint, 2018).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전국 단위의 민간단체인 Centrepoint에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추정치가 집계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Centrepoint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와 2018년도를 기준으로

24) [National tables: children looked after in England including adoption 2018 to 2019]에서 직접 산출. (자료는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50322/Children_looked_after_in_England_2019_National_Tables.xlsx에서 2020.06.23. 인출)

25) [Looked after children in independent or semi-independent placements]에서 직접 산출. (자료는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64083/Looked_after_children_in_independent_placements.xlsx에서 2020.06.23. 인출)

약 10만 3000명 정도의 아동·청소년이 노숙으로 정부에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 48%가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Centerpoint, 2018).

한편, 영국의 경우에도 자립관련 서비스를 받은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의 정확한 수치는 산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 역시 가출·노숙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주로 주거지원서비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규모만 알 수 있을 뿐이다. Homeless Link의 2017년과 2019년의 조사 따르면, 주거서비스를 제공받는 전체 노숙자들 중 약 35~40% 정도가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청년층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omeless Link, 2019; Homeless Link, 2017)²⁶⁾.

다.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대상의 중복

우리나라, 미국의 아동·청소년보호체계 내 보호대상과 마찬가지로 영국 또한 위탁보호와 가출 및 노숙 아동·청소년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Homeless Link에 따르면 위탁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노숙 위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omeless Link, 2018). 또 다른 조사에서는 위탁보호 시스템에서 나온 후 2년 내에 노숙을 경험하는 경우는 3명 중 1명 정도이며, 노숙자들 중 위탁보호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는 4명 중 1명이라는 추정 결과가 나온 바 있다(DE, 2015). 하지만 영국의 경우 역설적이게도 가장 고위험군인 전환기 보호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지원 서비스(특히 주거지원 서비스)는 넓은 연령대에서 법적 보호를 보장하지만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의 경우, 법적

26) 17년도 조사는 16-25세 40%, 19년 조사는 18-25세 35%임.

보호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노숙 경험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만 16~17세가 되기까지는 아동연령으로 분류되어 주거 지원이 가능하지만, 만 18세 이상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거 지원이나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국가로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Heselwood, Farhan & Shilson-Thomas, 2019).

2.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가. 중앙

1)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부(The Department for Community and Local Government)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부는 전반적으로 주거정책과 관련된 사안들을 관리하며, 지방정부가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예: 전환기 보호아동)과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 관련 정책 및 지침을 개발한다. 또한 노숙예방서비스(예방적 주거지원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지원한다(DE, 2015). 위탁보호와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교육부

전환기 위탁보호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행의 핵심 정부 부처이다. 전환기 보호 아동 관련 법에 따라 지방정부 당국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관리한다. 또한 전환기 위탁보호 아동 통합서비스전달체계의 투명한 운영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통계 자료를 정리하며 이를 토대로 관련 연구를 시행한다. 한편, 산하의 교육기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은 지방정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전환기 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실태를 조사, 검토, 관리, 개입한다(DE, 2015; 이상정 외, 2019a, 재인용).

3) 기타 정부부처

- ① 법무부(The Ministry of Justice): 위탁보호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형사사법체계 기관들이 지방정부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관련 서비스들을 관리하며, 이와 관련된 법무 관련 서비스 재원을 지원한다(DE, 2015; 이상정 외, 2019a, 재인용).
- ② 노동연금부(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이 취업과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세우며, 산하의 고용지원연계센터(Jobcentre Plus)를 통해 이들의 취업을 지원한다(DE, 2015; 이상정 외, 2019a, 재인용).
- ③ 보건부(The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의 건강 및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의료 정책과 지침을 마련한다(DE, 2015; 이상정 외, 2019a, 재인용).
- ④ 내무부(The Home Office):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관련 부처들의 업무를 총괄한다(DE, 2015; 이상정 외, 2019a, 재인용).
- ⑤ 국무조정실(The Cabinet Office): 산하의 사회적 행동 센터(Centre for Social Action)는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서 간 협력을 도모한다(DE, 2015; 이상정 외, 2019a, 재인용).

- ⑥ 경영혁신기술부(The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취업훈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이들의 고등교육 수준과 취업활동에 관한 통계자료를 관리한다(DE, 2015; 이상정 외, 2019a, 재인용).

나. 지방

1) 지방 당국(Local Authorities)

총 152개의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지방 당국은 아동 보호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충족할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해당 아동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간조직을 고용하거나 자선조직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의미한다. 지방 당국은 일반적으로 만 16~17세의 가출·노숙 아동·청소년과 만 16~21세의 위탁보호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일환으로 자립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부(교육기준청)에 만 19~21세의 전환기 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이들에게 제공한 연간 총비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방 당국은 주로 산하의 아동서비스팀 혹은 전환기 보호팀(Children Services or Leaving Care Team)을 통해 전환기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주택기관(Housing Authorities)들을 통해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DE, 2015; 이상정 외, 2019a, 재인용).

또한, 지방 당국은 개별 조연가(personal advisor)를 고용하여 전환기 보호 청소년들이 자립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개별 조연가의 주요 업무는 담당 아동의 욕구사정(needs assessment)과 이를 통한 자립계획(pathway plan) 수립이다. 또한 이

들 개별 조연가는 담당 아동에게 자립준비와 관련된 법적 제도 및 공공 및 민간서비스(예: 주거, 자산, 교육, 취업준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²⁷⁾. 이때 개별 조연가의 기능인 자립계획 수립과 서비스 정보제공(local offer)은 동시에 지방 당국의 법적 의무이기도 하다(DE, 2015; 이상정 외, 2019a, 재인용).

2) 비정부 기관(Non-Government Organizations)/자선 단체(Cha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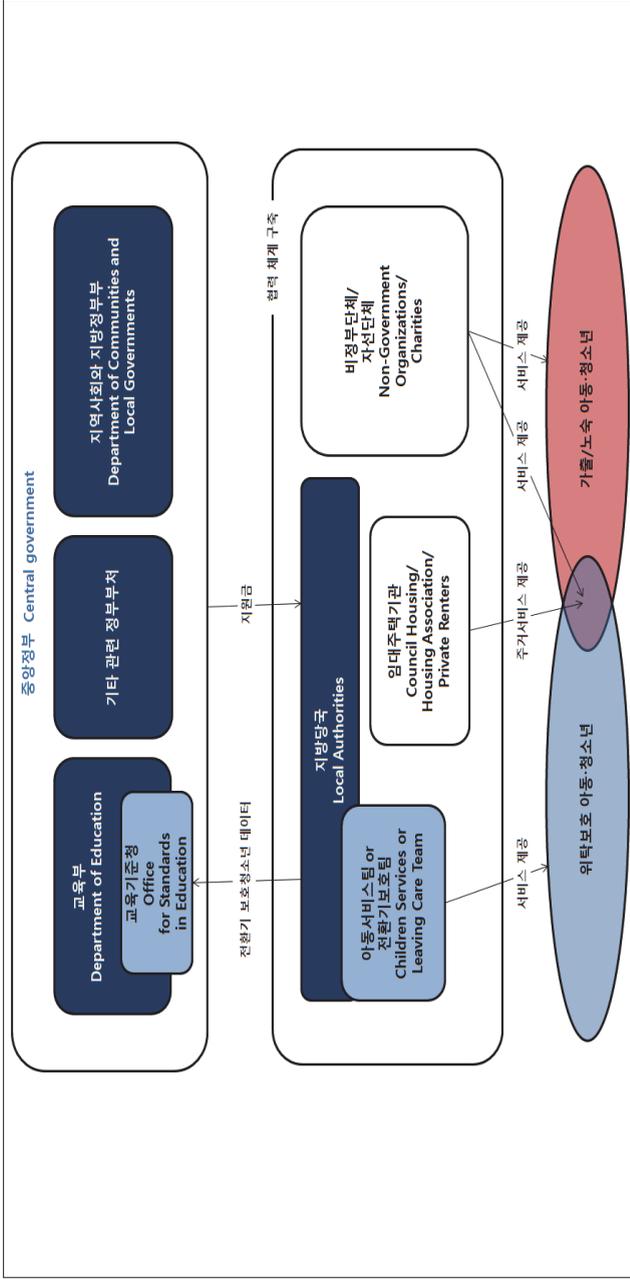
영국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공부문이 감당하기 힘든 부분의 영역을 비정부 기관 혹은 자선단체들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들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의 증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 혹은 기관 연합체는 Catch22, The Care Leavers' Foundation, The Care Leavers' Association, New Horizon, Shelter,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St. Basil's, Barnardos, Homeless Link, Centerpoint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민간단체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7)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은 교육이나 취업훈련 등의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만 25세 전까지,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은 정신건강 문제 등을 가진 고위험군일 경우 최대 만 25세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공공주택/주택연합/민간임대사업자(Council Housing/Housing Association/Private Renters)

전환기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이나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주거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주체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공공주택(Council Housing)은 지방 당국에서 소유 및 운영하는 주택이며, 다음으로 주택연합(Housing Association)은 지방 당국의 지원금을 받아 사회적 주택(Social Housing)을 임대해주는 지역사회 내 주거서비스 조직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개별 조언가의 중재하에 일정한 자립 능력을 갖춘 청소년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주택임대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받지 않으며, 임대료는 임차인인 청소년의 주거지원금과 청소년 본인의 수입으로 지불된다.

[그림 3-2] 위탁보호 및 가출·노숙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자료: 저자 작성.

3. 주요 자립지원 서비스

가. 위탁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자립지원: 전환기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주거 지원 체제(Care Leaver Accommodation and Support Framework)²⁸⁾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 역시 주로 주거서비스를 기반으로 자립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최근 들어 영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통합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단위 주거 지원 자선단체인 St. Basil's가 지역사회와 지역정부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긍정적 경로 체제(Positive Pathways Framework)가 바로 그것이며, 이 체제는 위탁보호 아동·청소년과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 경로 체제를 토대로 하여, St. Basil's와 아동전문 자선단체인 Barnodos는 주거불안에 특히 취약한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해 좀 더 세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환기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주거 지원 체제(Care Leaver Accommodation and Support Framework)'를 마련하였다. 이 두 가지 체제들은 수년간 많은 지역사회에서 검증을 거친 후 2020년부터 영국의 청소년 노숙예방 서비스의 기본체제로 채택되었으며, 따라서 현재 영국 내 대부분의 지방 당국들이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지역사회 내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앞의 서비스 전달체계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방 당국은 자립지원과 관련된 지역사회 자원을 정리한 정보인 Local offer를 보호종료를 앞

28) (St Basils, 2020)에서 요약 및 재구성.

둔 전환기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 '전환기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주거 지원 체제'는 Local offer에서 제시하는 자원들을 어떻게 연계하여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체제는 크게 다음의 5가지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① 주거 선택에 대한 준비 단계

보호체계 내의 아동·청소년은 지역사회 내 주거정보를 포함한 자립지원 서비스 관련 정보를 시설 혹은 위탁 보호자, 개별 조연가,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제공받게 되는데, 이와 함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도 동반된다. 이러한 교육, 훈련, 정보제공에는 수입과 지출 관리, 금융관리, 안전한 대출에 대한 정보, 건강관리, 요리법, 경력관리, 앞으로 제공될 주거 선택지의 종류, 취업시장 전망과 준비 등이 포함된다.

② 전환기 보호 아동·청소년과 함께 설계하는 주거지와 자립지원 서비스 계획 단계

보호체계 내의 청소년들이 자립준비 상태가 되면 보호종료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들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주거지 선택권을 개별 조연가와 함께 모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개별 조연가 혹은 사회복지사를 통해 보호가 종료된 후 구체적인 진로계획(pathway plan)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보호가 종료되어 다른 주거지로 이사를 가기 28일 전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통합적인 주거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지방 당국들 중에는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청소년들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주거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당국 내의 주택서비스 부서와 아동서비스 부서들이 사전협의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주거 선택지의 경우, 개인의 상황뿐만 아니라 지방 당국의 지원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주거불안 완화를 위한 개입 단계

지방 당국이 전환기 보호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위기상황이나 주거불안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환기 보호 아동·청소년이 원가정으로 복귀 후 다시 가정이 해체된다든지, 스스로 월세를 내며 생활했지만 해고 등의 사유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또 지역사회 내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켜 임대계약이 정지되는 등의 위기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또 다른 대안으로 주거지 위기상황을 완화할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책의 예로는 자립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임시로 멈추고 전환기 보호 아동·청소년에게 현재의 위기상황을 해결할 시간을 주는 유예기간 보호(respite/short break), 위기상황이 발생한 주거지의 관련인(원가족, 독립주거지 임대인, 해당 청소년의 동거인 등)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서비스(Mediation or Family Group Conferencing) 등이 있다.

④ 중단기적 맞춤형 주거지 및 주거지원서비스 제시 단계

이 단계에서는 전환기 보호 청소년들의 다양한 상황과 욕구에 대응한 주거 선택지가 제공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집중도에 따라 주거 선택의 4가지 상황(단기/긴급 주거 지원, 높은 수준의 주거 지원, 중간 수준의 주거 지원, 낮은 수준의 주거 지원)으로 나뉜다. 각각의 상황에 대한 주거 선택 유형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단기/긴급 주거 지원: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사전에 마련된 호스트 가족의 집에서 며칠간 머물 수 있는 Nightstop, 그리고 Nightstop과 비슷하게 호스트의 가정에 머물지만, 거주기간이 좀 더 다양하고 생활기술교육 등의 단기적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 Short-term supported lodgings, 긴급한 노숙상황에서 쉼터 개념으로 지원하는 Ring-fenced beds 등이 있다.

- 높은 수준의 주거 지원: 신체적인 장애나 학습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Small group homes이나 Specialist supported lodgings, 그리고 특수한 욕구²⁹⁾가 있는 아동·청소년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욕구에 맞는 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독립 주거지인 Housing First 등이 있다.

- 중간 수준과 낮은 수준의 주거 지원: 전환기 아동·청소년이 일반적으로 보호가 종료된 후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은 중간 혹은 낮은 수준의 주거 지원이다. 주거 지원의 주된 예로는 위탁가정의 보호자들과 보호서비스 종료 후에도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Staying put, 시설보호 서비스 종료 후 시설 근처에서 거주하며 시설보호자들이나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Stay close, 생활 관리자와 함께 지내는 supported housing, 호스트 가정에서 다른 전환기 보호 청소년들과 같이 생활하는 supported lodgings, 취업 혹은 고등교육을 유도하는 공동생활 주거옵션인 Foyer, 혹은 독립주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거 지원은 지방정부나 청소년들의 상황에 맞게 유동적인 자립지원 서비스(Floating support)도 함께 제공된다. 이러한 유동적인 자립지원 서비스

29) 장기간의 노숙, 심리정서적 문제, 약물 문제, 교정 관련 문제, 신체적 문제, 혹은 가정폭력 문제 등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에는 금융, 취업, 생활기술 향상, 사회성 향상, 건강 및 청결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장기적인 주거지 및 주거지원서비스 제시 단계: 중단기적 맞춤형 주거 단계를 통해 전환기 보호 청소년들이 많은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책임질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지를 모색할 수 있게 돕는다.

이러한 단계별 지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기까지 정부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corporate parenting duties)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전환기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은 ①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 받고 스스로 선택하고 조절할 권리를 가지며, ②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 이 체제 안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③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도움 받을 권리를 가지며, ④ 그들의 욕구에 따른 유연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⑤ 지지적이고 무조건적인 관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⑥ 정부는 그들의 보호를 책임져야 한다.

나. 가출·노숙 아동·청소년 대상 자립지원: 긍정적 경로 모델(The Positive Pathways Model)³⁰⁾

안전하고 적절한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긍정적 경로(Positive Pathway)는 지방정부와 파트너 기관들이 아동·청년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노숙을 예방하도록 돕는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지방 당국, 사회적 주택 서비스 제공자, 노숙 관련 기관, 청소년 서비스

30) Positive Pathway Framework(St. Basils., 2020)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기관, 그리고 청소년 및 청년들에 의해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다. 특히 많은 지방 당국은 Positive Pathway 모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성인기로의 전환하도록 도와 노숙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긍정적 경로는 아동·청소년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교육, 훈련, 고용, 건강, 그리고 정서적 안녕과 같은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청소년의 욕구를 분석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들을 검토하며, 지역사회 내 서비스 격차를 분석하고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방 당국과 관련 기관들이 함께 협업한다. 이 모델은 구체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섯 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단계들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보편적 예방(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위한 보편적인 정보와 조언 제공)

이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의 모든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청소년이 독립한 이후 구할 수 있는 주거 선택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와 조언들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학교를 통해 청년, 가족, 그리고 사회서비스 전문가들에게 제공되기도 한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특별히 다른 서비스를 받지 않고도 독립생활로 전환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거불안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가족은 거주지에 따른 재정과 고용 상황 등 다양한 조건에서 생길 수 있는 차이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한편, 이 서비스에는 전환기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한 “local offer” 안내서를 출간하고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안내서에는 학교나 대학에서 제공되는 주거지 옵션 교육, 이용 가능한 지역 내의 주거지 옵션에 대한 청년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와 조언,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와 자원봉사자의 이해 향상을 위한 정보, 조언 그리고 자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② 선택적 예방(초기 개입 서비스)

이 서비스는 노숙의 위험에 처할 위험이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³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위기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아동·청소년과 가족이 이에 대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돕는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서비스 기관이 지역의 고위험군 청년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방정부의 경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이미 관련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다. 이 서비스는 Troubled Families Program, Family Support Program, Youth Support and Offending Services와 같은 각종 위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가족과 머무는 것이 안전하고 가능한 경우 같이 지내도록 돕고, 자립이 필요한 경우 이를 계획해서 실행하는 것을 돕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주거서비스 분야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 관련 서비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 노숙 위험요인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립 서비스 수혜요건이나 보호종료 연령 제한 등에 대해 더 이해하고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차후에도 노숙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가족 중재나 가족 컨퍼런스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 여기서 가족 관련 중재서비스가 제공되는 이유는 가족 간의 불화가 아동·청소년이 노숙을 하게 되는 가장

31) 노숙에 대한 고위험 요인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범죄기록이 있거나, 가출 경험이 있는 경우, 아동시절 방임을 경험한 경우, 약물 오용을 한 경우,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우, 가족이나 본인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형제 또는 자매 중에 노숙 경험이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큰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가족 간의 문제를 증재하는 것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계속 가족과 거주하도록 도움으로써 노숙 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부득이한 이유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립을 미리 계획하여 실행하도록 돕는다. 이 경우에는 가족 컨퍼런스를 열어 계획을 함께 세우도록 지원한다.

③ 위기 예방 및 완화(통합적 대응을 통한 주거 지원 연계)

주거불안과 관련된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주택 당국(Housing Authority)과 아동서비스팀이 주관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통합적 서비스이다. 이들은 현재 노숙 중이거나, 노숙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자립으로 전환하는 시기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 당국은 아동·청소년의 욕구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매기고 개별화된 주거계획을 세우는 것을 돕는다. 이 서비스는 지역 사회의 주거 지원 서비스나 관련 지원 서비스로 연결되는 관문의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이 단계에는 즉각적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 닥치기 전에 다양한 교육과 정보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립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주거서비스에 서서히 연결되도록 돕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주거 선택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노숙 완화와 노숙 예방 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지며, 주거 관련 이외에도 가족관계, 건강, 교육, 훈련, 고용, 자기관리, 정체성 문제, 실용적인 생활기술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대한 사정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그들의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준다. 아동·청소년이 가족들과 연결되거나

임대계약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노숙을 예방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지낼 수 없어 노숙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기응급거주시설로 빠르게 연결해주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다시 학교나 훈련 또는 고용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④ 주거지원 서비스(맞춤형 주거 지원 및 유연한 주거 관련 지원)

이 서비스는 일반 아동·청소년과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와 지원 방식을 포함한다. 아동·청소년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더 나은 독립을 위한 교육이나 취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supported housing, supported lodging, foyers, Housing First 등 다양한 주거 옵션들과 연계되어 있다. 주거 지원 서비스는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부서 간의 협력 정도, 지역의 지형적인 특징, 지역사회 자원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된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모든 지방정부는 현장 직원이 있는 주거 지원 서비스를 마련해야 하고, 훈련된 호스트가 있는 supported lodgings와 응급거주지를 제공하는 Nightstop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이 독립시설이나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완전한 독립이 준비될 때까지 유동적으로 아웃리치 서비스(floating outreach)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동적인 아웃리치는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혹시 아동·청소년이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이 서비스는 계속 유지된다. 또한 복잡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독립생활 준비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거주지를 지원받고, 안정적인 거주지 유지를 목표로 하는 집중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 옵션

이 서비스는 아동·청소년이 성공적인 독립생활을 위한 준비가 되었을 때 안전하고, 적절하며, 저렴한 주거지를 제공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아동·청소년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렌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적절한 주거지를 갖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상황상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저렴한 주거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의 파트너들과 논의하며 더 많은 주거지 옵션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민간부문과 사회부문의 많은 집주인들은 해당 청소년이 받는 급여가 적어서 월세를 감당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여 세를 주기를 꺼린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관리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낮은 임금의 청년들에게 세를 주는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같은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량적 주거지원금(Discretionary Housing Payments)을 이용해 단기적으로 청년의 임대계약 유지를 돕기도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돈을 벌어 임대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취업을 돕기도 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갖게 되는 것은 낮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지원 없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장애 관련 서비스 혹은 정신건강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4. 통합적 자립지원 우수사례

가. Northamptonshire: 일반 청소년과 care leavers의 노숙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협약³²⁾

2016년에 Northamptonshire에서는 Borough Council과 Northamptonshire 내 7개의 지역주택 당국과 아동 서비스기관이 주체가 되어 위탁보호 종료 아동·청소년의 주택과 임대 관련 보조 지원을 위한 새로운 주거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 아동·청소년 노숙 개선 협약의 도입 이후, Northamptonshire 내의 노숙 경험 아동·청소년의 숫자는 감소 추세이다. 일반 노숙 아동·청소년과 더불어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약을 통해 지역주택 당국과 아동 사회서비스국 간의 일관되고 협력적인 접근이 향상되었고, 명확하고 일관된 절차 그리고 향상된 연계 과정과 개입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지역 내 공공기관을 포함한 법적 의무를 가진 기관과 자선기관들 간의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이 노숙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고 인생을 시작하는 데 최적의 환경을 갖게 되었다. 이 협약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① 아동·청소년이 동의서에 서명을 함과 동시에 관련 정보가 지역 주택 당국, 아동 서비스기관 그리고 기타 지원기관 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유되었다. 특히 이를 통해 기간 간 연계서비스가 강화되고 청소년의 욕구사정을 공유(joint needs assessment)할 수 있었다.

32) (Homeless Link, 2018)에서 요약 및 재구성.

- ② 개별 진로계획(individual pathway plan)은 개별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과 이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일관된 전략을 바탕으로 개개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설계되었다.
- ③ 사회복지사와 개별 조연가(personal advisor)는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이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하도록 정서적으로 돕고 보호종료 사후관리팀(Leaving Care Team)과 함께 자립생활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현실적인 수준의 준비를 돕는다.
- ④ Supported housing, Social rental housing, 혹은 이전 위탁보호자와 계속 거주(staying put) 등과 같은 다양한 주거지 옵션을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하였으며, 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기존 주거지를 떠나야 하는 부담이 없도록 강제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독립적인 거주지로 이사하도록 하였다.
- ⑤ 모든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Social rental housing에 대한 접근을 돕는다. 이는 임대계약에 대한 접근, 대치 그리고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개별 조연가는 아동·청소년이 주거지를 얻는 과정에서 주택 연계 서류를 작성하고, 주택 옵션 인터뷰에 동행하며, 주거지의 임대인과 협력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대화, 협력, 그리고 문제해결 중심적 접근 방법이 이 협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협약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보다 일관적인 자립지원 계획과 통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짐으로써 청소년들이 보호를 떠나면서 주거불안이나 자립에 실패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노숙을 예방하도록 돕고 있다.

나. 아동·청소년 노숙에 대한 협력적 접근법³³⁾

런던 Youth Gateway는 London Councils의 재정 보조로 운영되는 지역 내 유일한 아동·청소년 노숙예방 전략이다. 이러한 시도는 다양한 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런던 전역에 주거지원이 필요한 16~25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예방, 주거지원, 그리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런던 Youth Gateway는 한 해에 최소 4,500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였고, 2014~2015년에는 540명의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주거지를 찾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 파트너십을 이끄는 기관인 New Horizon Youth Centre는 노숙 중이거나 노숙의 위험이 있는 16~21세의 아동·청소년에게 일주일 내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시설인데, 이 주간 시설은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 스스로 도움을 청하면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기 때문에 런던에 있는 아동·청소년은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지방 당국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

New Horizon Youth Centre 시설은 자존감이나 자신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내에 간호사와 상담사가 있으며, 드랍인(drop in)을 기본으로 하되 예약제 시스템도 있다. 2014~2015년 기준으로 개별 또는 집단 상담에 연계된 아동·청소년은 218명이었다. 이 파트너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자립과 관련된 상담, 유동적인 지원과 주거지 안정 및 정착에 대한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

New Horizon Youth Centre는 주거시설, 건강,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및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노숙 아동·청소년이 양질의 인턴직을 찾는 것과 노숙을 경험한 아동·

33) (Homeless Link, 2015)에서 요약 및 재구성.

청소년의 욕구를 이해하는 고용주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후 이를 반영한 교육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New Horizon Youth Centre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취업지원 서비스는 주거, 건강, 복지, 고용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욕구에 다각적으로 개입한다. 개별 중심 접근(person centred approach)을 바탕으로 주요 기술 훈련, 승인 받은 교육과 취직능력 교습을 직접 제공한다. 2014~2015년 기준으로 577명의 아동·청소년을 고용, 교육, 훈련 기회에 접근하도록 도와주었으며 296개의 전문대학, 대학을 포함하여 외부 훈련 기회를 이용하도록 도왔다. 이 기관은 아동·청소년이 직업을 찾고 주간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효율적인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역의 고용지원연계센터(JobCentre Plus), 지역 기업 파트너, 서비스 산업의 고용주들과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제3절 소결

1.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영국은 보호가 필요한 위탁보호 및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 물리적으로 주거지 자체를 구할 수 없어 노숙 환경으로 내몰리는 아동·청소년 및 청년이 더욱 늘어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책을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추세이다.

위탁보호와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는

미국과 영국도 완벽히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았다.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의 지원,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주로 담당하는 전달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집단에 대한 정책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의 경우, 보호종료 이후 안정적인 자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돕기 위한 보호서비스 연장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의 경우,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숙 지원 서비스에서 취약 집단인 아동·청소년 노숙인을 대상으로 파생된 서비스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가정 외 보호의 사후관리 성격이 강하며, 가출·노숙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지원은 가출이나 노숙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예방적 노력의 성격이 더 강하다.

미국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국에서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책을 제공하며,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가족청소년서비스국에서 프로그램 지원금을 제공하고 주택도시개발부에서는 주거를 중심으로 통합적인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교육부가, 그리고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부가 맡고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분리는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립지원 서비스의 차이로 연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영국 모두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지원서비스를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제한 연령 점차 늘려가는 추세인 데에 반해,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의 경우, 특정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대상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이용 가능 기간 또한 짧은 편이다. 특히 영국은 가출·노숙 아동·

청소년에 대한 주거 지원을 보장하는 법적 연령이 만 18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가정 외 보호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거 지원이 만 21세(혹은 고등교육을 받게 되면 만 24세)까지 법적으로 보장되어 두 집단 간의 주거지원 연령 차이가 매우 크다. 또한 미국과 영국 양국 모두,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미국의 independent living coordinator, 영국의 personal advisor)이 존재하는 것에 반해,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해서는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은 위탁보호 아동·청소년과 가출·노숙 아동·청소년부서가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고, 영국은 지방 당국에 아동의 지원을 사회적 부모로서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체계 분리로 인한 자립지원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통합적 자립지원을 위한 노력

미국과 영국에서는 위탁보호 아동·청소년과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위탁보호 아동·청소년과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양성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점을 찾기는 힘들다. 위탁보호 아동·청소년과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에 있어 질적 차이를 줄이는 통합적 지원의 노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주체 간 협력

영국의 자립지원의 정책적 방향성의 핵심이 되는 corporate parent는 아동이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보호 필요 아동이 성인이 되어 자립하기까지 최대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 스스로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보호체제 안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한다. 이러한 corporate parenting 의무는 영국의 지방 당국들에게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부서 간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기본 인식을 공유하는 기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부 이외에도 수많은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정책을 만들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과 영국 모두 지방정부 혹은 지역사회 내 공공부서 간의 협력, 특히 아동서비스와 주거서비스 관련 부서 간의 협력, 그리고 지역사회 내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과의 연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미국은 위탁보호 아동·청소년과 가출·노숙 아동·청소년부서가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자립지원 정책 마련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연계·협력이 용이할 수 있다. 특히 영국의 긍정적 경로 체제는 지방 당국의 부서들 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주거 선택지와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가장 적합한 대상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서비스제공자들 간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자립지원이 필요한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주거 지원 혹은 경제적 지원을 가

능케 하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자립의 상태를 점검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며 개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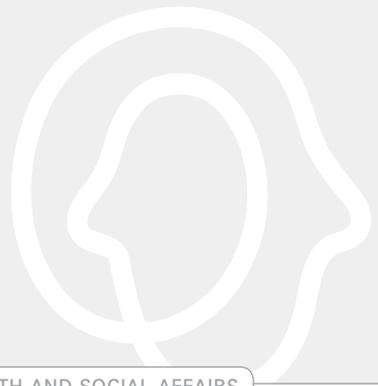
미국과 영국 모두 위탁보호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가출 및 노숙 청소년 관리정보 시스템도 존재한다. 물론 미국 또한 위탁보호 아동·청소년과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각각의 집단에 대한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정보관리를 통해 맞춤형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및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등으로 분절적으로 관리되어 보호서비스와 자립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며(이상정 외, 2018),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정보관리시스템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자립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최소한 각각의 체계에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탁보호와 가출·노숙 아동·청소년 정보관리시스템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자립지원의 격차와 공백을 예방하는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

다. 주거서비스 기반 통합적 자립지원

미국과 영국에서 위탁보호와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자립지원 서비스의 가장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주거 지원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거 지원을 바탕으로 자립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교육 혹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체 및 정신 건강, 심리사회적인 영역의 지원까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주거 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 개개인의 상황이나 욕구에 부합하는 주거 형태와 관련 지원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되거나 자립 적응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미국의 continuum of care 프로그램의 경우, 완전한 자립 직전의 준비단계인 청소년전환주택에서부터 사례관리와 자립관련 기술 향상에 집중하는 신속주택,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 등의 복잡한 욕구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위한 무기한지원주택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상황에 부합하는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영국의 전환기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주거 지원 체제에서 제시하는 5단계 맞춤형 주거서비스의 경우, 자립의 과정과 계획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단계별로 주거형태를 발전시키고 그에 맞는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장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준비 및 서비스 욕구 비교 분석

- 제1절 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의 특성
- 제2절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준비도 비교 결과
- 제3절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서비스 욕구도 비교
- 제4절 자립준비 및 자립서비스 욕구에 관한 FGI 결과
- 제5절 소결



제 4 장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준비 및 서비스 욕구 비교 분석

제1절 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의 특성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아동보호체계의 공동생활가정과 청소년 보호체계의 중장기 청소년쉼터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와 서비스 욕구를 비교·분석한다.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보호체계 내 주요 대리양육체계 중 하나로, 10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며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과 같은 타 체계에 비해 비교적 낮은 나이에 보호를 시작하는 아동이 많기 때문에 보호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이상정 외, 2019a). 따라서 주로 10대 중·후반의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을 3~4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보호하는 중장기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과 특성이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료는 이상정 외(2019a)가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 가운데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청소년(n=215)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청소년보호체계의 중장기 청소년쉼터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료는 본 연구를 위해 직접 수집하였다.

전국 중장기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밖 보호 경험, 자립준비 경험, 자립준비 실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2019년도의 동일 설문 문항(이상정 외, 2019a)을 적용하였다. 조사 기간인 2020년 7월 13일부터 2020년 9월 13일까지 전국 중장기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한 모든 청소년³⁴⁾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에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147명으로 이 중 남자가 89명, 여자가 58명, 평균 연령은 17.7세(최연소 만 13세 4명, 최고령 27세 2명)이다. 재학 상태는 재학 중인 경우가 64%로 가장 많고 김정고시, 졸업, 취업 등 기타가 23.1%, 휴학 및 중퇴가 12.9%이다. 가족의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 여부와 관련, 수급하고 있는 경우가 37.4%, 수급하지 않는 경우가 36.1%이며 응답자의 26.5%는 가족의 수급 여부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원가정 주소가 아니라 현재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쉼터의 지역을 의미하는데, 비광역 지역의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58.5%로 서울 및 광역 지역에 비해 많았으나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6.3%, 서울이 10.2%로 가장 많다.

〈표 4-1〉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
전체		147	100.0
성별	남	89	60.5
	여	58	39.5
연령	만 15세 이하	24	16.3
	만 16~18세	76	51.7
	만 19세 이상	47	32.0

34)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비해 청소년들의 입퇴소가 잦은 쉼터 특성상 매일 현원이 조금씩 상이함. 조사 시작 시점인 2020년 7월 13일 기준 현원 225명, 중간 점검 시점인 2020년 8월 31일 기준 현원 241명임.

구분		사례 수	%	
평균(SD)		17.7세 (2.48)		
재학 상태	재학	중3 이하	17	11.6
		고1	14	9.5
		고2	21	14.3
		고3	21	14.3
		대1 이상	21	14.3
	휴학	4	2.7	
	중퇴	15	10.2	
	기타	34	23.1	
가족 수급여부	예	55	37.4	
	아니오	53	36.1	
	모름	39	26.5	
지역1	서울·광역	61	41.5	
	비광역	86	58.5	
지역2	서울	15	10.2	
	부산	7	4.8	
	대구	5	3.4	
	인천	11	7.5	
	광주	7	4.8	
	대전	9	6.1	
	울산	7	4.8	
	세종	0	0.0	
	경기	24	16.3	
	강원	4	2.7	
	충북	12	8.2	
	충남	8	5.4	
	전북	7	4.8	
	전남	7	4.8	
	경북	6	4.1	
	경남	9	6.1	
	제주	9	6.1	

나. 응답자의 가정 밖 보호 경험

응답자 중 51.7%는 현재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쉼터 이전에도 가정 외 보호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아동보호체계의 보호를 받은 경우가 15.6%, 청소년 보호체계의 다른 시설에서 보호받은 경우가 29.9%였고, 6.1%는 아동보

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를 모두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전 가정 외 보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이전 가정 외 보호 기간 평균은 2.8년이다. 현재 시설 거주기간은 평균 1.7년이며 현재 시설에 4년 이상 머물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8.2%이다. 이전 가정 외 보호 경험을 포함한 총 가정 외 보호 기간 평균은 3.1년이다.

〈표 4-2〉 가정 외 보호 경험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	
전체		147	100.0	
이전 가정 외 보호 경험	있음	아동	23	15.6
		청소년	44	29.9
		아동·청소년	9	6.1
	없음	71	48.3	
	(기관유형 수)		(0.6개)	
(평균 기간, SD)		(2.8년, 4.14)		
현재 시설 거주기간	1년 미만		59	40.4
	1년 이상~2년 미만		45	30.8
	2년 이상~3년 미만		17	11.6
	3년 이상~4년 미만		13	8.9
	4년 이상		12	8.2
	(평균 기간, SD)		(1.7년, 1.92)	
총 가정 외 보호 기간, SD		3.1년, 3.59		

2. 응답자 특성과 자립준비 경험

가. 자립 프로그램 참여 경험

현재 머물고 있는 청소년쉼터에서 자립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98%의 청소년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기술, 자기보

호,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관련 프로그램의 경험률이 높았고 직장생활 기술, 지역사회 자원 활용 기술 관련 프로그램 경험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재 생활하는 청소년쉼터에서 머문 기간은 프로그램 경험률과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현 시설에서 머문 기간이 길수록 프로그램 경험률이 높았고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한편, 청소년보호체계는 아동보호체계의 Ready?Action!과 같은 공식적인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은 기관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으며, 다른 개별 아동·청소년의 자립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립 프로그램 참여 경험률을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표 4-3〉 자립 프로그램 경험률

(단위: 명, %, 년)

구분	사례 수	자립 프로그램								참여 경험
		일상 생활 기술	자기 보호	지역 사회 자원 활용	돈 관리 기술	사회적 기술	진로 탐색 취업 기술	직장 생활 기술	다시 집 떠나기	
전체	(147)	93.9	92.5	74.1	83.7	82.3	85.7	63.9	81.0	98.0
성별	남 (89)	93.3	88.8	82.0	85.4	86.5	91.0	70.8	84.3	97.8
	여 (58)	94.8	98.3	62.1	81.0	75.9	77.6	53.4	75.9	98.3
	x2	0.150	4.589*	7.294**	0.488	2.738	5.169*	4.579*	1.610	0.048
연령	만 15세 이하 (24)	95.8	87.5	62.5	83.3	70.8	66.7	54.2	70.8	95.8
	만 16~18세 (76)	93.4	96.1	75.0	84.2	86.8	88.2	65.8	82.9	98.7
	만 19세 이상 (47)	93.6	89.4	78.7	83.0	80.9	91.5	66.0	83.0	97.9
	x2	0.193	2.921	2.241	0.035	3.312	8.762*	1.190	1.905	0.744
재학 상태	중학생 이하 (17)	94.1	82.4	58.8	76.5	70.6	70.6	52.9	64.7	94.1
	고등학생 (56)	94.6	98.2	75.0	85.7	85.7	83.9	58.9	83.9	100.0
	대학생 이상 (21)	100.0	100.0	81.0	95.2	90.5	90.5	81.0	85.7	100.0
	휴학/중퇴 (19)	89.5	84.2	89.5	78.9	78.9	84.2	78.9	73.7	94.7
	기타 (34)	91.2	88.2	67.6	79.4	79.4	94.1	58.8	85.3	97.1
	x2	2.501	9.655*	5.689	3.635	3.356	5.707	6.380	4.607	3.984
지역	서울·광역 (61)	93.4	93.4	67.2	80.3	77.0	78.7	55.7	78.7	96.7
	비광역 (86)	94.2	91.9	79.1	86.0	86.0	90.7	69.8	82.6	98.8
	x2	0.034	0.129	2.617	0.854	1.984	4.203*	3.047	0.347	0.799

구분	사례 수	자립 프로그램								참여 경험	
		일상생활 기술	자기 보호	지역사회 자원 활용	돈 관리 기술	사회적 기술	진로 탐색 기술	직장 생활 기술	다시 집 떠나기		
전체	(147)	93.9	92.5	74.1	83.7	82.3	85.7	63.9	81.0	98.0	
현실 거주 기간	1년 미만	(59)	84.7	86.4	57.6	67.8	66.1	72.9	49.2	72.9	94.9
	1년~2년 미만	(45)	100.0	95.6	77.8	93.3	95.6	95.6	66.7	84.4	100.0
	2년 이상	(42)	100.0	97.6	92.9	95.2	90.5	92.9	81.0	88.1	100.0
	x2		14.143**	5.292	16305***	17972***	17896***	13.168**	10.977**	4.214	4.517
이전 가정 외 보호 경험 여부	있음	(76)	93.4	90.8	76.3	82.9	85.5	89.5	61.8	81.6	97.4
	없음	(71)	94.4	94.4	71.8	84.5	78.9	81.7	66.2	80.3	98.6
	x2		0.057	0.678	0.385	0.070	1.116	1.816	0.302	0.040	0.275

나. 자립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현재 머물고 있는 청소년쉼터에서 자립준비와 관련해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98%가 자립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서비스별로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가 81.6%로 가장 많았고, 자립지원관 이용, 장학금, 먼저 자립한 자립 선배와의 멘토링 등은 50% 미만의 이용률을 보였다. 응답자의 특성 중 현재 머물고 있는 청소년쉼터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서비스 이용 경험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장학금 외의 모든 서비스에서 이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표 4-4〉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명, %, 년)

구분	사례 수	자립 서비스							참여 경험		
		자립지원관 이용	직업교육 또는 훈련	자립생활 멘토와의 멘토링	응답 지원	장학금	자립지원관 선생님의 사례관리	의료서비스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전체	(147)	29.9	72.1	44.9	72.8	37.4	66.0	89.1	81.6	98.0	
성별	남	(89)	33.7	75.3	57.3	68.5	39.3	61.8	87.6	82.0	97.8
	여	(58)	24.1	67.2	25.9	79.3	34.5	72.4	91.4	81.0	98.3
	x2		1.533	1.129	14.032***	14.032***	2.057	0.352	1.763	0.506	0.048

구분	사례 수	자립 서비스								참여 경험
		자립지원 관 이용	직업교육 또는 훈련	자립생활 멘토와의 멘토링	응답 지원	장학금	자립지원관 선생님의 사례관리	의료서비 스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전체	(147)	29.9	72.1	44.9	72.8	37.4	66.0	89.1	81.6	98.0
연령	만 15세 이하 (24)	16.7	62.5	37.5	79.2	16.7	54.2	91.7	75.0	100.0
	만 16~18세 (76)	28.9	72.4	43.4	76.3	47.4	65.8	88.2	86.8	97.4
	만 19세 이상 (47)	38.3	76.6	51.1	63.8	31.9	72.3	89.4	76.6	97.9
	x2	3.617	1.575	1.320	1.320	2.875	8.235*	2.341	0.236	0.634
재학 상태	중학생 이하 (17)	5.9	64.7	35.3	70.6	5.9	52.9	88.2	64.7	100.0
	고등학생 (56)	25.0	66.1	44.6	73.2	46.4	60.7	92.9	89.3	100.0
	대학생 이상 (21)	42.9	95.2	52.4	66.7	52.4	81.0	90.5	90.5	100.0
	휴학/중퇴 (19)	52.6	63.2	52.6	68.4	31.6	78.9	78.9	68.4	89.5
	기타 (34)	29.4	76.5	41.2	79.4	32.4	64.7	88.2	79.4	97.1
	x2	11.683*	8.143	1.760	1.760	1.380	11.819*	5.525	2.914	8.939
지역	서울·광역 (61)	27.9	63.9	37.7	78.7	42.6	72.1	86.9	73.8	98.4
	비광역 (86)	31.4	77.9	50.0	68.6	33.7	61.6	90.7	87.2	97.7
	x2	0.212	3.464	2.181	2.181	1.832	1.208	1.754	0.535	0.084
현업 거주 기간	1년 미만 (59)	18.6	50.8	33.9	33.9	72.9	23.7	59.3	79.7	96.6
	1년~2년 미만 (45)	33.3	80.0	42.2	42.2	71.1	46.7	60.0	91.1	97.8
	2년 이상 (42)	42.9	92.9	64.3	64.3	73.8	45.2	83.3	100.0	100.0
	x2	7.147*	23.543***	9.380**	9.380**	0.083	7.486*	7.553*	10.687**	1.410
이전 가정 외 보호 경험	있음 (76)	28.9	67.1	43.4	77.6	44.7	63.2	89.5	80.3	97.4
	없음 (71)	31.0	77.5	46.5	67.6	29.6	69.0	88.7	83.1	98.6
	x2	0.073	1.959	0.139	0.139	1.863	3.602	0.561	0.021	0.275

3. 응답자 특성과 자립준비 수준

가. 사적 자본 영역

1) 삶의 만족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를 0점에서 10점으로 응답하는 캔트릴의 사다리 척도를 활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중장기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6.8점으로 확인되었다. 남자, 만 19세 이상, 고등학교 1학년 또는 대학생 이상, 비광역 지역 청소년쉼터 거주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현 시설 거주기간, 전체 가정 외 보호 기간은 3년 차 이상일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현재 청소년쉼터 이전에 다른 가정 외 보호 경험이 없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표 4-5〉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사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삶 만족도

(단위: %, 년)

구분	삶 만족도			x2/t(F)	
	사례 수	평균	SD		
전체	147	6.8	2.3		
성별	남	89	7.0	2.3	1.348 (0.180)
	여	58	6.5	2.3	
연령	만 15세 이하	24	6.8	2.3	1.236 (0.274)
	만 16~18세	76	6.8	2.3	
	만 19세 이상	47	7.0	2.2	
재학 상태	중3 이하	17	6.4	2.2	0.793 (0.636)
	고1	14	7.6	1.8	
	고2	21	6.3	2.4	
	고3	21	6.7	2.4	
	대학생 이상	21	7.4	2.2	
지역	기타	53	6.8	2.4	-0.886 (0.377)
	서울·광역시	61	6.6	2.0	
현 시설 거주기간	비광역시	86	7.0	2.5	2.111* (0.028)
	1년 미만	59	6.2	2.4	
	1년~2년	45	7.0	2.3	
	2년~3년	17	6.6	1.5	
	3년~4년	13	8.5	2.0	
이전 가정 외 보호 경험	4년 이상	12	7.8	1.3	-2.058* (0.041)
	있음	76	6.5	2.2	
전체 가정 외 보호 기간	없음	71	7.2	2.3	2.005* (0.037)
	1년 미만	34	6.1	2.7	
	1년~2년	40	7.0	2.1	
	2년~3년	20	5.9	1.9	
	3년~4년	20	8.0	2.2	
4년 이상	33	7.3	1.8		

2)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 수준은 OECD 웰빙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개인이 어제 어느 정도 행복, 걱정, 우울했는지와 요즘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삶(생활) 만족), 가치 있다고 느끼는지(유데모니아)를 0점~10점으로 측정하는 문항이다(류정희 외, 2019). 긍정적인 영역인 행복, 삶 만족, 유데모니아는 점수가 높을수록 웰빙 수준이 높고 부정적인 영역인 걱정과 우울은 점수가 낮을수록 웰빙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는지에 대한 응답의 평균은 5.7점으로 현재 머물고 있는 중장기 청소년쉼터 이전에 다른 가정 외 보호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행복도가 낮았다. 걱정, 우울, 삶(생활) 만족도, 유데모니아 등은 응답자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6〉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사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주관적 웰빙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행복	걱정	우울	삶(생활)만족	유데모니아	
전체	147	5.7 (2.3)	5.2 (2.6)	4.2 (2.9)	5.8 (2.4)	5.7 (2.3)	
성별	남	89	5.8 (2.3)	5.0 (2.4)	4.0 (2.9)	6.1 (2.3)	5.9 (2.3)
	여	58	5.5 (2.4)	5.6 (2.7)	4.5 (2.9)	5.3 (2.6)	5.5 (2.4)
F(t)		0.770	-1.448	-0.977	1.880	1.130	
연령	만 15세 이하	24	5.6 (2.1)	4.3 (3.0)	3.5 (3.1)	5.9 (2.3)	5.4 (1.9)
	만 16~18세	76	5.8 (2.5)	5.7 (2.4)	4.6 (2.9)	5.6 (2.5)	5.7 (2.4)
	만 19세 이상	47	5.5 (2.3)	5.0 (2.5)	3.9 (2.7)	6.0 (2.3)	6.0 (2.3)
F(t)		0.532	1.103	0.878	0.539	0.829	
재학 상태	중3 이하	17	5.1 (2.0)	4.2 (3.1)	3.3 (3.2)	5.6 (2.6)	5.2 (2.0)
	고1	14	6.9 (1.9)	5.8 (2.2)	5.3 (3.1)	5.9 (2.0)	5.7 (1.7)
	고2	21	5.8 (2.3)	5.3 (2.4)	4.7 (2.7)	5.3 (2.3)	5.2 (2.1)
	고3	21	4.7 (2.2)	6.0 (2.5)	4.9 (2.7)	5.6 (2.8)	5.5 (3.0)
	대학생 이상	21	6.3 (2.2)	4.3 (1.9)	3.7 (2.4)	6.7 (2.2)	6.1 (2.2)
	기타	53	5.6 (2.5)	5.4 (2.7)	3.9 (3.1)	5.6 (2.4)	6.0 (2.4)
F(t)		1.201	0.854	0.714	0.508	1.298	
지역	서울·광역시	61	5.3 (2.4)	5.3 (2.8)	4.4 (2.9)	5.6 (2.4)	5.6 (2.4)
	비광역시	86	6.0 (2.2)	5.2 (2.4)	4.0 (2.9)	5.9 (2.4)	5.8 (2.3)

구분	사례수	행복	걱정	우울	삶(생활)만족	유데모니아	
전체	147	5.7 (2.3)	5.2 (2.6)	4.2 (2.9)	5.8 (2.4)	5.7 (2.3)	
F(t)		-1.783	0.279	0.764	-0.617	-0.703	
현 시설 거주기 간	1년 미만	59	5.4 (2.5)	5.8 (2.8)	4.8 (3.1)	5.3 (2.4)	5.3 (2.4)
	1년~2년	45	5.7 (2.4)	4.9 (2.5)	3.8 (2.9)	5.6 (2.7)	5.7 (2.4)
	2년~3년	17	5.4 (2.0)	4.0 (2.0)	4.2 (2.5)	6.0 (1.7)	5.8 (1.9)
	3년~4년	13	6.3 (2.2)	5.5 (2.8)	3.5 (3.1)	7.0 (2.3)	7.1 (2.6)
	4년 이상	12	6.6 (1.4)	5.3 (1.4)	3.3 (2.5)	6.7 (1.7)	6.4 (1.6)
F(t)		0.956	1.333	0.663	1.011	1.504	
이전 가정 외 보호 경험	있음	76	5.2 (2.5)	5.5 (2.4)	4.5 (3.1)	5.6 (2.4)	5.7 (2.5)
	없음	71	6.2 (2.1)	4.9 (2.7)	3.8 (2.7)	5.9 (2.5)	5.8 (2.2)
F(t)		-2.799**	1.544	1.502	-0.645	-0.271	
전체 가정 외 보호 기간	1년 미만	34	5.6 (2.4)	6.0 (3.0)	5.0 (2.9)	4.8 (2.4)	4.8 (2.2)
	1년~2년	40	6.0 (2.3)	4.9 (2.5)	3.9 (3.0)	6.2 (2.3)	6.0 (2.0)
	2년~3년	20	4.5 (2.7)	4.6 (2.8)	4.5 (3.0)	5.6 (2.2)	5.3 (2.8)
	3년~4년	20	6.2 (2.3)	5.2 (2.6)	3.9 (2.9)	6.5 (2.8)	6.7 (2.4)
	4년 이상	33	5.8 (2.0)	5.2 (1.9)	3.8 (2.8)	5.9 (2.2)	6.0 (2.2)
F(t)		0.555	1.860	0.513	1.096	1.510	

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이란 고난과 위기를 극복해내는 역량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Alvord & Grados, 2005). 과거의 트라우마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청소년쉼터를 떠나야 하는 다중적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탄력성은 중요한 적응 기제가 될 수 있다.

9개 영역 27개 문항(5점 척도)으로 구성된 신우열 외(2009)의 회복탄력성 척도를 이용해 중장기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측정한 결과 총점은 135점 만점 중 91.5점이었다. 총점 수준에서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감정 통제력, 충동 통제력, 생활만족도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4-7〉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사적 자본 영역 지립 수준 - 회복탄력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회복탄력성 영역										총점
		원인 분석력	감정 통제력	충동 통제력	감사하기	삶(생활) 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 능력	평균 (SD)	
전체	147	10.6 (2.4)	10 (2.3)	9.6 (2.4)	10.8 (2.5)	9.2 (3.0)	10.3 (2.6)	10.8 (3.2)	9.4 (2.8)	10.7 (2.3)	91.5 (15.6)	
	남	10.8 (2.4)	10.4 (2.1)	10.0 (2.3)	10.8 (2.4)	9.6 (3.0)	10.4 (2.7)	10.6 (3.4)	9.4 (2.8)	10.7 (2.4)	92.7 (15.5)	
	여	10.3 (2.3)	9.5 (2.5)	9.0 (2.3)	10.9 (2.7)	8.5 (3.0)	10.3 (2.5)	11.1 (3.0)	9.4 (2.9)	10.7 (2.2)	89.7 (15.6)	
F(t)		1.195	2.402*	2.660**	-0.232	2.063*	0.11	-0.849	0.162	-0.142	1.134	
연령	만 15세 이하	10.1 (2.9)	9.8 (2.3)	9.5 (1.7)	10.5 (2.1)	9.1 (2.6)	10.7 (2.5)	10.5 (3.5)	9.6 (2.8)	10.6 (2.5)	90.3 (14.0)	
	만 16~18세	10.8 (2.2)	9.9 (2.3)	9.3 (2.4)	10.8 (2.6)	9.0 (3.0)	10.3 (2.6)	10.9 (3.0)	9.4 (2.9)	10.6 (2.1)	91.0 (15.2)	
	만 19세 이상	10.7 (2.4)	10.5 (2.3)	10.0 (2.5)	11.0 (2.6)	9.4 (3.2)	10.3 (2.8)	10.8 (3.5)	9.3 (2.6)	11.0 (2.6)	93.0 (17.1)	
F(t)		0.876	0.9	0.851	0.752	1.37	0.455	1.812	1.17	1.055	1.032	
재학 상태	중3 이하	10.8 (3.0)	9.7 (2.0)	9.2 (2.0)	10.1 (2.0)	8.9 (2.4)	10.8 (2.3)	10.5 (4.1)	9.9 (2.9)	10.9 (2.0)	91.0 (12.9)	
	고1	10.9 (2.3)	9.3 (2.2)	9.2 (2.0)	10.9 (2.3)	10.1 (2.8)	10.9 (2.6)	10.9 (2.3)	10.3 (2.6)	11.4 (2.2)	93.9 (14.2)	
	고2	10.4 (1.8)	9.8 (1.4)	9.4 (1.8)	11 (2.2)	8.9 (2.8)	9.9 (2.2)	11.2 (2.9)	9.0 (2.4)	10.3 (1.7)	89.9 (12.3)	
	고3	10.1 (2.2)	9.7 (2.6)	9.0 (2.2)	10.9 (2.8)	9.0 (3.2)	10.2 (2.8)	11.6 (2.8)	9.4 (2.8)	10.8 (2.5)	90.7 (15.5)	
	대학생 이상	11.2 (2.2)	10.7 (2.4)	10.7 (2.5)	11.3 (1.5)	9.5 (2.5)	11.2 (2.5)	10.3 (3.1)	9.3 (2.4)	10.8 (2.3)	95.1 (13.8)	
F(t)		10.6 (2.5)	10.4 (2.5)	9.7 (2.6)	10.8 (3.0)	9.0 (3.5)	9.9 (2.9)	10.5 (3.5)	9.2 (3.1)	10.5 (2.7)	90.6 (18.6)	
지역	서울·광역	0.576	1.521	0.786	1.016	0.739	0.816	1.53	0.795	1.017	0.96	
	비광역	10.9 (2.0)	10.4 (2.2)	9.5 (2.1)	10.8 (2.5)	9.1 (2.8)	10.7 (2.1)	10.9 (3.0)	9.5 (2.8)	11 (2.2)	92.8 (13.9)	
	F(t)	10.4 (2.6)	9.8 (2.4)	9.7 (2.5)	10.9 (2.5)	9.2 (3.2)	10.1 (2.9)	10.7 (3.4)	9.3 (2.7)	10.5 (2.4)	90.6 (16.7)	
현 시점 거주기간	1년 미만	1.165	1.418	-0.362	-0.202	-0.164	1.359	0.303	0.486	1.504	0.857	
	1년~2년	10.6 (2.6)	9.8 (2.2)	9.2 (2.4)	10.5 (2.7)	8.5 (3.1)	10.2 (2.9)	10.5 (3.3)	9.3 (3.1)	10.4 (2.4)	89 (15.7)	
F(t)		10.6 (2.4)	9.8 (2.5)	9.5 (2.4)	11.0 (2.6)	9.3 (3.0)	10.5 (2.5)	11.1 (3.5)	9.5 (2.5)	10.8 (2.3)	92.1 (16.2)	

구분	사례 수	회복탄력성 영역										총점
		원인 분석력 평균 (SD)	감정 통제력 평균 (SD)	충동 통제력 평균 (SD)	감사하기 평균 (SD)	삶(생활) 만족도 평균 (SD)	낙관성 평균 (SD)	관계성 평균 (SD)	커뮤니케이션 능력 평균 (SD)	공감 능력 평균 (SD)		
전체	147	10.6 (2.4)	10 (2.3)	9.6 (2.4)	10.8 (2.5)	9.2 (3.0)	10.3 (2.6)	10.8 (3.2)	9.4 (2.8)	10.7 (2.3)	91.5 (15.6)	
	2년~3년	17	10.4 (1.9)	10.4 (1.9)	10.1 (1.9)	11.1 (2.3)	9.8 (2.6)	9.6 (1.9)	10.1 (2.8)	9.2 (2.4)	11.2 (2.1)	91.8 (12.5)
	3년~4년	13	10.9 (1.8)	10.2 (2.0)	10.3 (2.3)	10.8 (2.6)	8.9 (2.8)	10.6 (3.0)	10.8 (3.0)	8.9 (3.1)	10.1 (2.4)	91.7 (17.3)
	4년 이상	12	10.8 (2.1)	11.1 (2.4)	9.8 (2.0)	11.4 (1.9)	11.3 (2.3)	10.8 (2.1)	12.1 (2.4)	10.1 (2.4)	11.6 (2.0)	98.8 (13.0)
	F(t)	0.696	1.288	0.954	1.175	1.421	0.589	0.939	1.005	0.676	0.729	
이전 가정 외 보호 경험	있음	76	10.6 (2.4)	10.0 (2.4)	9.6 (2.5)	10.8 (2.5)	9.0 (3.2)	10.1 (2.7)	10.7 (3.5)	9.1 (3.0)	10.5 (2.4)	90.5 (16.1)
	없음	71	10.6 (2.3)	10.1 (2.2)	9.6 (2.2)	10.9 (2.5)	9.3 (2.9)	10.6 (2.6)	10.9 (3.0)	9.7 (2.6)	10.9 (2.2)	92.6 (15.0)
	F(t)	0.064	-0.15	0.001	-0.367	-0.568	-1.118	-0.409	-1.19	-0.904	-0.802	
전체 외 가정 외 보호 기간	1년 미만	34	10.6 (2.5)	9.6 (2.0)	9.0 (2.4)	10.4 (2.8)	8.2 (3.2)	10.1 (2.9)	10.2 (3.6)	9.2 (2.9)	10.5 (2.3)	87.9 (16.0)
	1년~2년	40	10.9 (2.4)	10.3 (2.5)	9.9 (2.4)	11.0 (2.5)	9.4 (2.9)	10.4 (2.9)	11.1 (3.2)	10.0 (2.8)	10.8 (2.2)	93.8 (14.7)
	2년~3년	20	10.6 (2.7)	10.4 (2.0)	10.2 (2.3)	10.6 (2.3)	9.0 (3.0)	10.1 (1.8)	10.8 (3.0)	9.6 (2.5)	11.1 (2.1)	92.1 (13.5)
	3년~4년	20	10.9 (1.7)	10.2 (1.8)	10.1 (2.0)	11.6 (2.3)	9.3 (2.8)	10.5 (2.4)	10.7 (3.3)	9.2 (2.3)	11.0 (2.5)	93.3 (14.8)
	F(t)	0.705	1.148	1.134	0.379	0.697	0.988	1.716	0.642	1.027	0.983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역량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는 개념(Bandura, 2010)으로 이 조사에서는 이경상 외(2007)가 개발한 3문항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김소연, 전종설, 2015 재인용). 전체 응답자의 자기효능감 평균은 10.1점이었으며 서울 및 광역시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비광역 지역 아동·청소년에 비해 높았다.

〈표 4-8〉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사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자기효능감

(단위: %, 년)

구분		사례 수	평균	SD	F(t)
전체		147	10.1	2.7	
성별	남	89	10.3	2.6	1.397 (0.165)
	여	58	9.7	2.8	
연령	만 15세 이하	24	9.9	2.3	0.453 (0.928)
	만 16~18세	76	10.0	2.9	
	만 19세 이상	47	10.3	2.5	
재학 상태	중3 이하	17	9.7	2.0	0.451 (0.930)
	고1	14	11.1	2.9	
	고2	21	9.5	2.4	
	고3	21	9.7	2.9	
	대학생 이상	21	10.2	2.6	
지역	기타	53	10.2	2.8	2.091* (0.038)
	서울·광역 비광역	61 86	10.6 9.7	2.3 2.9	
현 시설 거주기간	1년 미만	59	9.6	2.7	1.092 (0.373)
	1년~2년	45	10.4	2.8	
	2년~3년	17	9.8	1.9	
	3년~4년	13	10.5	2.7	
	4년 이상	12	11.0	2.0	
이전 가정 외 보호 경험	있음	76	10.1	2.8	0.051 (0.959)
	없음	71	10.1	2.5	
전체 가정 외 보호 기간	1년 미만	34	9.6	2.7	0.526 (0.883)
	1년~2년	40	10.2	2.5	
	2년~3년	20	10.0	2.2	
	3년~4년	20	10.6	2.6	
	4년 이상	33	10.1	3.1	

나. 인적 자본 영역

1) 재학 상태

개인의 직업적 지위획득과 소득에 큰 영향을 주는 인적 자본의 자립 수준으로 먼저 재학 상태를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63.9%가 재학 중인 상태이고 휴학 및 중퇴가 12.9%, 기타가 23.1%로 기타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이미 졸업한 경우이다. 만 15세 이하의 경우 주로 중학생 연령이기 때문에 재학 중인 비율이 95.8%로 높고 만 19세 이상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령이기 때문에 기타가 높다. 지역의 경우 비광역 지역 청소년의 재학 비율이 높고 서울 및 광역 지역 청소년은 기타 비율이 높았다.

〈표 4-9〉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인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재학 상태

(단위: %, 년)

구분	사례 수	재학중	휴학	중퇴	기타	x2	
전체	147	63.9	2.7	10.2	23.1		
성별	남	89	59.6	3.4	11.2	25.8	1.985 (0.576)
	여	58	70.7	1.7	8.6	19.0	
연령	만 15세 이하	24	95.8	4.2	0.0	0.0	43.429*** (0.000)
	만 16~18세	76	75.0	0.0	10.5	14.5	
	만 19세 이상	47	29.8	6.4	14.9	48.9	
지역	서울·광역	61	50.8	3.3	11.5	34.4	8.847* (0.031)
	비광역	86	73.3	2.3	9.3	15.1	
현 시설 거주기간	1년 미만	59	61.0	5.1	16.9	16.9	19.519 (0.077)
	1년~2년	45	77.8	0.0	4.4	17.8	
	2년~3년	17	58.8	0.0	5.9	35.3	
	3년~4년	13	38.5	0.0	15.4	46.2	
	4년 이상	12	58.3	8.3	0.0	33.3	
이전 가정 외 보호 경험	있음	76	56.6	3.9	11.8	27.6	3.998 (0.262)
	없음	71	71.8	1.4	8.5	18.3	

구분	사례 수	재학중	휴학	종퇴	기타	x2	
전체	147	63.9	2.7	10.2	23.1	18.615 (0.098)	
전체 가정 외 보호 기간	1년 미만	34	61.8	5.9	17.6		14.7
	1년~2년	40	82.5	0.0	2.5		15.0
	2년~3년	20	65.0	0.0	10.0		25.0
	3년~4년	20	45.0	0.0	15.0		40.0
	4년 이상	33	54.5	6.1	9.1		30.3

2) 희망 진로

현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업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학년이 높아질수록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고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후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42.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4-10〉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인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진로

(단위: %, 년)

구분	사례 수	취업	2~3년제 전문대 진학	4년제 대학교 진학	모르겠다	기타	x2	
전체	73	47.9	5.5	26.0	19.2	1.4	1.942 (0.746)	
성별								
	남	40	47.5	7.5	22.5	20.0	2.5	12.147 (0.145)
	여	33	48.5	3.0	30.3	18.2	0.0	
연령	만 15세 이하	23	26.1	8.7	26.1	34.8	4.3	29.185** (0.004)
	만 16~18세	47	57.4	4.3	27.7	10.6	0.0	
	만 19세 이상	3	66.7	0.0	0.0	33.3	0.0	
재학 상태	중3 이하	17	23.5	17.6	23.5	35.3	0.0	1.767 (0.779)
	고1	14	42.9	0.0	7.1	42.9	7.1	
	고2	21	52.4	0.0	38.1	9.5	0.0	
	고3	21	66.7	4.8	28.6	0.0	0.0	
지역	서울·광역	28	46.4	3.6	25.0	25.0	0.0	1.767 (0.779)
	비광역	45	48.9	6.7	26.7	15.6	2.2	

구분	사례 수	취업	2~3년제 전문대 진학	4년제 대학교 진학	모르겠다	기타	x2
전체	73	47.9	5.5	26.0	19.2	1.4	
현 시설 거주기간	1년 미만	34	47.1	5.9	23.5	23.5	0.0
	1년~2년	28	42.9	7.1	28.6	17.9	3.6
	2년~3년	5	80.0	0.0	20.0	0.0	0.0
	3년~4년	1	0.0	0.0	100.0	0.0	0.0
	4년 이상	5	60.0	0.0	20.0	20.0	0.0
이전 가정 외 보호 경험	있음	36	52.8	5.6	13.9	27.8	0.0
	없음	37	43.2	5.4	37.8	10.8	2.7
전체 가정 외 보호 기간	1년 미만	20	40.0	5.0	30.0	25.0	0.0
	1년~2년	27	51.9	7.4	22.2	14.8	3.7
	2년~3년	8	50.0	12.5	12.5	25.0	0.0
	3년~4년	5	40.0	0.0	60.0	0.0	0.0
	4년 이상	13	53.8	0.0	23.1	23.1	0.0

3) 학업 성적

학업 성적은 현재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에게 본인의 지난 학기 학업성적을 0점(매우 못함)부터 10점(매우 잘함)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본인의 학업성적을 4.6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표 4-11〉 청소년심터 응답자 특성별 인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학업 성적

(단위: %, 년)

구분	사례 수	평균	SD	F(t)
전체	94	4.6	2.6	
성별	남	53	4.6	2.3
	여	41	4.5	2.9
연령	만 15세 이하	23	5.0	2.9
	만 16~18세	57	4.2	2.4
	만 19세 이상	14	5.2	2.7

구분	사례 수	평균	SD	F(t)	
전체	94	4.6	2.6		
재학 상태	중3 이하	17	4.7	3.0	0.698 (0.724)
	고1	14	4.5	2.2	
	고2	21	3.8	2.2	
	고3	21	4.5	2.7	
	대학생 이상	21	5.3	2.5	
지역	서울·광역시	31	4.7	2.7	0.329 (0.743)
	비광역시	63	4.5	2.5	
현 시설 거주기간	1년 미만	36	3.9	2.5	0.987 (0.461)
	1년~2년	35	4.5	2.5	
	2년~3년	10	5.4	3.0	
	3년~4년	5	6.2	1.3	
	4년 이상	7	5.6	2.3	
이전 가정 외 보호 경험	있음	43	4.1	2.6	-1.617 (0.109)
	없음	51	4.9	2.5	
전체 가정 외 보호 기간	1년 미만	21	4.1	2.3	0.934 (0.507)
	1년~2년	33	4.7	2.6	
	2년~3년	13	3.9	3.4	
	3년~4년	9	5.9	1.5	
	4년 이상	18	4.6	2.4	

4) 교육·훈련 경험

학업이나 직업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6%가 자격증 준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현재 지내고 있는 청소년쉼터에서 지낸 기간 또는 전체 가정 외 보호 기간이 길수록 자격증 준비 경험률이 높았다. 준비한 자격증으로는 컴퓨터 활용 관련, 제과·제빵 등 식음료 관련 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12〉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인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자격증 준비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있음	없음	F(t)
전체		147	77.6	22.4	
성별	남	89	75.3	24.7	0.668 (0.414)
	여	58	81.0	19.0	
연령	만 15세 이하	24	54.2	45.8	9.042* (0.011)
	만 16~18세	76	81.6	18.4	
	만 19세 이상	47	83.0	17.0	
재학 상태	중3 이하	17	47.1	52.9	11.655* (0.040)
	고1	14	78.6	21.4	
	고2	21	90.5	9.5	
	고3	21	76.2	23.8	
	대학생 이상	21	81.0	19.0	
지역	서울·광역시	61	73.8	26.2	0.856 (0.355)
	비광역시	86	80.2	19.8	
현 시설 거주기간	1년 미만	59	64.4	35.6	14.137** (0.007)
	1년~2년	45	77.8	22.2	
	2년~3년	17	88.2	11.8	
	3년~4년	13	100.0	0.0	
	4년 이상	12	100.0	0.0	
이전 가정 외 보호 경험	있음	76	81.6	18.4	1.466 (0.226)
	없음	71	73.2	26.8	
전체 가정 외 보호 기간	1년 미만	34	52.9	47.1	17.411** (0.002)
	1년~2년	40	77.5	22.5	
	2년~3년	20	90.0	10.0	
	3년~4년	20	90.0	10.0	
	4년 이상	33	87.9	12.1	

〈표 4-13〉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인적 자원 영역 자립 수준 - 자격증 준비 영역(복수 응답)

구분	사례 수	언어·국사	컴퓨터 활용	경영·행정·금융·회계·무역·관광	식품로품	복지·위생	건축·관광·자원 등	전기·전자·통신·금속·기계 등	농림	산업 디자인·산업응용	항공·해양·해운	공예·섬유	기타	없음	x2	
																(단위: %, 년)
성별	전체	147	14.3	50.3	9.5	27.9	14.3	5.4	13.6	2.0	5.4	0.7	2.0	15.6	22.4	
	남	89	10.1	47.2	5.6	25.8	11.2	7.9	18.0	2.2	4.5	1.1	2.2	14.6	24.7	18.521
연령	여	58	20.7	55.2	15.5	31.0	19.0	1.7	6.9	1.7	6.9	0.0	1.7	17.2	19.0	(0.139)
	만 15세 이하	24	16.7	33.3	4.2	20.8	4.2	0.0	4.2	4.2	4.2	0.0	4.2	25.0	45.8	35.239
	만 16~18세	76	10.5	57.9	13.2	27.6	15.8	6.6	11.8	0.0	5.3	1.3	1.3	11.8	18.4	(0.107)
재학 상태	만 19세 이상	47	19.1	46.8	6.4	31.9	17.0	6.4	21.3	4.3	6.4	0.0	2.1	17.0	17.0	
	중3 이하	17	17.6	17.6	0.0	11.8	5.9	0.0	0.0	5.9	5.9	0.0	5.9	29.4	52.9	
	고1	14	14.3	64.3	0.0	35.7	0.0	0.0	14.3	0.0	0.0	0.0	0.0	7.1	21.4	
지역	고2	21	9.5	61.9	14.3	28.6	4.8	14.3	14.3	4.8	0.0	0.0	0.0	14.3	9.5	70.902
	고3	21	14.3	52.4	14.3	23.8	28.6	0.0	9.5	0.0	9.5	4.8	0.0	9.5	23.8	(0.287)
	대학생 이상	21	14.3	47.6	9.5	23.8	19.0	4.8	19.0	0.0	9.5	0.0	4.8	9.5	19.0	
현시점 거주 기간	기타	53	15.1	52.8	11.3	34.0	17.0	7.5	17.0	1.9	5.7	0.0	1.9	18.9	18.9	
	서울·광역시	61	18.0	50.8	11.5	31.1	16.4	6.6	9.8	0.0	6.6	0.0	1.6	18.0	26.2	8.635
	비광역시	86	11.6	50.0	8.1	25.6	12.8	4.7	16.3	3.5	4.7	1.2	2.3	14.0	19.8	(0.800)
현시점 거주 기간	1년 미만	59	13.6	42.4	5.1	22.0	5.1	5.1	11.9	0.0	1.7	1.7	1.7	11.9	35.6	
	1년~2년	45	15.6	53.3	15.6	22.2	17.8	4.4	13.3	4.4	6.7	0.0	2.2	15.6	22.2	76.181*
	2년~3년	17	11.8	52.9	0.0	35.3	23.5	0.0	5.9	0.0	0.0	0.0	0.0	5.9	11.8	(0.016)
	3년~4년	13	7.7	53.8	15.4	53.8	15.4	15.4	15.4	0.0	23.1	0.0	0.0	38.5	0.0	
4년 이상	12	25.0	66.7	16.7	33.3	25.0	8.3	33.3	8.3	8.3	0.0	8.3	25.0	0.0		

140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정책 연구

구분	사례 수	언어·국사	컴퓨터 활용	경망·행정·금융·회계·무역·관광	식품·포복	복지·위생	건축·광업·자원 등	전기·전자·통신·금속·기계 등	농림	신업·디자인·산업용	항공·해양·해운	공예·섬유	기타	없음	x2
전체	147	14.3	50.3	9.5	27.9	14.3	5.4	13.6	2.0	5.4	0.7	2.0	15.6	22.4	13.570 (0.405)
	있음	76	13.2	57.9	10.5	30.3	7.9	15.8	2.6	3.9	0.0	2.6	13.2	18.4	
이전 가정 외 보호 경험	71	15.5	42.3	8.5	25.4	9.9	2.8	11.3	1.4	7.0	1.4	1.4	18.3	26.8	73.914* (0.025)
	1년 미만	34	14.7	35.3	2.9	14.7	5.9	8.8	0.0	0.0	2.9	0.0	11.8	47.1	
	1년~2년	40	12.5	52.5	12.5	22.5	12.5	5.0	15.0	5.0	0.0	2.5	17.5	22.5	
	2년~3년	20	30.0	50.0	5.0	50.0	25.0	5.0	5.0	0.0	10.0	0.0	10.0	10.0	
전체 가정 외 보호 기간	20	10.0	55.0	15.0	30.0	15.0	5.0	15.0	0.0	15.0	0.0	5.0	30.0	10.0	12.1
	3년~4년	33	9.1	60.6	12.1	33.3	24.2	6.1	3.0	3.0	0.0	3.0	12.1	12.1	

다. 사회적 자본 영역

1) 원가족 교류

아버지, 어머니와의 교류 정도를 조사한 결과, 53.7%는 교류가 어느 정도 있거나 매우 많았고, 전혀 없거나 별로 없는 경우는 36.7%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원가족과의 교류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고 가정 외 보호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일 때 원가족과 교류가 가장 많았다.

〈표 4-14〉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인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원가족 교류

(단위: %, 년)

구분	사례수	비해당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x2	
전체	147	9.5	12.9	23.8	40.1	13.6		
성별	남	89	11.2	11.2	27.0	36.0	14.6	3.285 (0.511)
	여	58	6.9	15.5	19.0	46.6	12.1	
연령	만 15세 이하	24	0.0	4.2	25.0	45.8	25.0	22.350** (0.004)
	만 16~18세	76	15.8	6.6	26.3	40.8	10.5	
	만 19세 이상	47	4.3	27.7	19.1	36.2	12.8	
재학 상태	중3 이하	17	0.0	5.9	17.6	52.9	23.5	19.110 (0.515)
	고1	14	14.3	14.3	21.4	35.7	14.3	
	고2	21	19.0	14.3	23.8	38.1	4.8	
	고3	21	14.3	4.8	28.6	47.6	4.8	
	대학생 이상	21	9.5	9.5	14.3	38.1	28.6	
기타	53	5.7	18.9	28.3	35.8	11.3		
지역	서울·광역시	61	6.6	11.5	21.3	49.2	11.5	3.879 (0.423)
	비광역시	86	11.6	14.0	25.6	33.7	15.1	
현 시설 거주기간	1년 미만	59	11.9	15.3	27.1	33.9	11.9	11.929 (0.749)
	1년~2년	45	6.7	11.1	15.6	44.4	22.2	
	2년~3년	17	5.9	17.6	35.3	41.2	0.0	
	3년~4년	13	15.4	7.7	15.4	46.2	15.4	
	4년 이상	12	8.3	8.3	33.3	41.7	8.3	
이전 가정 외 보호 경험	있음	76	13.2	13.2	26.3	40.8	6.6	8.330 (0.080)
	없음	71	5.6	12.7	21.1	39.4	21.1	

142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정책 연구

구분	사례수	비해당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어느 정도 있다	매우 많다	x2	
전체	147	9.5	12.9	23.8	40.1	13.6	34.282** (0.005)	
전체 가정 외 보호 기간	1년 미만	34	2.9	23.5	29.4	26.5		17.6
	1년~2년	40	2.5	12.5	12.5	45.0		27.5
	2년~3년	20	10.0	15.0	35.0	40.0		0.0
	3년~4년	20	10.0	5.0	30.0	45.0		10.0
4년 이상	33	24.2	6.1	21.2	45.5	3.0		

주: 가족이 없거나 존재를 모르는 경우 비해당.

구체적으로 원가족과의 전화, 문자 등 연락 빈도를 살펴보면 75.5%의 청소년이 1개월에 한 번 이상 원가족과 교류하고 있으며 아예 연락하지 않는 경우도 1.8%가 있었다. 응답자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다른 가정 외 보호 경험이 없는 경우에 1개월에 1번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4-15〉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인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원가족 연락 빈도

(단위: %, 년)

구분	사례 수	연락하지 않음	1년에 1번 미만	1년에 1, 2번	1년에 3, 4번	2개월에 1번 정도	1개월에 1번 정도	1개월에 2, 3번	1주일에 1번 이상	x2	
전체	114	1.8	5.3	2.6	6.1	8.8	12.3	28.1	35.1	6.568 (0.475)	
성별											
	남	69	2.9	8.7	2.9	7.2	8.7	11.6	24.6	33.3	12.483 (0.568)
	여	45	0.0	0.0	2.2	4.4	8.9	13.3	33.3	37.8	
연령	만 15세 이하	23	0.0	8.7	0.0	8.7	4.3	13.0	17.4	47.8	
	만 16~18세	59	1.7	6.8	5.1	6.8	6.8	10.2	32.2	30.5	25.379 (0.884)
	만 19세 이상	32	3.1	0.0	0.0	3.1	15.6	15.6	28.1	34.4	
재학 상태	중3 이하	16	0.0	6.3	0.0	6.3	12.5	12.5	18.8	43.8	9.284 (0.233)
	고1	10	0.0	0.0	0.0	10.0	0.0	10.0	40.0	40.0	
	고2	14	0.0	0.0	0.0	21.4	7.1	14.3	21.4	35.7	
	고3	17	0.0	11.8	5.9	5.9	0.0	11.8	35.3	29.4	
	대학생 이상	17	0.0	0.0	5.9	0.0	11.8	5.9	29.4	47.1	
기타	40	5.0	7.5	2.5	2.5	12.5	15.0	27.5	27.5		
지역	서울·광역시	50	2.0	4.0	0.0	2.0	10.0	14.0	38.0	30.0	51.819*** (0.004)
	비광역시	64	1.6	6.3	4.7	9.4	7.8	10.9	20.3	39.1	
현 시설 거주 기간	1년 미만	43	2.3	4.7	0.0	7.0	14.0	18.6	23.3	30.2	51.819*** (0.004)
	1년~2년	37	0.0	2.7	0.0	5.4	0.0	5.4	40.5	45.9	
	2년~3년	13	0.0	0.0	7.7	15.4	23.1	15.4	7.7	30.8	
	3년~4년	10	0.0	10.0	0.0	0.0	0.0	0.0	40.0	50.0	
	4년 이상	10	10.0	20.0	20.0	0.0	10.0	20.0	10.0	10.0	

구분	사례 수	연락하지 않음	1년에 1번 미만	1년에 1, 2번	1년에 3, 4번	2개월에 1번 정도	1개월에 1번 정도	1개월에 2, 3번	1주일에 1번 이상	x2
전체	114	1.8	5.3	2.6	6.1	8.8	12.3	28.1	35.1	
0전가정외 보호 경험	있음	56	1.8	10.7	1.8	7.1	8.9	7.1	37.5	15.742*
	없음	58	1.7	0.0	3.4	5.2	8.6	17.2	19.0	(0.028)
전체 가정 외 보호 기간	1년 미만	25	4.0	4.0	0.0	8.0	12.0	20.0	8.0	41.772* (0.046)
	1년~2년	34	0.0	2.9	0.0	5.9	0.0	11.8	26.5	
	2년~3년	15	0.0	0.0	6.7	13.3	20.0	13.3	20.0	
	3년~4년	17	0.0	11.8	0.0	5.9	5.9	0.0	58.8	
4년 이상	23	4.3	8.7	8.7	0.0	13.0	13.0	34.8	17.4	

주: 가족이 없거나 존재를 모르는 경우인 비해당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원가족과의 만남 빈도는 연락 빈도에 비해 현저히 적었는데, 1개월에 한 번 이상 만나는 경우는 36%뿐이고 아예 만나지 않거나 분기에 한 번 이하로 만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연락 빈도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다른 가정 외 보호 경험이 없는 경우의 만남 빈도가 높고 전체 가정 외 보호 기간이 길면 원가족과의 만남 빈도가 적은 경향이 있다.

〈표 4-16〉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인적 자문 영역 자립 수준 - 원가족 만남 빈도

(단위: %, 년)

구분	사례 수	만나지 않음	1년에 1번 미만	1년에 1, 2번	1년에 3, 4번	2개월에 1번 정도	1개월에 1번 정도	1개월에 2, 3번	1주일에 1번 이상	x2
전체	114	14.0	10.5	9.6	17.5	12.3	14.9	12.3	8.8	
성별	남	69	13.0	13.0	13.0	13.0	11.6	11.6	10.1	13.808
	여	45	15.6	6.7	4.4	24.4	13.3	20.0	15.6	(0.055)
연령	만 15세 이하	23	8.7	13.0	0.0	21.7	13.0	17.4	13.0	11.406 (0.654)
	만 16~18세	59	15.3	8.5	15.3	13.6	10.2	13.6	16.9	
	만 19세 이상	32	15.6	12.5	6.3	21.9	15.6	15.6	3.1	
재학 상태	중3 이하	16	6.3	6.3	0.0	25.0	25.0	18.8	6.3	40.282 (0.248)
	고1	10	10.0	20.0	10.0	0.0	0.0	10.0	40.0	
	고2	14	28.6	7.1	7.1	14.3	0.0	14.3	21.4	
	고3	17	5.9	11.8	17.6	5.9	11.8	29.4	5.9	
	대학생 이상	17	0.0	5.9	5.9	29.4	11.8	23.5	11.8	
지역	서울·광역시	50	18.0	6.0	8.0	16.0	14.0	20.0	16.0	10.523
	비광역시	64	10.9	14.1	10.9	18.8	10.9	10.9	9.4	(0.161)

구분	사례 수	만나지 않음	1년에 1번 미만	1년에 1, 2번	1년에 3, 4번	2개월에 1번 정도	1개월에 1번 정도	1개월에 2, 3번	1주일에 1번 이상	x2
전체	114	14.0	10.5	9.6	17.5	12.3	14.9	12.3	8.8	
현 시설 거주 기간	1년 미만	43	18.6	9.3	11.6	16.3	9.3	7.0	18.6	9.3
	1년~2년	37	8.1	5.4	0.0	16.2	16.2	27.0	13.5	13.5
	2년~3년	13	15.4	23.1	7.7	23.1	15.4	7.7	7.7	0.0
	3년~4년	10	20.0	10.0	20.0	20.0	10.0	20.0	0.0	0.0
	4년 이상	10	10.0	20.0	30.0	10.0	10.0	10.0	0.0	10.0
0전7점의 보호 경험	있음	56	19.6	10.7	12.5	21.4	8.9	8.9	16.1	1.8
	없음	58	8.6	10.3	6.9	13.8	15.5	20.7	8.6	15.5
전체 가정 외 보호 기간	1년 미만	25	20.0	4.0	4.0	12.0	12.0	12.0	20.0	16.0
	1년~2년	34	2.9	11.8	2.9	11.8	14.7	20.6	20.6	14.7
	2년~3년	15	13.3	26.7	0.0	26.7	13.3	13.3	6.7	0.0
	3년~4년	17	35.3	5.9	11.8	23.5	5.9	11.8	5.9	0.0
	4년 이상	23	8.7	8.7	30.4	21.7	13.0	13.0	0.0	4.3

주: 가족이 없거나 존재를 모르는 경우인 비해당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임.

2) 사회적 지지 수준

사회적 지지 수준은 도움, 관심과 격려,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충고 등의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4점 척도 6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사회적 지지 총점은 17.5점이었고 응답자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한편, 응답자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r = .43, p < .001$), 주관적 웰빙(행복도 $r = .35, p < .001$; 우울 $r = -.28, p < .001$; 생활 만족도 $r = .41, p < .001$)과, 자기효능감($r = .48, p < .001$) 및 회복탄력성($r = .64, p < .001$)에서 더 긍정적인 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7〉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사회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사회적 지지

(단위: %, 년)

구분	사례 수	평균	F(t)
전체	147	17.5	
성별	남	89	17.7
	여	58	17.4

구분		사례 수	평균	F(t)
전체		147	17.5	
연령	만 15세 이하	24	17.3	0.560 (0.915)
	만 16~18세	76	17.8	
	만 19세 이상	47	17.3	
재학 상태	중3 이하	17	17.6	1.114 (0.347)
	고1	14	18.5	
	고2	21	17.4	
	고3	21	18.4	
	대학생 이상	21	17.4	
	기타	53	17.1	
지역	서울·광역시	61	17.9	1.003 (0.318)
	비광역시	86	17.3	
현 시설 거주기간	1년 미만	59	17.4	0.619 (0.872)
	1년~2년	45	17.2	
	2년~3년	17	16.9	
	3년~4년	13	18.0	
	4년 이상	12	19.3	
이전 가정 외 보호 경험	있음	76	17.5	-0.152 (0.880)
	없음	71	17.6	
전체 가정 외 보호 기간	1년 미만	34	16.9	0.802 (0.688)
	1년~2년	40	17.5	
	2년~3년	20	17.0	
	3년~4년	20	17.6	
	4년 이상	33	18.5	

3) 사회적 관계망 크기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응급 시 나에게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믿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였다. 정서적 차원에 해당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는 사람’은 평균 7.3명으로 관계망 크기가 가장 컸고 물질적 차원에 해당하는 ‘응급 시 나에게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사람’은 3.2명으로 상대적으로 관계망 크기가 작았다.

〈표 4-18〉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사회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사회적 관계망 크기

(단위: %, 년)

구분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도움 요청할 사람			응급 시 돈을 빌려줄수 있는 사람			믿음, 용기 주는 사람			
	사례 수	평균	F(t)	사례 수	평균	F(t)	사례 수	평균	F(t)	사례 수	평균	F(t)	
전체	147	6.9		147	6.2		147	3.2		147	7.3		
성별	남	89	7.8	1.683	89	7.0	1.840	89	3.5	0.632	89	7.3	-0.012
	여	58	5.5		58	4.8		58	2.8		58	7.3	
연령	만 15세 이하	24	7.7	0.785	24	6.7	1.004	24	3.2	1.953	24	6.7	1.161
	만 16~18세	76	7.2		76	6.2		76	3.9		76	8.4	
	만 19세 이상	47	6.0		47	5.8		47	2.2		47	5.9	
재학 상태	중3 이하	17	8.5	0.823	17	7.4	1.843	17	3.5	1.709	17	7.6	1.388
	고1	14	10.9		14	10.7		14	7.3		14	10.7	
	고2	21	7.8		21	7.2		21	4.3		21	7.0	
	고3	21	7.0		21	6.0		21	3.6		21	9.1	
	대학생 이상	21	5.3		21	5.4		21	2.3		21	3.9	
기타	53	5.5	53	4.5	53	1.8	53	7.1					
지역	서울·광역	61	6.6	-0.313	61	6.0	-0.190	61	3.2	-0.042	61	8.5	0.959
	비광역	86	7.1		86	6.3		86	3.2		86	6.5	
현 시설 거주기간	1년 미만	59	6.4	1.385	59	5.9	1.692	59	3.3	1.236	59	8.3	1.281
	1년~2년	45	7.0		45	5.9		45	2.7		45	5.6	
	2년~3년	17	9.2		17	7.9		17	3.3		17	9.1	
	3년~4년	13	6.3		13	6.2		13	4.5		13	5.7	
	4년 이상	12	6.1		12	5.7		12	3.8		12	8.4	
여과정박 보호 경험	있음	76	6.9	0.093	76	6.7	0.807	76	3.7	0.814	76	8.6	1.347
	없음	71	6.8		71	5.6		71	2.8		71	5.9	
전체 가정 외 보호 기간	1년 미만	34	6.5	0.574	34	5.5	1.113	34	3.7	1.085	34	9.5	0.940
	1년~2년	40	7.7		40	6.7		40	3.0		40	7.0	
	2년~3년	20	6.2		20	5.5		20	3.4		20	6.2	
	3년~4년	20	5.9		20	5.4		20	3.2		20	5.5	
4년 이상	33	7.3	33	7.1	33	3.0	33	7.3					

도움이나 지지 등을 주는 사람이 1명 이상 있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로 누가 도움이이나 지지를 주는지 조사하였다. 우선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응답자 절반이 청소년쉼터 선생님을 꼽았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또한 45.7%가 청소년쉼터 선생님이라고 응답하였고 믿음, 용기를 주는 사람 역시 청소년쉼터 선생님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쉼터 선생님 다음으로는 학교나 동네 친구에게서 조언, 도움, 용기를 얻고 있었다. 정서적 차원에 해당하는 이 세 영역의 경과를 통

해 중장기 청소년쉼터 청소년의 관계는 쉼터 선생님과 학교·동네 친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질적 차원의 관계는 나머지 세 영역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응급 시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사람으로는 청소년쉼터 선생님보다 학교나 동네 친구를 많이 꼽았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친척 등 혈연 관계라는 응답이 50%로 다른 영역(21%~25%)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조언, 도움, 용기 등 정서적 차원의 관계는 청소년쉼터 선생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돈을 빌리는 등 물질적 차원의 관계는 혈연관계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4-19〉 청소년쉼터 응답자 특성별 사회적 자본 영역 자립 수준 - 사회적 관계

(단위: %, 년)

구분	사례 수	쉼터 선생님	자립 지원 전담 요원	학교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친척 또는 친지	멘토	학교 동네 친구	시설 친구	기타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132	50.0	0.0	3.0	4.5	7.6	4.5	4.5	2.3	12.9	3.8	6.8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사람	127	45.7	0.8	3.1	6.3	7.9	4.7	6.3	2.4	15.7	2.4	4.7
응급 시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사람	100	20.0	0.0	0.0	15.0	15.0	8.0	12.0	0.0	23.0	4.0	3.0
믿음, 용기 주는 사람	128	39.1	0.0	3.1	10.9	7.0	3.9	3.1	1.6	18.8	5.5	7.0

주: 응답자 특성에 따른 사회적 관계는 부록 참고.

4. 응답자의 자립준비 경험과 자립준비 수준

자립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자립 수준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와 응답자의 자립준비 수준을 사적, 인적, 사회적 자본 영역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자립지원관 이용 경험과 자립준비 수준

먼저 자립지원관 이용 여부에 따른 자립준비 수준을 보면 사적 자본 영역의 일부 지표에서 자립 서비스 이용 경험과 자립 수준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자립지원관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1.4점 높고 주관적 웰빙 중 행복, 걱정, 우울, 생활만족도가 긍정적인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립지원관 이용 경험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4-20〉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과 자립 수준 - 자립지원관 이용

(단위: 명, %, 점)

영역	지표	유		무		t(F)/x2	
		N	평균(SD), %	N	평균(SD), %		
사적 자본 영역	삶의 만족도	44	7.8(1.9)	103	6.4(2.3)	3.310**	
	주관적 웰빙	행복	44	6.4(1.9)	103	5.4(2.4)	2.488*
		걱정	44	4.5(2.2)	103	5.6(2.7)	-2.411*
		우울	44	3.1(2.8)	103	4.7(2.9)	-2.994**
		삶(생활) 만족도	44	6.4(2.3)	103	5.5(2.4)	2.055*
		유데모니아	44	6.0(2.1)	103	5.6(2.4)	0.978
	회복탄력성	44	92.7(16.3)	103	91.0(15.3)	0.618	
	자기효능감	44	10.5(2.4)	103	9.9(2.7)	1.290	
인적 자본 영역	재학 생태	재학중	24	25.5	70	74.5	5.540
		휴학·중퇴	10	52.6	9	47.4	
		기타	10	29.4	24	70.6	
	주관적 학업 성적	24	4.9(2.2)	70	4.4(2.7)	0.713	
	자격증 준비 경험	유	7	21.2	26	78.8	1.543
		무	37	32.5	77	67.5	
	진로	취업	7	20.0	28	80.0	2.891
		2-4년제 대학	7	30.4	16	69.6	
모름		1	7.1	13	92.9		

영역	지표	유		무		t(F)/x2	
		N	평균(SD), %	N	평균(SD), %		
사적 자본 영역	삶의 만족도	44	7.8(1.9)	103	6.4(2.3)	3.310**	
	주관적 웰빙	행복	44	6.4(1.9)	103	5.4(2.4)	2.488*
		걱정	44	4.5(2.2)	103	5.6(2.7)	-2.411*
		우울	44	3.1(2.8)	103	4.7(2.9)	-2.994**
		삶(생활) 만족도	44	6.4(2.3)	103	5.5(2.4)	2.055*
		유대모니아	44	6.0(2.1)	103	5.6(2.4)	0.978
	회복탄력성	44	92.7(16.3)	103	91.0(15.3)	0.618	
	자기효능감	44	10.5(2.4)	103	9.9(2.7)	1.290	
사회적 자본 영역	원가족 교류	유	36	31.6	78	68.4	0.206
		무	7	36.8	12	63.2	
	사회적 지지 총점	44	18.0(3.2)	103	17.3(3.8)	0.992	
	사회적 관계망 (수)	조언자	44	6.7(8.1)	103	6.9(9.9)	-0.127
		도움 요청	44	5.8(7.5)	103	6.3(8.8)	-0.340
		응급 시 금전 도움	44	2.6(2.8)	103	3.5(7.8)	-0.751
		믿음, 용기	44	7.4(10.9)	103	7.3(13.0)	0.076

나. 교육·훈련 경험과 자립준비 수준

현재 청소년쉼터에서 직업교육 또는 훈련, 자격증 취득 등에 관련된 서비스 경험과 자립준비 수준의 관계는 진로 인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80%,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69.6%가 직업 교육 또는 훈련, 자격증 등에 관한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원하는 진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경우 78.6%가 직업 관련 서비스 경험이 없었다. 진로교육 또는 훈련, 자격증 취득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청소년의 희망 진로가 더 뚜렷한 것은 해당 서비스가 청소년의 진로 결정 또는 진로 의식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일 수 있다.

〈표 4-21〉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과 자립 수준 - 직업교육 또는 훈련, 자격증 취득 서비스

(단위: 명, %, 점)

영역	지표		유		무		t(F)/x2
			N	평균(SD), %	N	평균(SD), %	
사적 자본 영역	삶의 만족도		106	7.0(2.1)	41	6.4(2.6)	1.462
	주관적 웰빙	행복	106	5.8(2.1)	41	5.4(2.9)	0.634
		걱정	106	5.1(2.5)	41	5.7(2.8)	-1.275
		우울	106	4.0(2.9)	41	4.7(3.0)	-1.208
		삶(생활) 만족도	106	5.9(2.4)	41	5.4(2.4)	1.264
		유대모니아	106	5.9(2.3)	41	5.2(2.4)	1.675
	회복탄력성		106	91.9(15.5)	41	90.6(16.0)	0.446
	자기효능감		106	10.0(2.5)	41	10.2(3.0)	-0.497
인적 자본 영역	재학 생태	재학중	68	72.3	26	27.7	1.081
		휴학·중퇴	12	63.2	7	36.8	
		기타	26	76.5	8	23.5	
	주관적 학업 성적		68	4.8(2.6)	26	3.8(2.2)	1.769
	진로	취업	28	80.0	7	20.0	15.410***
		2-4년제 대학	16	69.6	7	30.4	
모름		3	21.4	11	78.6		
사회적 자본 영역	원가족 교류	유	85	74.6	29	25.4	3.838
		무	10	52.6	9	47.4	
	사회적 지지 총점		106	17.7(3.6)	41	17.2(3.8)	0.773
	사회적 관계망 (수)	조언자	106	6.4(7.1)	41	8.2(13.5)	-0.839
		도움 요청	106	5.8(5.5)	41	7.2(13.2)	-0.674
		응급 시 금전 도움	106	2.9(3.9)	41	4.2(11.0)	-1.070
		믿음, 용기	106	6.8(11.7)	41	8.6(14.1)	-0.790

다. 자립생활 멘토링 경험과 자립준비 수준

먼저 자립한 선배 등 자립 생활 멘토와의 멘토링 경험이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 주관적 웰빙, 사회적 지지 등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나 주관적 웰빙을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4-22〉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과 자립 수준 - 자립생활 멘토와의 멘토링

(단위: 명, %, 점)

영역	지표	유		무		t(F)/x2	
		N	평균(SD), %	N	평균(SD), %		
사적 자본 영역	삶의 만족도	66	7.2(2.2)	81	6.6(2.3)	1.553	
	주관적 웰빙	행복	66	5.8(2.2)	81	5.6(2.5)	0.638
		걱정	66	5.1(2.1)	81	5.4(2.9)	-0.718
		우울	66	3.8(2.8)	81	4.5(3.0)	-1.339
		삶(생활) 만족도	66	6.2(2.2)	81	5.4(2.5)	2.037*
		유데모니아	66	6.0(2.1)	81	5.6(2.5)	1.032
	회복탄력성	66	91.7(15.9)	81	91.4(15.4)	0.131	
자기효능감	66	9.9(2.7)	81	10.2(2.6)	-0.528		
인적 자본 영역	재학 생태	재학중	42	44.7	52	55.3	0.651
		휴학·중퇴	10	52.6	9	47.4	
		기타	14	41.2	20	58.8	
	주관적 학업 성적	42	4.4(2.8)	52	4.7(2.4)	-0.585	
	자격증 준비경험	유	19	57.6	14	42.4	2.765
		무	47	41.2	67	58.8	
	진로	취업	16	45.7	19	54.3	1.255
2-4년제 대학		10	43.5	13	56.5		
모름		4	28.6	10	71.4		
사회적 자본 영역	원가족 교류	유	52	45.6	62	54.4	0.508
		무	7	36.8	12	63.2	
	사회적 지지 총점	66	17.7(4.0)	81	17.4(3.4)	0.504	
	사회적 관계망 (수)	조언자	66	6.9(7.4)	81	6.8(10.7)	0.072
		도움 요청	66	5.7(7.0)	81	6.5(9.4)	-0.538
		응급 시 급전 도움	66	2.8(4.0)	81	3.5(8.3)	-0.640
		믿음, 용기	66	8.1(14.8)	81	6.6(10.0)	0.727

라. 용돈 지원 경험과 자립준비 수준

현 청소년쉼터에 지내면서 용돈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받은 경험이 없는 청소년 간 자립 수준 차이는 영역에 따라 달랐다. 용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주관적 웰빙 등 사적 자본 영역 점수가 낮고 원가족 교류, 사회적 관계망 등 사회적 자본 영역 점수가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23〉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과 자립 수준 - 용돈 지원

(단위: 명, %, 점)

영역	지표	유		무		t(F)/x2	
		N	평균(SD), %	N	평균(SD), %		
사적 자본 영역	삶의 만족도	107	6.8(2.2)	40	7.0(2.5)	-0.552	
	주관적 웰빙	행복	107	5.6(2.4)	40	5.9(2.2)	-0.661
		걱정	107	5.5(2.5)	40	4.5(2.8)	2.038*
		우울	107	4.4(2.9)	40	3.7(2.9)	1.309
		삶(생활) 만족도	107	5.6(2.4)	40	6.3(2.4)	-1.725
		유데모니아	107	5.8(2.4)	40	5.6(2.3)	0.586
	회복탄력성	107	91.9(15.4)	40	90.5(16.1)	0.479	
	자기효능감	107	10.2(2.7)	40	9.8(2.7)	0.886	
인적 자본 영역	재학 생태	재학중	67	71.3	27	28.7	1.044
		휴학·중퇴	13	68.4	6	31.6	
		기타	27	79.4	7	20.6	
	주관적 학업 성적	67	4.6(2.7)	27	4.4(2.3)	0.349	
	자격증 준비 경험	유	21	63.6	12	36.4	1.800
		무	86	75.4	28	24.6	
	진로	취업	25	71.4	10	28.6	4.460
		2-4년제 대학	14	60.9	9	39.1	
	모름	13	92.9	1	7.1		
사회적 자본 영역	원가족 교류	유	84	73.7	30	26.3	1.989
		무	11	57.9	8	42.1	
	사회적 지지 총점	107	17.7(3.6)	40	17.2(3.7)	0.700	
	사회적 관계망 (수)	조언자	107	7.5(9.7)	40	5.1(8.0)	1.416
		도움 요청	107	6.5(8.5)	40	5.3(8.3)	0.799
		응급 시 금전 도움	107	3.6(7.6)	40	2.1(3.0)	1.224
		믿음, 용기	107	8.1(13.4)	40	5.2(8.9)	1.254

마. 장학금 이용 경험과 자립준비 수준

현 청소년쉼터에 지내면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지표에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자립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학업 성적을 제외하면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24〉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과 자립 수준 - 장학금

(단위: 명, %, 점)

영역	지표	유		무		t(F)/x2	
		N	평균(SD), %	N	평균(SD), %		
사적 자본 영역	삶의 만족도	55	7.3(2.0)	92	6.6(2.4)	1.761	
	주관적 웰빙	행복	55	5.8(2.3)	92	5.6(2.4)	0.681
		걱정	55	5.0(2.5)	92	5.4(2.6)	-0.817
		우울	55	4.1(3.0)	92	4.2(2.9)	-0.202
		삶(생활) 만족도	55	6.1(2.3)	92	5.5(2.4)	1.473
		유데모니아	55	6.0(2.1)	92	5.6(2.4)	1.067
	회복탄력성	55	93.0(16.5)	92	90.6(15.0)	0.907	
	자기효능감	55	10.6(2.8)	92	9.7(2.6)	2.024*	
인적 자본 영역	재학 상태	재학중	38	40.4	56	59.6	1.012
		휴학·중퇴	6	31.6	13	68.4	
		기타	11	32.4	23	67.6	
	주관적 학업 성적	38	5.3(2.5)	56	4.1(2.5)	2.357*	
	자격증 준비경험	유	12	36.4	21	63.6	0.020
		무	43	37.7	71	62.3	
	진로	취업	14	40.0	21	60.0	0.185
		2-4년제 대학	8	34.8	15	65.2	
모름		5	35.7	9	64.3		
사회적 자본 영역	원가족 교류	유	45	39.5	69	60.5	2.375
		무	4	21.1	15	78.9	
	사회적 지지 총점	55	18.2(3.5)	92	17.2(3.7)	1.652	
	사회적 관계망 (수)	조인자	55	7.7(10.5)	92	6.4(8.6)	0.852
		도움 요청	55	7.2(10.0)	92	5.5(7.3)	1.167
		응급 시 금전 도움	55	4.6(10.1)	92	2.4(3.1)	1.597
		믿음, 용기	55	9.6(17.3)	92	5.9(8.0)	1.502

바. 자립지원 사례관리 경험과 자립준비 수준

자립지원관 선생님께서로부터 사례관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자립준비 수준이 더 높은지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 회복탄력성, 주관적 학업 성적 등 일부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오히려 행복, 걱정, 우울, 자기효능감, 사회적 관계망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경험이 있는 경우 더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다. 자립지원

관 선생님의 사례관리 경험과 자립준비 수준 간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자립지원관 선생님의 역할이나 사례관리 내용, 청소년들의 이용 방식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표 4-25〉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과 자립 수준 - 자립지원관 선생님의 사례관리

(단위: 명, %, 점)

영역	지표	유		무		t(F)/x2	
		N	평균(SD), %	N	평균(SD), %		
사적 자본 영역	삶의 만족도	97	6.9(2.3)	50	6.8(2.3)	0.267	
	주관적 웰빙	행복	97	5.6(2.3)	50	5.8(2.5)	-0.645
		걱정	97	5.3(2.7)	50	5.1(2.3)	0.420
		우울	97	4.3(3.0)	50	4.0(2.8)	0.625
		삶(생활) 만족도	97	5.8(2.5)	50	5.7(2.3)	0.176
		유데모니아	97	5.8(2.4)	50	5.7(2.1)	0.203
	회복탄력성	97	91.7(16.0)	50	91.2(15.0)	0.195	
자기효능감	97	9.8(2.7)	50	10.5(2.5)	-1.418		
인적 자본 영역	재학 생태	재학중	60	63.8	34	36.2	1.642
		휴학·중퇴	15	78.9	4	21.1	
		기타	22	64.7	12	35.3	
	주관적 학업 성적	60	4.8(2.8)	34	4.2(2.1)	0.992	
	자격증 준비경험	유	21	63.6	12	36.4	0.105
		무	76	66.7	38	33.3	
	진로	취업	22	62.9	13	37.1	4.424
2-4년제 대학		16	69.6	7	30.4		
모름		5	35.7	9	64.3		
사회적 자본 영역	원가족 교류	유	77	67.5	37	32.5	0.677
		무	11	57.9	8	42.1	
	사회적 지지 총점	97	17.6(3.8)	50	17.3(3.4)	0.487	
	사회적 관계망 (수)	조언자	97	7.1(8.5)	50	6.4(10.9)	0.407
		도움 요청	97	5.7(6.5)	50	7.1(11.2)	-0.851
		응급 시 금전 도움	97	2.7(3.8)	50	4.2(10.1)	-1.276
		믿음, 용기	97	7.7(13.0)	50	6.5(11.2)	0.571

사.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과 자립준비 수준

현 청소년쉼터에서 지내는 동안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과 자립준비 수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유데모니아

수준이 높았고 다른 지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의료서비스 자체의 이용률이 높지 않아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없는 청소년 집단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4-26〉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과 자립 수준 - 의료서비스

(단위: 명, %, 점)

영역	지표	유		무		t(F)/x2	
		N	평균(SD), %	N	평균(SD), %		
사적 자본 영역	삶의 만족도	131	6.8(2.3)	16	6.8(2.3)	0.148	
	주관적 웰빙	행복	131	5.6(2.3)	16	6.1(2.4)	-0.832
		걱정	131	5.2(2.6)	16	5.2(2.2)	0.061
		우울	131	4.3(3.0)	16	3.6(2.7)	0.909
		삶(생활) 만족도	131	5.7(2.4)	16	5.9(2.6)	-0.296
		유데모니아	131	5.9(2.3)	16	4.1(1.9)	3.003**
	회복탄력성	131	91.9(15.8)	16	87.9(13.8)	0.971	
	자기효능감	131	10.2(2.7)	16	9.4(2.4)	1.105	
인적 자본 영역	재학 생태	재학중	86	91.5	8	8.5	2.599
		휴학·중퇴	15	78.9	4	21.1	
		기타	30	88.2	4	11.8	
	주관적 학업 성적	86	4.5(2.6)	8	4.6(2.3)	-0.083	
	자격증 준비경험	유	26	78.8	7	21.2	4.679*
		무	105	92.1	9	7.9	
	진로	취업	34	97.1	1	2.9	2.691
		2-4년제 대학	20	87.0	3	13.0	
모름		12	85.7	2	14.3		
사회적 자본 영역	원가족 교류	유	101	88.6	13	11.4	0.013
		무	17	89.5	2	10.5	
	사회적 지지 총점	131	17.6(3.8)	16	17.1(2.4)	0.487	
	사회적 관계망 (수)	조언자	131	7.3(9.8)	16	3.3(2.8)	1.626
		도움 요청	131	6.5(8.8)	16	3.2(3.0)	1.505
		응급 시 급전 도움	131	3.4(7.0)	16	1.6(1.6)	1.016
		믿음, 용기	131	7.8(13.0)	16	3.6(2.8)	1.288

아. 심리정서 상담·치료 서비스 이용 경험과 자립준비 수준

현재 생활하는 청소년쉼터에서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따라 자립준비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심리정서 관

련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 행복, 삶(생활) 만족도, 유테모니아, 자기효능감, 주관적 학업성적, 사회적 지지와 관계망 크기가 긍정적이고, 걱정, 우울, 회복탄력성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표 4-27〉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과 자립 수준 -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단위: 명, %, 점)

영역	지표		유		무		t(F)/x2
			N	평균(SD), %	N	평균(SD), %	
사적 자본 영역	삶의 만족도		120	6.9(2.3)	27	6.4(2.2)	1.068
	주관적 웰빙	행복	120	5.8(2.2)	27	5.2(2.9)	1.189
		걱정	120	5.3(2.5)	27	5.1(3.0)	0.335
		우울	120	4.3(2.9)	27	3.9(3.0)	0.591
		삶(생활) 만족도	120	5.8(2.5)	27	5.7(2.2)	0.067
		유테모니아	120	5.9(2.2)	27	5.1(2.6)	1.638
	회복탄력성		120	91.2(16.0)	27	93.0(13.7)	-0.549
	자기효능감		120	10.0(2.7)	27	10.4(2.7)	-0.813
인적 자본 영역	재학 생태	재학중	80	85.1	14	14.9	3.080
		휴학·중퇴	13	68.4	6	31.6	
		기타	27	79.4	7	20.6	
	주관적 학업 성적		80	4.6(2.6)	14	4.4(2.4)	0.310
	자격증 준비 경험	유	23	69.7	10	30.3	4.043*
		무	97	85.1	17	14.9	
	진로	취업	31	88.6	4	11.4	8.658*
		2-4년제 대학	21	91.3	2	8.7	
모름		8	57.1	6	42.9		
사회적 자본 영역	원가족 교류	유	94	82.5	20	17.5	2.040
		무	13	68.4	6	31.6	
	사회적 지지 총점		120	17.7(3.6)	27	16.9(3.8)	1.095
	사회적 관계망 (수)	조언자	120	7.4(9.8)	27	4.8(6.7)	1.296
		도움 요청	120	6.5(8.9)	27	4.6(5.8)	1.097
		응급 시 금전 도움	120	3.4(7.2)	27	2.4(3.2)	0.703
		믿음, 용기	120	7.8(13.3)	27	5.0(6.7)	1.059

제2절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준비도 비교 결과

본 절에서는 청소년쉼터의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체계의 아동·청소년의 응답자 특성을 비교하고 이들의 자립준비 실태와 자립 수준을 비교하였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아동보호체계의 아동·청소년의 자료는 2019년도 가정 외 보호 아동 자립준비 실태 조사³⁵⁾를 활용하였다. 자립준비 실태는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과 자립지원관 이용 및 사례관리, 직업교육·훈련, 의료심리정서 및 디딤씨앗통장 등 자립서비스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의 격차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자립 수준에 대한 분석은 삶의 만족도, 주관적 웰빙,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되는 사적 자본 영역, 현재의 교육수준, 학업성적, 자격증 준비 경험과 희망 진로로 구성되는 인적 자본 영역, 원가족 교류,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망으로 측정되는 사회적 자본 영역으로 구분하여 아동·청소년의 자립 수준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1.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대상자 특성 비교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별, 재학상태별, 시설 거주기간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남녀 성별 분포는 청소년쉼터에서 남자 청소년의 비율이 60.5%로 가장 높았으며 공동생활가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 평균은 청소년보호체계 중장기 청소년쉼터 청소년이 17.7세로 평균 17세인 공동생활가정보다 높았으며, 만

35) “이상정 외. (2019a).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참조.

19세 이상 연령의 청소년 비율이 32%로 공동생활가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재학 상태별로는 고등학생이 대다수인 아동보호체계의 공동생활가정에 비해 청소년쉼터의 경우 고등학생 다음으로 취업 기타, 휴학 또는 중퇴의 비율이 6~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설 거주기간은 공동생활가정에 비해 현저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쉼터 청소년의 거주기간은 1.7년으로 6.2년인 공동생활가정과 비교할 때 매우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 가정 외 보호 기간은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의 8.5년에 비해 중장기 청소년쉼터 보호 아동은 3.1년으로 2배 이상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단기로 거주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28〉 응답자 특성 비교(쉼터는 보호기관 수가 아닌 보호기관 유형수임)

(단위: %, 년)

구분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x ² /t(F)
사례 수		(147)	(215)	-
전체		100.0	100.0	-
성별	남	60.5	59.5	0.037 (0.847)
	여	39.5	40.5	
연령	만 15세 이하	16.3	18.1	13.337** (0.001)
	만 16~18세	51.7	66.0	
	만 19세 이상	32.0	15.8	
	연령 평균	17.7	17.0	2.658** (0.008)
재학 상태	중학생 이하	11.6	14.4	60.433*** (0.000)
	고등학생	38.1	65.1	
	대학생 이상	14.3	15.3	
	휴학/중퇴	12.9	2.8	
	기타	23.1	2.3	
지역	서울·광역시	41.5	34.9	1.628 (0.202)
	비광역시	58.5	65.1	
현재 시설 거주기간		1.7	6.2	143.220*** (0.000)

구분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x ² /t(F)
사례 수	(147)	(215)	-
전체	100.0	100.0	-
이전 가정 외 보호 경험 여부	있음	51.7	47.4
	없음	48.3	52.6
이전 가정 외 보호 기관 수	0.6	0.7	1.012 (0.315)
총 가정 외 보호 기간	3.1	8.5	125.437*** (0.000)

2.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대상자 자립준비 경험 비교

가. 자립 프로그램 이용 경험

자립 지원 업무 매뉴얼(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2018)³⁶⁾에 기초하여 조사된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8개 영역 가운데 최소 1개에 참여했다고 응답하여 참여 경험이 있다고 분석된 응답자는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 모두 9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역별 참여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참여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모두 일상생활기술과 자기보호 영역이었으며,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또는 사회적 기술, 그리고 돈 관리 기술이 다음으로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직장생활기술과 지역사회 자원활용 영역의 참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6) 아동보호체계의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의 8대 영역에 기초한 조사로, 청소년보호체계 응답자가 경험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기관별,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표 4-29〉 자립 프로그램 이용 경험 비교

(단위: 명, %)

지표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x2
	유		무		유		무		
참여경험	144	98.0	3	2.0	211	98.1	4	1.9	0.015 (0.903)
일상생활기술	138	93.9	9	6.1	199	92.6	16	7.4	0.236 (0.627)
자기보호	136	92.5	11	7.5	200	93.0	15	7.0	0.034 (0.855)
지역사회 자원 활용	109	74.1	38	25.9	171	79.5	44	20.5	1.445 (0.229)
돈 관리 기술	123	83.7	24	16.3	179	83.3	36	16.7	0.011 (0.916)
사회적 기술	121	82.3	26	17.7	190	88.4	25	11.6	2.648 (0.104)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126	85.7	21	14.3	185	86.0	30	14.0	0.008 (0.929)
직장생활기술	94	63.9	53	36.1	150	69.8	65	30.2	1.347 (0.246)
다시 집 떠나기	119	81.0	28	19.0	173	80.5	42	19.5	0.013 (0.908)

***p < .001, **p < .01, *p < .05.

나.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은 자립이용관 이용 경험, 직업교육 또는 훈련, 용돈 지원, 의료서비스,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포함한 자립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과 디딤씨앗통장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립지원관 이용은 청소년쉼터와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 모두 이용 경험에서 공통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용 경험이 가장 높은 자립서비스는 청소년쉼터 응답자의 경우 의료서비스(89.1%)였으며 다음으로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서비스(81.6%), 용돈 지원(72.8%)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동생활가정은 용돈 지원(95.3%)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의료서비스 93.5%,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서비스 80.9%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표 4-30〉 자립서비스 이용 경험 비교

(단위: 명, %)

지표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t(F)/x2
	유		무		유		무		
자립지원관 이용	44	29.9	103	70.1	86	40.0	129	60.0	3.845 (0.050)
직업교육 또는 훈련	106	72.1	41	27.9	142	66.0	73	34.0	1.487 (0.223)
자립생활 멘토와의 멘토링	66	44.9	81	55.1	116	54.0	99	46.0	2.864 (0.091)
용돈 지원	107	72.8	40	27.2	205	95.3	10	4.7	37.326*** (0.000)
장학금	55	37.4	92	62.6	163	75.8	52	24.2	53.738*** (0.000)
자립지원관 선생님의 사례관리	97	66.0	50	34.0	116	54.0	99	46.0	5.220* (0.022)
의료서비스	131	89.1	16	10.9	201	93.5	14	6.5	2.196 (0.138)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120	81.6	27	18.4	174	80.9	41	19.1	0.028 (0.867)

***p < .001, **p < .01, *p < .05.

청소년쉼터와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의 자립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의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립지원관 이용에서 청소년보호체계 중장기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이 29.9%로 40%인 공동생활가정 아동에 비해 경제선 수준에서 낮게 나타났다. 용돈 지원과 장학금 이용 또한 각각 72.8%와 37.4%로 95.3%와 75.8%를 나타낸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에 비해 그 경험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자립지원관 선생님의 사례관리 경험은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이 66%로 54%인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보다 높았는데, 이는 공동생활가정이 자립지원전담요원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아동보호체계 자체의 문제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디딤씨앗통장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중장기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이 19.7%로 81.9%인 공동생활가정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낮았고, 아동보호체계에서도 이용률이 낮은 가정위탁의 49.1%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표 4-31〉 디딤씨앗통장 이용 경험 비교(공동생활가정)

(단위: 명, %)

지표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t(F)/x2
	유		무		유		무		
참여경험	29	19.7	118	80.3	176	81.9	39	18.1	137.230*** (0.000)

***p < .001, **p < .01, *p < .05.

〈표 4-32〉 디딤씨앗통장 이용 경험 비교(아동보호체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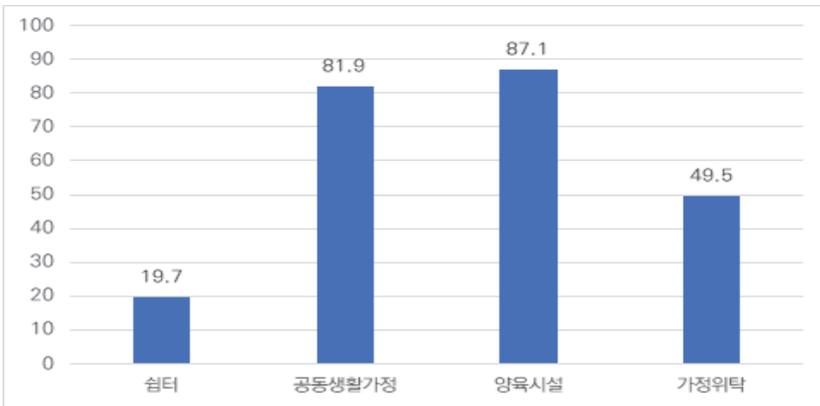
(단위: 명, %)

지표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가정위탁		t(F)/x2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참여경험	29	19.7	118	80.3	176	81.9	39	18.1	288.351*** (0.000)

***p < .001, **p < .01, *p < .05.

[그림 4-1] 디딤씨앗통장 이용 경험 비교(아동보호체계 전체)

(단위: 명, %)



3.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대상자 영역별 자립 수준 비교

가. 사적 자본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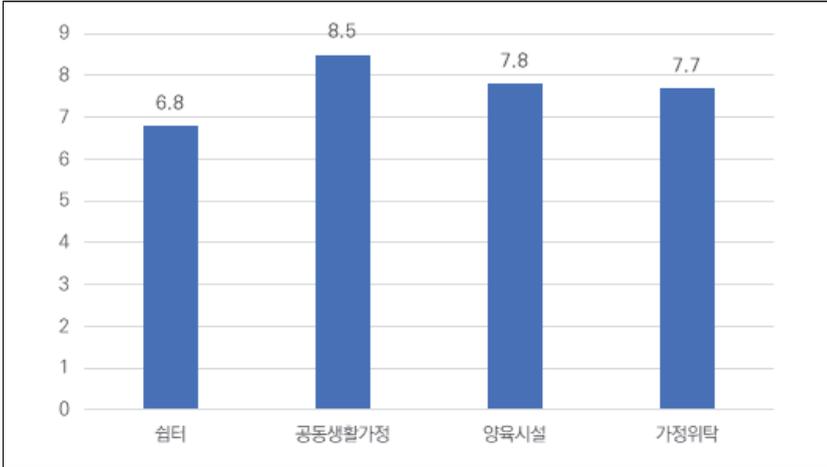
사적 자본 영역의 자립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 주관적 웰빙,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보호체계 중장기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이 6.8점으로 공동생활가정의 8.5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낮았다. 이는 아동보호체계 내 양육시설 7.8점과 가정위탁 7.7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4-33〉 자립 수준 비교 - 사적 자본 영역

지표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t(F)/x2	
	N	평균(SD), %	N	평균(SD), %		
삶의 만족도	147	6.8(2.3)	214	8.5(2.1)	-7.303*** (0.000)	
주관적 웰빙	행복	147	5.7(2.3)	215	7.1(2.1)	-6.251*** (0.000)
	걱정	147	5.2(2.6)	215	3.8(2.8)	4.928*** (0.000)
	우울	147	4.2(2.9)	215	2.5(2.6)	5.805*** (0.000)
	삶(생활) 만족도	147	5.8(2.4)	215	7.0(2.2)	-5.139*** (0.000)
	유데모니아	147	5.7(2.3)	215	6.8(2.4)	-4.262*** (0.000)
회복탄력성	147	91.5(15.6)	215	100.1(16.3)	-4.991*** (0.000)	
자기효능감	147	10.1(2.7)	215	10.9(2.6)	-3.006** (0.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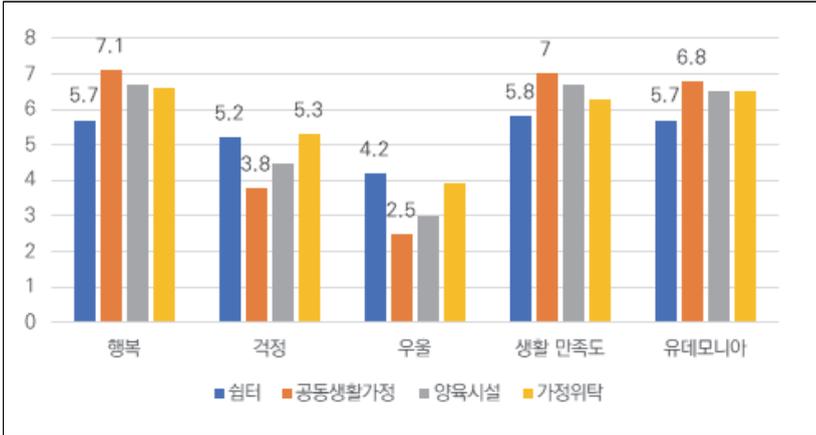
***p < .001, **p < .01, *p < .05.

[그림 4-2] 삶의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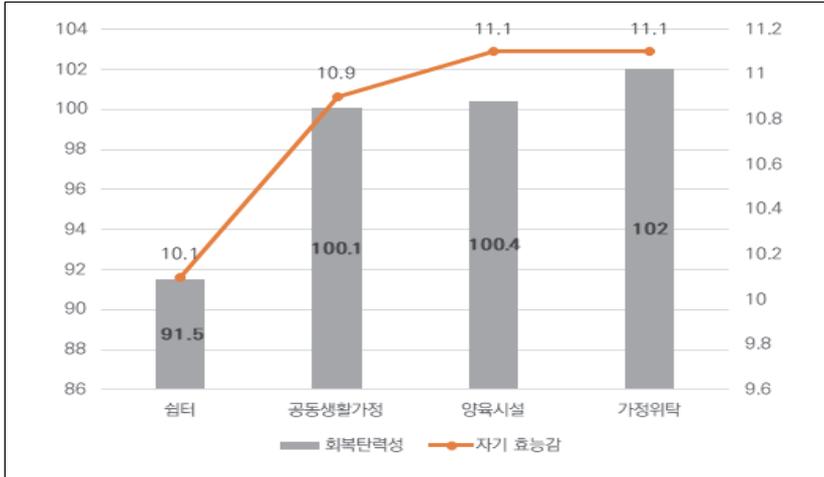
주관적 웰빙 지표 중 긍정적 정서 경험인 행복도, 삶(생활)에 대한 만족도, 유데모니아, 부정적 정서 경험인 걱정과 우울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 정서 경험인 행복도, 생활만족도, 유데모니아로 구성되는 3개의 긍정 경험에서 모두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이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보다 점수가 낮았고 부정적 정서 경험인 걱정과 우울 항목에서는 역으로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이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5개의 모든 항목에서 그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했다. 더 나아가 중장기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지표는 아동보호체계 내 양육시설, 가정위탁과 비교해도 그 수준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3] 주관적 웰빙의 영역별 비교



마지막으로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은 아동·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적 능력이다. 이들 지표는 특히 아동의 성장환경에서 다양한 가정적 위기상황을 경험하는 위기아동·청소년 및 원가정에서 부정적 경험을 하고 분리 또는 탈출하여 가정 외 보호를 경험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환경에 직면한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과 관련한 핵심지표로 활용되어 왔다(이상정 외, 2019a). 그러나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 지표에서도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은 공동생활가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자기효감 점수는 각각 91.5점, 10.1점으로 공동생활가정의 100.1점과 10.9점보다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점수는 아동보호체계의 양육시설과 가정위탁 보호 아동·청소년보다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4-41).

[그림 4-4]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 비교



나. 인적 자본 영역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인적 자본 영역의 자립 수준은 재학 상태, 주관적 학업성적, 자격증 준비 경험, 희망 직종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재학 상태를 비교해 보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청소년쉼터가 63.9%로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청소년 94.9%보다 약 30%p 낮게 나타난 반면, 휴학 또는 중퇴는 12.9%로 공동생활가정(2.8%)보다 약 4.6배 높았다.

주관적 학업성적은 0-10점 만점 기준의 11점 척도(0: 매우 못함, 5: 보통, 10: 매우 잘함)로 측정되었는데 공동생활가정이 4.8점으로 청소년쉼터 4.6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 관련 자격증 준비 경험 여부는 청소년쉼터 22.4%, 공동생활가정 21.9%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대상의 향후 진로와 관련된 응답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희망 진로에 대해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은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이 48.6%로 가장 높았고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의 경우 2명 중 하나 이상은 2~4년제 상급학교 취학(57.6%)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의 경우 향후 진로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19.4%로 12.7%인 공동생활가정보다 약 6%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4-34〉 자립 수준 비교 - 인적 자본 영역

지표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t(F)/x2
		N	평균(SD), %	N	평균(SD), %	
재학 생태	재학중	94	63.9	204	94.9	58.209*** (0.000)
	휴학·중퇴	19	12.9	6	2.8	
	기타	34	23.1	5	2.3	
주관적 학업 성적		94	4.6(2.6)	203	4.8(2.4)	-0.894 (0.372)
자격증 준비 경험	유	33	22.4	47	21.9	0.018 (0.895)
	무	114	77.6	168	78.1	
진로	취업	35	48.6	49	29.7	13.205** (0.001)
	2-4년제 대학	23	31.9	95	57.6	
	모름	14	19.4	21	12.7	

***p < .001, **p < .01, *p < .05.

다. 사회적 자본 영역

사회적 자본 영역의 자립 수준은 자립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하는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네트워크를 포함한다(Caspi, Wright, Moffitt & Silva, 1998).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 관련 자립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원가족과의 교류, 사회적 기술, 사회적 관계망을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간 비교·분석하였다.

원가족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

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청소년보호체계의 증장기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이 85.7%,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이 87.1%로 공동생활가정이 약간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사회적 지지 총점 평균은 공동생활가정이 19점, 청소년쉼터 17.5점으로, 공동생활가정과 청소년쉼터 간에 1.5점 차이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쉼터는 아동보호체계의 양육시설 18.8점, 가정위탁 18점과 비교해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관계망 수준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에 속한 사람의 수와 관계를 통해 분석되었다. 사회적 관계망은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수, 응급 시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사람의 수, 믿음과 용기를 주는 사람의 수로 모든 지표에서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이 공동생활가정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응급 시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공동생활가정보다 평균 2.2명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5〉 자립 수준 비교 - 사회적 자본 영역 1

지표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t(F)/x2
		N	평균(SD), %	N	평균(SD), %	
원가족 교류	유	114	85.7	162	87.1	0.127 (0.721)
	무	19	14.3	24	12.9	
사회적 지지 총점		147	17.5(3.6)	215	19.0(2.6)	-4.224*** (0.000)
사회적 관계망 (수)	조언자	147	6.9(9.3)	214	8.8(16.5)	-1.268 (0.206)
	도움 요청	147	6.2(8.4)	214	7.7(11.9)	-1.395 (0.164)
	응급 시 금전 도움	147	3.2(6.7)	215	5.4(10.3)	-2.449* (0.015)
	믿음, 용기	147	7.3(12.4)	213	8.3(14.8)	-0.668 (0.505)

***p < .001, **p < .01, *p < .05.

마지막으로 증장기 청소년쉼터와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주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가정 외 보호시설 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체계 모두 조연자의 1, 2순위는 시설 선생님이었으며, 3순위는 각각 시설 친구와 학교나 동네 친구로 나타났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믿음과 용기를 주는 사람 1순위도 두 체계 아동·청소년 모두 시설 선생님이로 응답하였다. 한편, 응급 시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은 1, 2, 3순위 모두 학교나 동네 친구를 응답한 반면,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은 시설 선생님, 시설 친구, 학교나 동네 친구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36〉 자립 수준 비교 - 사회적 자본 영역 2

(단위: 명, %)

지표	순위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관계	N	%	관계	N	%	
사회적 관계망	조연자	1순위	시설 선생님	66	50.0	시설 선생님	124	59.0
		2순위	시설 선생님	31	25.6	시설 선생님	39	19.5
		3순위	시설 친구	24	22.6	학교나 동네 친구	34	17.0
	도움 요청	1순위	시설 선생님	58	45.7	시설 선생님	138	64.8
		2순위	시설 선생님	26	22.6	학교 선생님	38	18.6
		3순위	시설 선생님	26	26.8	학교나 동네 친구	62	35.4
	응급 시 금전 도움	1순위	학교나 동네 친구	23	23.0	시설 선생님	104	55.6
		2순위	학교나 동네 친구	15	19.0	시설 친구	27	16.8
		3순위	학교나 동네 친구	15	27.8	학교나 동네 친구	46	39.7
	믿음, 용기	1순위	시설 선생님	50	39.1	시설 선생님	116	57.1
		2순위	학교나 동네 친구	25	22.7	시설 선생님	44	23.2
		3순위	시설 선생님	24	25.3	학교나 동네 친구	56	33.5

제3절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서비스 욕구 비교

1. 청소년보호체계 아동·청소년의 자립서비스 욕구

청소년보호체계의 중장기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면 <표 4-37>와 같다. 순위에 상관없이 보호종료 후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는 경제적 지원이 8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주거 지원(78.2%)이 높았으며, 진로/취업/직업 관련 지원이 38.8%, 건강지원이 35.4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응답자의 8.8%가 사회적 관계 지원이 필요하고, 6.8%가 문화여가 등의 활동 지원과 자립서비스에 대한 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체계 내 중장기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은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경제와 주거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인구사회학적 혹은 가정 외 경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필요한 자립서비스 1순위에 대해 연령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는데(〈표 4-38〉), 15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은 경제적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66.7%로 가장 높은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응답 비율이 높아져 만 19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은 경제적 지원(38.3%)보다 주거 지원(40.4%)이 1순위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2.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서비스 욕구 비교

아동·청소년보호체계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필요 자립서비스를 살펴보면 <표 4-39>과 같다. 보호종료 후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하고 생각하는 서비스 1, 2, 3순위 응답에 대해 순위에 상관없이 가장 빈도가 높은 응답을 분석하였다. 청소년쉼터와 공동생활가정에서 모두 경제적 지원이 각각 83%와 93%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주거 지원으로 78.2%와 80.9%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필요 서비스는 진로/취업/직업 지원으로 각각 38.8%, 45.6%였다. 다음은 두 체계 모두 건강 지원(35.4%, 27.4%), 학업 지원(22.4%, 22.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4-39> 필요 자립서비스 종합 비교

(단위: 명, %)

지표	청소년쉼터		공동생활가정		t(F)/x ²
경제적 지원	122	83.0	200	93.0	22.578 (0.068)
주거 지원	115	78.2	174	80.9	
건강 지원	52	35.4	59	27.4	
학업 지원	33	22.4	48	22.3	
진로/취업/직업 지원	57	38.8	98	45.6	
상담 지원	8	5.4	4	1.9	
법률 지원	3	2.0	4	1.9	
사회적 관계 지원	13	8.8	12	5.6	
가족 관계 맺기 지원	9	6.1	11	5.1	
문화여가 활동 지원	10	6.8	11	5.1	
자립생활 체험	5	3.4	6	2.8	
선배 멘토링	4	2.7	2	0.9	
자립서비스 정보	10	6.8	12	5.6	
기타	0	0.0	2	0.9	

***p < .001, **p < .01, *p < .05.

청소년보호체계의 중장기 청소년쉼터 보호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체계의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청소년의 필요 자립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구체적으로 순위별로 살펴보면 <표 4-40>과 같다.

우선,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아동·청소년 모두 1순위로 필요한 자립서비스로 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각각 49.7%, 49.3%였다. 다음으로 주거 지원이 높았는데 34.7%와 35.8%로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필요 서비스 1순위에 대해 세 번째로 높은 응답은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의 경우 3.4%인 건강지원이었고,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의 경우 7.9%인 진로/취업/직업 관련 지원이었다.

필요 자립서비스 2순위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서비스는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아동·청소년 모두 주거 지원으로,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이 36.7%,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이 39.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은 두 체계 모두경제적 지원으로 각각 18.4%, 30.7%를 나타냈으며,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은두 체계 모두 진로/취업/직업 관련 지원으로 각각 15%와 10.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필요 자립서비스 3순위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서비스는 중장기 청소년쉼터 보호 아동·청소년은 건강 지원, 22.4%로 나타났고,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은 진로/취업/직업 관련 지원, 27.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서비스는 중장기 청소년쉼터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 진로/취업/직업 관련 지원이 21.8%, 학업 지원이 12.2%로 분석되었다.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은 건강 지원 18.6%, 학업 지원 14.4%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체계의 중장기 청소년쉼터 보호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체계의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청소년의 필요 자립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전반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 및 청소년보호체계 모두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40〉 필요 자립서비스

(단위: 명, %)

지표	1 순위		2 순위		3 순위	
	청소년집터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집터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집터	공동생활가정
경제적 지원	73	49.3	27	18.4	22	15.0
주거 지원	51	34.7	54	36.7	10	6.8
건강 지원	5	3.4	14	9.5	33	22.4
학업 지원	2	1.4	13	8.8	18	12.2
진로/취업/직업 지원	3	2.0	22	15.0	32	21.8
상담 지원	4	2.7	0	0.0	4	2.7
법률 지원	1	0.7	1	0.7	1	0.7
사회적 관계 맺기 지원	3	2.0	4	2.7	6	4.1
가족 관계 맺기 지원	2	1.4	3	2.0	4	2.7
문화여가 활동 지원	0	0.0	5	3.4	5	3.4
자립생활 체험	1	0.7	1	0.7	2	1.4
선배 멘토링	0	0.0	0	0.0	1	0.5
자립서비스 정보	2	1.4	3	2.0	3	1.4
기타	0	0.0	0	0.0	2	0.9

제4절 자립준비 및 자립서비스 욕구에 관한 FGI 결과

1. 가정 외 보호 경험

가. 청소년쉼터 입소 이유와 경로

FGI에 참여한 중장기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아동·청소년은 부모와의 갈등, 가정폭력, 부모의 양육 거부 등을 이유로 쉼터에 입소하여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5년 정도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입소 경로로는 다른 청소년보호체계 시설을 거쳤거나 지인의 소개나 경찰 및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입소하게 된 사례가 있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독립된 주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청소년 자립지원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중장기쉼터 종사자,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들 또한 학대, 가정 해체, 빈곤 등을 청소년의 쉼터 입소 사유로 꼽았고, 비슷한 사례를 언급했다.

부모 형제들의 폭력과 같은 아동 학대, 이혼한 부모들의 양육 거부 등의 사유로 경찰이나 가족상담센터가 개입했던 경우, 해당 청소년을 아동보호체계로 연계했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동양육시설 퇴소 아동이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는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의 통합 또는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호 체계	청소년 인터뷰 결과
중장기쉼터 (보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1학년쯤 돼서, 부모님과 좀 갈등이 심해졌는데 ... 부모님이랑 싸우다가 부모님이 집을 나가라서, 그래서 뭐 쫓겨나게 됐는데. ... 밖에서 뭐 친구 집에서 지내고 뭐 교회에서 지내고 그러다가 그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이제 쉼터라는 곳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 ... 그다음에 쉼

보호 체계	청소년 인터뷰 결과
	<p>터에 온 지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A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냥 뭐, 저도 똑같이 집안 사정 때문에. 부모님이란 안 맞아서 그냥, 저도 그냥 혼자 나왔다가. 노숙하다가 그냥 어떡하다가 쉼터도 알게 돼서 들어왔죠. (A3) • 2018년도 11월 6일인가 그때 입소했어요. 지금까지 1년 6개월. 아마. 내년 에 나갈 거 같아요. ... 가족상담센터라고.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상담을 받았는데 거기 계신 소장님이 이런 데가 있다, 그냥 알고만 있었지 가지는 않았는데. 너무 폭행이 심해져서 경찰까지 오고 이래가지고. 아마 경찰 통해서 온 거 같은데, 저는. 네. 경찰 통해서. 경찰이 인솔해가지고 그렇게 간 거 같아요. 직접 신청해서 간 게 아니라. (B1) • 가정폭력 때문에. (B2) • 두 분이 다 안 키우겠다고 하셔가지고. ... 지금 한 3개월째 중장기 있는 것 같아요. ... 삼촌이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 연계 받아서 일시로 가게 됐어요. 근데 학교는 서울에서 다니고 있어서 그 서울에 있는 단기 쉼터를 그 일시 선생님께서 알아봐주셔서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를, 단기에 있다가. (B3)
<p>청소년 자립지원관 (보호 종료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냥 여자쉼터라고 의정부에 있는 건데. ... 제가 미성년자다 보니까 엄마 허락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나왔어요. ... 원룸텔에서 한 1년 정도 지냈어요. 성인되자마자 나왔는데 친구가 여기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C1) • 시설에 있었던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9살부터 19살까지 시설에 있었어요. 원래는 더 있을 수 있었는데 뭐 그 일반 가정은 몇 년 이상 있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립지원관 도움을 받고 있죠. 아, 여기서 지내는 게 아니고 이제 가끔씩 들러서 지원받고. (C2)
<p>중장기쉼터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부모가 경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해체 가정이라던가, 학대나 방임이 좀 미비하게 있지만 신고까진 안 들어간 아이들 ... 예전 보육원 같은 경우는 집단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또 다른 학대를 받아서 오는 아이들. (D1) • 우리가 피해자 쉼터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제 케이스를 따져보면 피해 아동들이 굉장히 많고요. (D2) • 학대, 성폭력, 친족 성폭력이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 탈출이 맞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 그래서 그런 쪽이랑 많이 저희가 협력을 하고, 보통, 아보전도 포함이 되고요. (D2)
<p>청소년 자립지원관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 따지고 보면 학대가 거의 90%인 거 같아요. 그 학대가 직접 폭력이나, 정서적이거나 이런 유형의 차이는 있는데 ... 아니면 진짜 집에 돈이 없어서, 경제적 부양이나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애가 그냥 나와야 되는 상황. (E1)

나. 쉼터에서의 생활과 만족도

중장기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아동·청소년은 공통적으로 쉼터에 대해 의식주 해결 측면에서 만족하고 있었고 선생님들과의 관계와 정서적 지지, 자격증 준비 관련 지원 등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위계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고 집처럼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점은 부정적인 면으로 언급되었고 아동보호체계의 공동생활가정 같은 곳을 미리 알았다면 청소년쉼터보다는 공동생활가정을 선택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청소년쉼터가 보호하기 쉬운 청소년을 가려 받는다거나 쉼터 생활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쉼터 선생님이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해당 청소년이 쉼터를 떠나게 된다는 등의 문제도 언급되었다.

보호 체계	청소년 인터뷰 결과
종장기쉼터 (보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좀 불량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애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와 보니까 그런 류의 사람들은 보통 쉼터를 견디지 못하고 금방 나가고. 그래도 좀 착하고 그런, 애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 자격증 같은 걸 준비할 때 웬만하면 지원이 괜찮고, 시험비도 지원해주고. 종장기는 좀 사람이 적어서 괜찮은데. … 그래도 만약에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그룹홈을 알고 있었다면 그룹홈을 갔겠죠. (A1) •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은 의식주 해결이 된다. (A2) • 그니까 소장님 권한이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가려서 받는 거죠. … 잘 키워서 보내자란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어떻게든 문제없이 빠기자. … 가끔씩 프로그램 해요,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고 뭐 종이접기 같은 거하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실적 같은 거 쌓아야 되니까. … 집처럼 느껴지지는 않죠. 불편하죠 솔직히 말하면. 편하진 않죠. (B1) • 여기는 담당 쌤이라는 게 없고 그냥 다 이렇게 봐주시는데 접촉하는 시간도 많고 물 흐르듯이 대화하기도 하면서 이제 거기 안에서 힘든 거 있냐, 고민 뭐 이런 거를 조금 케어해주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많이 좋죠, 정신적으로. (B2)
청소년 자립지원관 (보호 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들이 좋은 것 같은. 밥은 그냥 다 맛있었어요. 물품 지원 같은 건 부족함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C2) • … 쉼터 들어오고 나서 선생님들이 좀 앞길 생각하고 걱정해주고 잘못된 거 다 잡아주고 이러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 쉼터 오고 나서 언니들이 막 잘해주고 언니들 과정도 듣고 그래서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학교랑 거기가 가깝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잘해주시고. 거기 언니들도 잘해주세요. 그래서 아직도 연락하는 언니들도 있어요. (C4)

2. 자립에 대한 정의

가. 자립의 정의와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이 꿈꾸는 자립의 모습

중장기쉼터 청소년들은 대체로 안정된 직장과 주거 공간을 토대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을 자립이라고 정의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들은 현재 보호가 종료되고 자립한 상태를 토대로 본인의 자립에 대해 평가하였는데, 어느 정도는 잘 해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던 반면 꿈꾸던 자립에 비해 현실에서 혼자 지내는 게 외롭고 우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호 체계	청소년 인터뷰 결과
중장기쉼터 (보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알바는 직업, 뭐 직장이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자립을 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A2) • 아무래도 의식주가 가장 안정돼있는 게 좋지 않을까. ... (의식주 중에서는) 저희는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일단 주거가 가장. (B2) • 뭔가 허덕여서 한 달 벌고, 한 달 사는 그런 삶보다는 혹시라도 제가 아프거나 아니면 뭐 일을 못 하게 되거나 미래에 봤을 때 뭐 어떤 사정으로 못 하게 된다면 좀, 그래도 조금은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삶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의식주가 되는. ... (의식주 중에서는) 주거가 제일. ... 공과금 어떻게 내는지부터 해서 그냥 그런 기초적인 지식도 갖고 있어야지 완전한 자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B3) • 막연하게 의식주라기보다는 그냥 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계획이 있으면 준비를 해서 집이나, 음식이나, 옷을 다 준비할 수 있으니까. (B4)
청소년 자립지원관 (보호 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정도는 잘하고 있다. (C1) • 저는 일단 부정적인 것보다는 지금 너무 긍정적으로 자립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요. (C2) • 막 엄청 꾸미고, 예쁘게 꾸미고 막 아침에 채광 들어오는 거 느끼면서 기상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꿈꿨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한방에 다 깨지더라고요. ... 밥 차리기도 귀찮아서 기껏 해봐야 계란프라이하고 뭐 이런 거 요리 다 해도 먹는 것도 되게 막 우울해요. 혼자 먹으니까. 이게 좀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맛도 없고 ... (C3)

나. 퇴소 이후의 삶 설계

증장기쉼터 아동·청소년들은 퇴소 이후의 삶에 대해 대체로 주거 문제를 중심으로 언급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들어가거나 LH의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LH 지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들었다며 막막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의 경우,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거나 사회복지무원,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퇴소 이후에 다양한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퇴소 전에 쉼터에서 미래를 대비해 저축을 하도록 하는 등 자립준비를 시켜주었다는 긍정적 경험을 밝히기도 했다.

보호 체계	청소년 인터뷰 결과
증장기쉼터 (보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그 경우는 되게 막막하죠. 솔직히 쉼터에 5년 있으면서 정말 쉼터에서 뭐 집을 구해줬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그렇게 나간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5명이 있다면 그중에 1명? 2명? ...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서.(A1) • ... 여기서 계속 4년에서 3년이 지났는데 계속 생활할 수 없다면 거기(자립지원관)에 갈 것 같고. 아니면 만약에 그때 판단해서 제가 좀 모아놓은 돈이 있거나 그렇다면 쉼터에서 2년 이상, 그리고 만 18세 이후 퇴소 시 그거 그게 있어요. 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 혜택을 받아서 나가는 것도, 퇴소 후 2년은 일단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봤어요. (B3) • 저는 쉼터에서 4년 다 채우고, 저는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LH 들어갈 수 있어서 자립지원관으로 안 가고 바로 LH 들어가서 대학생생활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전문대 다니다가 편입해서 4년제를 하고, 바로 이제 취업해서 돈 모은 다음에 LH 끝나는 저는 이제 제 돈 모은 걸로 원룸 같은 데서 이제 살려고 했어요. (B4)
청소년 자립지원관 (보호 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올해 자립했어요. 작년 12월 30일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아, 그런데 반년은 고시원 살았고 7월 들어서부터 이제 그 LH 청년. 아, 청소년쉼터 유형으로 돼가지고. ...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월급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알바를 하면서 알바까지, 그 공익하고 알바하고 하면서 지금 돈 계속 하고 있죠. (C2) • 그냥 당일 알바로 일주일에 2, 3번씩 일하면서 그러고 벌고 있습니다. (C3) • 준비하는 전부터 너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준비는 해놔야 된다. 그리고 너가 앞으로 막 어떻게 험한 꼴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막 좀 강하게 키우셨어요. ... 일하면서 월급 탈 때마다 그래도 50% 정도 적금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C4)

다. 희망 직업(직장)과 그 이유

중장기실패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구체적인 직업이나 지향하는 분야를 특정해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던 반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들의 경우, 창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거나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어 그에 대한 만족감을 표하는 사례도 있었다.

보호 체계	청소년 인터뷰 결과
중장기실패 (보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니까 제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프로그래밍을 했거든요. 프로그래밍. 게임 학원 끝난 지 꽤 됐고, 최근에 끝났고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안 되더라구요, 취업이. (B1) • 저는 이제 가게를 하나 차리는 게 제 목표여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B2) • 퍼스널컬러리스트라고 저는 그거를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준비를 해왔던 거. 미용도 지금 배웠고, 거의 막바지고. (B4)
청소년 자립지원관 (보호 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조금 마음에 들어요. (C1) • 꿈이 빵이랑 같이 해가지고 가게 차리는 거라서. (C4)

라. 종사자, 자립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청소년의 자립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자립의 의미는 다소 복합적이었다. 20대 초중반에 자립하는 청소년의 특성상 지원과 관리의 연장선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과 함께 한 청소년의 자립을 정량적인 점수만으로 평가하는 현재 구조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척도와 관련해서는 자립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량적인 척도로는 자립 수준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이 상충되었다.

보호 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청소년 자립지원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뭔가 직장다운 직장을 잡고, 내 진로에 대해서 좀 더 방향성을 갖게 되는 시기는 빨라야 20대 후반이잖아요. 근데 애네들은 24살, 많아야 26살 때 세상에 나가는데, 그때도 분명히 자립을 위한 준비과정 중일 텐데, 이게 자립인가. 더 이후에 뭔가 연장선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래서 자립지원관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예요. (E1) • 자립의 가장 큰 문제점이 결과를 바로 볼 수 없다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 예산 지원해주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 그(척도) 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E2) • 자립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보면, 자립의지가 있는 청소년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 취업패(취업성공패키지)를 하고 있으면 의지로 볼 건지, ... '저는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 열심히 할 수 있어요'를 볼 건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척도를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전 도구가 현재 없다는 거예요. (E3) • '이 정도 되면 자립이 됐어', 라고 저희가 할 만한 뭔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척도 검사를 했는데 80%면 애는 자립으로 보자, 이런 게 차라리 저희한테 있으면. 그럼 저희도 빨리 퇴소시키고 다른 아이들 받아서 다시 빌드업 시키고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E3) • 저희가 주거가 되고, 자기 스스로 정리가 된 친구들은 적급할 것 하고, 생활할 것 하고. ... 교정, 자기가 스스로 교정을 하고 성형을 하고 할 정도의 자립이 잘 된 친구들을 종결을 하는 거고요. 저희도 관리 안 되는 친구들은 계속 어렵긴 한 것 같아요. (E4)

3. 자립준비 및 서비스 경험

가. 자립 계획, 자립준비 과정

증장기쉘터 아동·청소년에서는 쉘터에서의 상담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고, 현실적으로 쉘터 선생님이 직접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들은 대체로 시설장이나 자립요원과의 상담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조언을 들었던 경험을 주로 언급하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 쉘터에서 상담받을 당시에는 몰랐으나 지나고 보니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보호 체계	청소년 인터뷰 결과
중장기쉼터 (보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데 사실 여기서도 자립 그런 걸로 상담 같은 건 하는데, 사실 진짜 막 큰 도움은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쉼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거는 기껏해야 자격증이라든지 뭐 그런 게 전부니까. (A1) • 저는 뭐, 온 지가 또 얼마 안 돼서, 뭐 상담 같은 거는 많이 안 받아봤는데. ... 그래도 아마, 상담은, 하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진짜 딱히 해줄 것도 없고.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A2) • (선생님과 상담) 수도 없이 했어요. 이제 지겨운데. 아, 계속 이거 끝나면 나가서 어떻게 살 거냐? 그 전에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거 다, 다, 계속 ... 선생님들도 (지원)해주려 해도 선생님께서 해줄 수 없으니까. 선생님 마음도 이해하기는 하는데. (A3) • 딱히 뭐 없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도. 몰라서 못 알려주시는 거 같은데. 알면 가르쳐 주실 거 같은데. 돈 모으라는 말은 하셨어요. (B1) • ... 솔직히 혼자서 거의 알아보는 했는데, 이제 쉼터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죠. ... 쉼터 지원도 있고, 95%는 아빠. ... 미용을 다니면 학원 수강비도 있고, 처음에 재료 사는 것도 있지만 다니면서 계속 필요한 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쉼터에서 이렇게 다 준비를 도와주세요. (B4)
청소년 자립지원관 (보호 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이랑)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직 얘기는 잘 안 됐어요. 그냥 제가 힘을 었던 거나 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거 얘기하면서. (C1) • 여기 자립지원관 시설장님께서 저 12년째 지금 계시거든요. 진짜 2주에 한 번씩 연락 오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한테. ... 막 그렇게 계속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감사하죠. 그때는 부정적인 상태였으니까 생각 안 했겠지만 지금 와서는 이제 감사하다고 생각하죠. (C2)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초등학교 때부터 연계가 돼서 상담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정보를 받고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연락하는 분은 없었고. (C3) • (선생님들이) 오래 된 연륜으로 이제 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결국 그렇게 안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정서적이나 실질적인 계획이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C3) • (선생님이랑) 그냥 매일 같이 연락해요. 주 내용은 일 때문에도 있고, 막 스트레스, 막 집안일 막 이런 거. (C4)

한편,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중장기쉼터 종사자들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적절한 시기에 추천 등 지원을 한다고 답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들은 청소년들의 욕구나 현황을 토대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거나 퇴소한 쉼터를 통해 지원 대상 청소년을 선별한다고 답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립계획서나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다는 증빙을 통해 자립의지를 밝

한 청소년에 한해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는 사례도 있었다.

보호 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증장기쉼터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시를 이제 해놓으면, 선생님 저도 이제 신청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다 해주지는 않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 아이들한테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니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할지, 가기 전에 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논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적절한 시기를 봐서 추천을 올려주니까. 애들도 그럼 쉼터 적용하는 데 좀 더 긍정적이기도 하고. (D1)
청소년 자립지원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맞춤형이라는 걸로 좀 포커스를 맞췄어요. ...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으로 애들 만나는 거는 거의 월 1회씩을 기준으로 ... 내부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거의 매일 보다 보니까 좀 더 자세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좀 더 다른 필요한 서비스들을 더 즉각적으로 많이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E1) • 우리 지원을 요구하고 원하면 퇴소한 쉼터에 연락을 하고요. 퇴소한 쉼터에서 그 친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과 현재 상태를 파악해서. 대상자의 요구와 현재 파악, 현재 상태를 적어주신 다음에 추천서를 저희 기관에 보냅니다. (E3) • 개인의 정보와 서비스 동의서 이런 것들을 다 내고, 자립의지가 있는 계획서를 내는데. 사례심의위원들이 봐주시고 이 아이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은 ... 애초부터 선정이 돼서 이 아이가 잘 해나가는 애들을 토닥토닥해서 하는 애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기부여부터 시작해야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 그럼 그 친구들도 누군가는 자립을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기관마다의 차이도 있고, 지원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직장 수입이 있어야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디든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단기 알바래도 점수를 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소득분을 서류에다가 내면 선정이 돼요. (E3)

나. 자립 지원 서비스나 자립준비 프로그램 참여 경험

증장기쉼터 아동·청소년은 참석자별로 자립지원 서비스의 인지도나 이용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정보 자체를 인터뷰를 통해 처음 접한 사례도 있었던 반면, 쉼터 퇴소 전에 주거 관련 준비를 마치고 그에 맞춰서 자립지원관과 함께 자립을 준비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으나 기준에 맞지 않거나 현재는 교류하지 않고 있는 부모님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어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들 간에도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경제적 지

원 서비스나 주거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신청했다는 사례가 있었던 반면, 인터뷰를 통해 서비스를 처음 접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자립지원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었다는 언급도 있었다. 주거 지원의 경우, LH 주거 지원을 받으려면 고시원 생활로 취약 주거 경험 조건을 채워야 하는 것이 단점이지만 시설이 좋아 LH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호 체계	청소년 인터뷰 결과
중장기쉼터 (보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수당) 혜택이 가요? 저희는 안 돼요? ... (그룹홈 지원받는 거) 굉장히 부럽네요. ... (디딤씨앗통장 들어본 적) 아니요. ... (자립정착금) 듣기는 들었는데 딱히, 쉼터는 해당이. ... (자립지원, 마이홈센터) 몰라요. (A1) • 저는 교육, 괜찮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사실은 뭐, 말 그대로 실용성이 없으니까. 아니, 뭐 여기서 백날 배워봐야 어차피 선택권은 쉼터 나가면 군대 아니면 집. ... 그, 뭐 경제교육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와 닿지가 않죠. (A1) • (LH 아파트 찾아보는 것) 몇 번이나 해봤는데요. 뭐 지금 현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뭐. 먼저 제가 취업이 또 잘 되고 나서, 이거 뭐, 뭐 순서가 있으니까 그거부터 우선 하고 나서, 그거는 나중에 찾으면 되니까. (A3) • 내가 이거 받고 싶어도 뭐만 하면 부모님, 뭐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 이리니까 뭐, 어떻게 받아요. 계속. (A3) • 주거는 이제는 쉼터 퇴소하기 전에 다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자립지원관이랑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는 거죠. (B2) •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연계를 해주셔서 쉼터한테 좀 배운 적이 있어서.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B2) • 개인 여행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계획서를 짜서 선생님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계획을 짜놓고 일종의 자립해서 경제적인 그런 개념이라 그냥 계획 세우기 같은 걸 배우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좋았고. 자기주도학습 이런 거를 되게 권장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막 문제집 같은 것도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는 하시거든요. (B3) • (CDA, 디딤씨앗통장)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리고 애초에 저는, 그리고 단기에 있었을 때는 단기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개개인을 다 챙겨주지 않으셔서. (B3) • 프로그램이 되게, 너무 많아서 ... 취미 같은 거 기르는 그런 것도 있었고. ... 단체 집단상담 같은 거. ... 노동법? 청소년노동법, 인권교육, 아니면 성교육. 그리고 뭐, 그런 좀 사회적 그런 프로그램? 외부 강사분들 오셔서 하는, 그렇게 자립에는 도움이 됐던 거예요. (B4)
청소년 자립지원관 (보호 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홈에서의 지원) 없었습니다. (C2) • (쉼터) 쉼터에서는 이제 좀 자립 그런 거,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안 했죠. (C2) • (디딤씨앗통장) 처음 들어보는. (C2) • (LH 지원) 서류 받아가지고 쓴 다음에 제출하면 그게 통지가 와요. 합격되면

보호 체계	청소년 인터뷰 결과
	<p>됐다, 안 되면 안 됐다. 이게 되면 이제 집 구해서 그 집도 또 심사를 보고, 그 집도 이제 통과가 되면 계약서에 쓸 수 있는 거예요. (C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제 좀 알려주긴 하는데 저도 다 알고 있는 정보고. 선생님들 노력하시는데 저한테, 일단 저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은 못 되고 있어요. (C3) • 생활적인 면에서는 이제 코로나 생필품 지원이라고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10만 원 지원해주는 지원이 또 따로 있어요. (C3) • ... 이제 북카페 같은 데서 대화하고 하는데, 뭐 이런 정서적 지원이나 한 일당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에서 40 정도 받는 것 같아요. (C3) • 가구 지원 같은 게 또 있어요. ... 어제도 제가 기타를 받아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C3) • (LH 아파트) ... 이게 또 고시원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그것 때문에 싫어해서 가기 싫다. 그런데 저 주변에 2명 정도 갔는데, 집 가봤어요.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와, 괜찮다. 딱 생각이 딱 든 거죠. 한번 이겨보자. 3개월, 총 6개월인데 길어봤자 6개월인데 버티보자, 하면서 지금 생활하고 신청은 벌써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C4)

4. 청소년의 자립 기반

가. 학교 생활과 진로 계획, 자격증 교육 경험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은 대체로 관심 있는 분야나 진학,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고자 공부하고 있었고 대학 진학은 개인의 의사나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 과정에서 프로그래밍, 창업 등 뚜렷한 목표를 세운 사례도 있고 원하는 진로를 찾아가고 있는 사례도 있었지만,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하여 서류 전형까지는 합격하고 있으나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성격 탓에 면접에서 계속 탈락하고 있어 스피치 학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청소년의 경험은 취업 지원서 자격증뿐 아니라 면접 준비까지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내용은 면밀하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보호 체계	청소년 인터뷰 결과
중장기쉼터 (보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에서 통학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바로 자퇴하고 고1 때 그냥 고졸 검정고시 바로 합격했거든요. ... 일단 운전면허 1종 땀고요. 한국사 1급 땀고. 네, 전기기능사 땀고, 킷활 1급 땀고, 그다음에 이번 달에 이제 정보처리기능사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A1) • 대학은 졸업했어요. 정보처리기사라고 있는데. 보안기사도 있어요. 정보보안기사. 근데 그게 죽을 뻔했어요. 따기... (B1) • (취업성공패키지) 아, 저는 그것을 해보려고 이제 찾아가서 좀 많이 알아봤죠. 근데 하지는 않았고 그냥 다시 공부하고 있어서. 나중에 그래도 한 번 이용해보려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A1) • 서류가진 되는데 면접. 말하는 스피치 학원인가. 그런 댐 다녀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5, 6번인가. 여기서 봤어요, 근처에서. 다 떨어졌어요. 서류는 합격했는데. (B1) • 저는 이제 가게를 하나 차리는 게 제 목표여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B2) • 저는 (대학) 안 갈 것 같아요. 원체 책 펴는 걸 싫어해서. (B2) • 추후에 제가 어떻게, 어떤 삶을 원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B3) • 제가 원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따고, 저는 서른 살쯤에는 가게 여는 게 목표. (B4)
청소년 자립지원관 (보호 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 아직은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C1) • 중학교 때 제가 전교에서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막 인정을 많이 받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 서울대에만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C1) •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거든요. ... 하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자격증 나오는 게 내후년 8월인데 이제 내년 10월부터 그 내후년 8월까지 10개월 정도인가요. 10개월 정도 뭐할지 이제 고민해야죠. 제대할 때까지는 돈 모으면서. (C2) • 스무 살 성인이 됐을 때 제가 수능을 망해서 ...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대학교는 스물여덟 살쯤에, 이제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C3) • 저 얼마 전에 그만두고 다른 거 알아보고 있어요. 자격증 알아보고 있어요. 바리스타요.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교육 받고 있어요. (C4)

나. 자립에 있어서 학습능력의 중요도

중장기쉼터 청소년들은 사회적인 분위기나 현실적인 처우를 고려하면 대학을에가는 것이 중요한 요소일 수는 있으나 본인의 지향이 뚜렷하고, 직업 특성상 실무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하면 반드시 대학 진학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다. 현재 내 삶에 가장 큰 영향과 도움을 주는 사람

증장기쉼터 아동·청소년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 쉼터 선생님을 주로 언급했다. 한편으로 선생님의 지원만큼 자신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호 체계	청소년 인터뷰 결과
증장기쉼터 (보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쉼터 선생님들에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죠. 어려서부터 일단 제 얘기를 아무한테나 못 했거든요. 부모님이든 아무한테도 못 해서 여기에서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B2) • 제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도와주는데 그런 게 없으면 안 하잖아요. ... (선생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셨고, 특히 고3 때, 사실 단계에서, 제가 단계에 있다 오니까. 제가 고3이었을 때는 제가 지원을 많이 못 받아서 그 가정 복귀를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근데 그때 가정복귀를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생활지도사 선생님 같은 사람이 이제는, 지금 내 인생이 없다는 그런 게. (B3) • 저는 조금 복잡하게 말하면 계기를 만들어 준 건 선생님, 쉼터 선생님이신데 지금 가장 큰 영감까지는 제 자신이. ... 쉼터에 있으니까 도움을 계속 받았어요. 근데 제가 쉼터 들어와서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동시에 많은 게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방황하고 있어서 딱히 뚜렷한 목표는 없었거든요. 이제 그 선생님께서 열심히 좀 살라고, 그 한마디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계기가 돼서, 선생님께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다,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지금 됐다, 라는 걸 보답으로 드리고 싶다는, 그 의지가 커서. 계기를 만들어주신 거는 선생님이신데, 이제 그 의지가 아무래도 제가 지금 그게 있어서. 제가, 일단 제 자신한테 제일 큰 영향을 주지 않나, 싶어요. (B4)

라. 건강 문제 대응 방법

증장기쉼터 아동·청소년은 현재 건강한 경우도 있었지만, 녹내장 같은 신체적 질병이나 우울증 등 정신적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질병 관련 대응에 대해서는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많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쉼터에서 어느 정도 의료비 지원이 있기는 해도 큰 비용이 필요하게 되면 막막하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특히 앞으로 자립한 후

에 아프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호 체계	청소년 인터뷰 결과
중장기쉼터 (보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 저희 형도 약간 우울증 그런 거 있었는데 상담받고 오는 게 좀 비쌌거든요. 그래서 형은 자기 돈으로 했어요. (A1) • 근데 이게 자잘한 거는 쉼터에서 의료비 지원이 되는데, 진짜 만약에 큰 병이거나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도와준다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 ... 아무래도 그게 의료비가 정해져 있는데, 언제, 누가 아플지 모르는데 누가 다 쓰면 그때 와서 아예 돈이 없을 수 있으니까 정말 최소한으로만 하거든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A1) • (아픈 적) 지금은 없는데. 없어, 그런 적 없어요. 네. (A2) • 건강보험, 건강보험 내고 있어요. 걱정되는 건. 현재는 뭐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아픈 게 걱정되는 거 같아요. 취업이 안 돼도. 단기직은, 그거라도 못 할 정도로 아프면. 병은 없는데, 건강... 피로를 많이 느끼고. (B1) • 눈이 좀 안 좋다는 것? 약간 녹내장이 있어서. (B2) • 정신적인 면에서는 일단 쉼터 내에 선생님들도 상담을 저희가 만약에 청하면 굉장히 잘 해주시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도 만약에 아까 말하기는 했는데, 심리상담 같은 게 필요하다고 느끼면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 기회는 제공돼 있는 편인 것 같아요. (B3) •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저희는 자립했을 때 아프면 전화할 사람이, 뭐 친구들은 전화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아플 때, 아니면 저희가 막, 막 영양실조로 쓰러졌을 때 누가 와서 저희 문을 맨날, 이렇게 확인해주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살아있는지. (B3) • 저희도 다 잘 먹고 건강한데. (B4)
청소년 자립지원관 (보호 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런데 좀 약간 심리적인 방향을 했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었어요. (C2) • 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스물세 살, 12월에 나왔는데 제가 그 강박증이랑 우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그런 신경증 환자 대상으로 주저 지원을 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지원받고 지금 1년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C3)

마. 삶에서 힘들었던 점과 극복 경험

중장기쉼터 아동·청소년은 여러 측면에서 힘들 때, 쉼터나 상담센터 선생님에게 상담을 하거나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첫 번째로 생각나는 관계가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등은 없거나 먼 관계인 경우 등 대체로 관계의 폭이 넓지 않은 점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은 단체로 지내오다 퇴소 후 혼자 지내게 되니 외로운 것이 힘들다는 사례들이 있었던 반면, 오히려 단체 생활만 했기 때문에 혼자라서 좋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극복 경험으로는 친구, 쉼터 선생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경우,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보호 체계	청소년 인터뷰 결과
증장기쉼터 (보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로 1차적으로, 저는 쉼터 선생님들하고. 2차는 잘 생각이 안 나죠. 친구한테 상담받기. (A1) • 저 아는 형한테. (A3) •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모르겠어요. 다시 상담센터에 가야 되나. (B1) • (상담센터 선생님) 그분하고밖에 대화를 안 해요. 1년 동안, 1년 동안 매주 연락을. ...너무,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 친구, 친구가 없어서. 친구를 만들어야. 모르겠습니다. 어, 모르겠어요. 친구가. 저는 잘되고 싶은데 친구는, 아직 그런 친구는 못 만나서. 노는 친구들이 많아서. 거의 인간관계가 없다고 봐야 해요, 보니까. 그건 문젠 거 같은데. (B1)
청소년 자립지원관 (보호 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의 혼자 지내다 보니까 외로움을 엄청나게 타요. 그래서 애들한테 연락을 하면, 남자친구랑 놀고 있다고 하면 서러워가지고. ... 저는 그냥 바로 친구들을 만나서 신나게 놀아요. 외박이 되잖아요. (C1) • 저는 혼자라서 좋았어요. 단체 생활만 계속 했으니까. (C2) • 할 짓 없을 때 하는 게, 연락치를 쭉 봐요. 그리고 그냥 아무나 다 연락을 해요. 그림 좀 낫더라고요. ...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들.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 쪽도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 쉼터에서는 소장님하고 연락 제일 많이 하고 상담복지센터에서도 이제 10년 이상 같이 하신 분이 있어서 그 쪽 팀장님하고도 연락 많이 하고. (C3) • 아, 맨날 단체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나오려고 하니깐 힘들긴 했는데 혼자 살아보니까 또 괜찮아요. 네. 어쩔 때는 외로울 때도 있죠. 애들은 가족들이랑 놀러 가는데 나는 왜 못 놀러가나. 막 이 생각 들고. 생각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게임해요. (C4)

바. 원 가족과의 관계

증장기쉼터 아동·청소년은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을 하지 않거나 관계가 좋지 않은 일부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과는 연락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다. 한편, 원 가족 자체가 없는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들은 어머니 측에서 연락을 피하고, 다른 가

족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 만나지 않고 있거나 부모님의 정신건강 문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연락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보호 체계	청소년 인터뷰 결과
중장기쉼터 (보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르겠어요. 가끔씩 선물 같은 거 주는 거 같은데. 몇 년에 한 번? 6개월. 모르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형, 누나. 모르겠어요. 사실 좀 가족관계가 복잡해가지고 완전 친누나도 아니고 완전 친형도 아니고. 무시해도 뭐 이해가 되니까. 남이나 똑같아요. 사이도 안 좋고. (B1) • 저는 아무도 안 계셔서. (B2) • ... 제가 핸드폰을 없앴거든요. 최대한 그냥 저한테 나중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B3) • 아빠랑은 맨날 연락하는 건 아니어도 이렇게 꾸준히 연락은 이어가고. ... (가족들이 도움을) 준다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한다고 이미 다 말해놨어요. 혼자서 이렇게 된 거 내가 끝마무리도 나 혼자 지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강해서. ... 심리적으로는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한테는 의지가 되고. (B4)
청소년 자립지원관 (보호 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희 엄마가 제 전화를 안 받고요. 저희 오빠들은 저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어, 만나면 싸움을 한다고 해야 되나. 전에는 1년에 10번 정도 만났는데 이번에는 만나는 거 자체가 없어요. (C1) • 부모님은 이제 연락이 와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그런 정상적인 일상 대화가 불가능하시고 아버지가 이제 조금 대화 가능하신데, 전화 오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연락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고 이제, 그런데 또 대화가 이제 반복이 많이 돼요. 좀 다른 생각을 못 하셔 가지고. (C3)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들에게 청소년들의 원 가족 관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부모나 원 가족이 아동·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오히려 아동·청소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아동·청소년이 받아야 하는 생계비 지원이나 각종 지원금, 물품들을 아동·청소년을 돌보지 않는 부모가 가져가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고, 친권 관련 문제도 확인되었다.

보호 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청소년 자립지원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희 이번에 LH 하는데요. ... 부모 서류를 내야 되잖아요. 아이가 19세면 가족 서류가 다 들어가야 되고, 동의서가 각각 따로 가족의 사인이 들어가야 되고, 소득 분위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친구는 그걸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부

보호 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p>모 얼굴을 안 본 지 5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4순위가 됐어요. 이게 현실인 거 같아요. 다른 예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E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는 생계비를 부모가 받고 있기 때문에 못 받죠. ... 성인이 됐을 때 애 건강보험료를 내주려고 하면 의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한부모가정으로 신청이 돼서. 그래서 의료 지출이 안 되는 건 있지만, 애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건 없다는 거죠. 기껏해야 공과금 디스카운트 정도죠. 현실적으로. (E3) • 쉼터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부모 소유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 이번엔 국가재난금이 나오면 뭐해요. 부모가 다 쓰고. 애는 건강보험이 부모로 되어 있으면 애는 못 받았을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삼십몇 만 원을 나라에서 주든 말든. 현실이 그렇다는 걸 증빙할 길이 없을 뿐이죠. 그래서 경기도 조례를 바꿨지만 아동하고 똑같이 받을 수는 없고, 대신에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따로 자립지원관에서 사업비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E3) • 보육 시설 5년 있어서 1순위 됐던 친구. 엄마가 가정폭력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다쳐서, 심하게 머리를 다쳐서 나왔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CDA 통장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와서 해약해서 가져가셨어요. 같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구청에서 해지를 해서 가져가셨어요. (E3)

5. 보호종료 전·후 자립지원 욕구

가.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

중장기쉼터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은 공통적으로 취업과 취업을 위한 기술 교육 측면에 대해 언급했다. 쉼터 내에서 배울 수 있는 분야는 한정적이기에 학원 등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운영하는 교육에 대한 의견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집을 구하거나 가구를 들이는 등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다.

보호 체계	청소년 인터뷰 결과
중장기쉼터 (보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에 하고 싶은 그런 진로의 길을 찾아서, 하나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면은 어떤가? ... 나가서 집 구하고 나서 그 뒤에는 뭐 평생 알바를 할 수도 없고. 그 뒤에도 사실 문제잖아요. ... 알바해서 돈 모아서 나가는 건 너무 일시적이지 않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A2) • 저는 현재 그냥 학원. 뭐가 부족한지는 여러 가지 배워 봐야지 아, 이거 나한

보호 체계	청소년 인터뷰 결과
	<p>테 적성에 맞다, 찾고 나서 조금 취업이 되는데. 학원에서 그것도 좀 지원할 수 있으면 해주고 그런 거죠. (A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뭐 일단 뭐, 음... 취업을 해야 되고. (B1) • 집을 구할 때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B2) • 미용이라든지, 뭐, 뭐 바리스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실기가 필요한 그런 거예요. ... 이렇게 학원이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 뭐 한 1개월이라도. 그녀가 인턴십 같은 (B3) • 집 알아보는 것도 이제 필요하고. 또 이제 알바나 그런 건, 이제 인권이나 그런 거에서 배우니까 괜찮고. 뭐 사회생활은 어떻게 보면 쉽다든 작은 사회기 때문에 그걸로 알아 가면 되는 거고. 급한 건 주거? 주거 관련된. (B4)
<p>청소년 자립지원관 (보호 종료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서 만약에 딱 나왔을 때 그 돈이 없으면 이제 방을 못 구하잖아요. 거기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돈을 못 모으고 나오면. (C2) • 좋아하는 거는 좀 이상적이라고 나중에 하더라도 좀 진짜로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를 좀 연결해주고 이제 나갈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C3) • 쉼터에서 보통 거의 아무것도 못 배우고 나오거든요. (퇴소하면) 이런 생활비를 지출하면 다시 막 기술 배울 비용, 시간이 또 부족하고 이러면 또 아르바이트로 가야 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 이제 다시 이제 ...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C3) •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그 성인이 되기 전에 진로를 정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것. 막 운전면허증, 뭐 컴퓨터활용능력 뭐 이런 기본적인... . (C3) • 일단 어려웠던 점은 일단 가구들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돈을 못 모은 상태로 그러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가구 사는 게. ... 나올 때는 일 자리. 일자리를 갖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C4)

한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중장기쉼터 종사자는 아동·청소년이 배우고자 하는 분야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교육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들은 필요한 측면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자립을 위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자금, 주거 공간 둘 중 하나라도 마련이 되어서 사회활동에서 격차가 줄어들었으면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보호 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증장기쉼터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고는 싶은데 돈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자립지원금, 아니 자립에 대한, 기술에 필요한 돈을 좀 지원을. 사례에 맞게끔 개별화된 서비스에 맞게 돈을.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니까.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D3)
청소년 자립지원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이 어쨌든 퇴소를 하면 돈이 있거나 집이 있거나 최소 둘 중의 하나는 뭔가 좀 마련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격차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E1) • 자립 지원 요원이 8명에서 최대 50명을 목표로 운영해야 된다는 명시적인 구절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조절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E1) • … 그 아이가 집이 없어서 저희가 LH 연계해줄 수 있고,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을 구하고 나서의 아이 상태가, 청소년도 제대로 못하고. … 현재 상태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자립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 근데 현실성은 저희가 분기에 두 번밖에 못 만나는 상황 이어서, 만나면서 되게 미안함이 커요. 집이 되게 난장판이 되어 있고, 정리도 못 하고 분리수거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접근하자니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E2)

나. 자립지원 서비스의 실질적 도움정도, 보완 필요 지점

증장기쉼터 종사자들의 경우, LH의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서비스와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원가족으로부터 보호받는 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자립정착금이 증장기쉼터에도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 증장기쉼터 청소년들이 이미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어 정착금 만으로는 자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 필요지점으로 언급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들의 경우, 자립지원 서비스가 관계적 자립, 심리정서적 자립 등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시설유형별로 격차가 나는 점이나 지자체와 쉼터의 역할이 중첩되는 점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청소년쉼터 등에 연계하기도 쉽지 않고 당장 지낼 곳도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호 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중장기쉼터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지원으로) 저희 애들 집 되게 많이 얻었어요. ... 중장기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D1) • 부모님이 나의 거주지를 조회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면 그 주민센터에서 다 막아주세요.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 자체로 사실 보호가 되고. (D1) • 너무 애들한테 지원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정착금 부분은 그 100만 원은, 사실 공부만 했던 애들이 이렇게 나와서 정착금으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D1) • 중장기라고 하더라도 지방 같은 경우는 단기 역할도 하고 중장기 역할도 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남 같은 경우는 사실, 일시 단기 중장기가 명확해요. 그래서 좀 더 기능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D1) •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도 많긴 하지만, 일단 자립정착금 부분이. 그것만으로도 좀 지원이 된다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없을 것 같아요. (D2) •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 수급비 같은 것을 진행하는 것을 그게 다 끊긴다고. 그래서 원가정에서 그걸 못 받는다고. 아예 지급이 안 돼요. 저희 공주시는. (D3)
청소년 자립지원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는 베이스,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그것 외에 이 친구는 사회성을 길러야 되는 관계적 자립도 되어야 되고, 심리 정서 자립도 되어야 되고. 이런 자립이 집만 있어서 자립이 아니라는 걸로 요즘 바뀌고 있잖아요. (E3) • 서울시립은요... 선별을 2차 면접까지 다 해서... 저기는 정예군단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자립을 다 성공할 애들만. 너무 좋은, 부럽다는 얘기에요. 시설이 너무 좋다는 게 전국 쉼터에 소문이 다 났어요. (E3) • 자발적으로 자립지원관 오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 근데 조금 나이 때문에 연계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저는 그 친구들이 가장 사각지대 애들이 아닌가 싶어서. 워낙 일이나 단기에서 안 받아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 그 친구가 당장 오늘 잘 데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E4) • 약간 역할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저희 쉼터에서, 인천에는 쉼터가 월세 지원도 해요. ... 그러니까 굳이 그 친구들이 자립지원관을 찾는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자립지원관이 지역에 두 개나 있는데. (E4)

다.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

중장기쉼터 아동·청소년은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모두 주거를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취업, 진로탐색 등이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은 자립전담요원과의 관계 강화와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구 구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종사자들은 퇴소한 청소년들의 식사가 부실한 점과 함께 퇴소 후 사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나 청소년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를 언급하며 사례관리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호 체계	청소년 인터뷰 결과
중장기쉼터 (보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집. 집 다음으로는 당연히 뭐, 취업이겠죠. (A1) • 저도 아마 집이지 싶은데. (A2) • 집이죠. 집에서 지내야지 제가 밖에서 돈 벌고 자는 곳이 있어야 되죠. 뭐 돈은 자기가 버는 거고, 집은 없으면 어떻게 지낼 곳도 없으니까. (A3) • 자립은 저도 주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밥이야 뭐. 밥은 별로, 밥은 안 먹어도. 하루 한 끼 먹어도 살 수 있더라구요. 밥 문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주거가. 주거는 땅바닥에서 잘 수 없으니까. (B1)
청소년 자립지원관 (보호 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외로운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 자립지원전담요원이라고 하잖아요. 제도적으로 강화가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카페 같은 데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데서는 좀 진지한 얘기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공공장소에서는 말하기 힘들고 진짜 조용한 장소에서 둘이 있을 때, 그리고 친밀도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말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담 환경이나 그 상담 능력이나 이런 거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되고 이제 좀 그런 쪽으로 더 강화시켜서 좀 그 케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고, 네. (C3) • 어, 그냥 가구 구입하는 거. ... 저는 직업인데 이렇게 막 직업이 많지도 않고 이제 찾기도 어렵고 어디로 가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게 제일 고민되더라고요. (C4)
중장기쉼터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한 애들이 먹는 게 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월드비전, 지금 올해도 월드비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 퇴소생 사후관리로 도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복지관에서 어르신들한테 도시락 전달하듯이,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애들 사례관리 할 겸, 이제 도시락 전달해주고, 살펴보고. 그다음에 무슨 일 있는지 사후관리를 또 해요. (D1)
청소년 자립지원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니까, 그게 조금 기준이 애매한 거 같아요. 저희는 일단은 그 친구를 계속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친구들 스스로 말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웬만큼 살만하고, 잘 먹고 있으니까. 굳이 그 2주에 한 번씩 나가야 되고, 교육도 나가야 되고. 선생님의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나 봐요. (E4)

6. 현 자립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가. 아동보호체계 시설과 쉼터의 차이 및 한계

쉼터나 자립지원관에 오기 전 아동보호체계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을 경험해 본 청소년에게 두 체계의 차이점에 대해 물어본 결과 청소년들은 대체로 쉼터 생활이 더 편했고 성격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였으며, 쉼터 내 관계 속에서 성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아동보호체계의 자립준비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고, 다양한 지원을 받는 한편 쉼터의 청소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했다. 청소년들은 쉼터를 마음 편히 머물기 좋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아동보호체계만큼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에 대해 지적했다.

보호 체계	청소년 인터뷰 결과
청소년 자립지원관 (보호 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홈) 좋지는 않았어요. ... 그냥 살았던 데가 그런 데였는지 모르겠지만 쉼터와 그룹홈에 있었던 거 비교해보면 저는 쉼터 쪽이 더 나왔던 것 같아요. (C2) • 완전 어릴 때라서, 어릴 때. 말하면 좀 길어가지고 어릴 때여서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보육원에서 나와서 쉼터로 온 거거든요. 그냥 보육원이 너무 힘들었어요. 쉼터가 제일 편했어요. (C4) • 보육원에 있을 때랑 여기 쉼터 들어오고 나서 많이 성격도 변하고. ... 쉼터 오고 나서 언니들이 막 잘해주고 언니들 과정도 듣고 그래서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학교랑 거기가 가깝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잘해주시고. 거기 언니들도 잘해주세요. 그래서 아직도 연락하는 언니들도 있어요. (C4)
청소년 자립지원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 3단계의 자립교육이 있고. 시스템을 다 거쳐서 곁핥기식이라도 하고 나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집에) 있을 수 없어서 탈출한 아이들이 쉼터에 와서 지내는데. 이 쉼터는 자립 교육이 안 돼 있고. ... 나라에서 이런 지원을 너에게 해줄 수 있어, 라고 자존감을 높여줘서 나오는 아이들과. ... 굉장한 격차가 있어요. ...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닥 많지 않아요. 근데 쉼터 아이들은, 해도 안 돼요, 전 못해요. 하고 싶은 거 있어? 없어요. (E3)

나. 자립 과정에 필요한 정부 지원

증장기쉘터 아동·청소년은 자립지원금과 예산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이 늘어났으면 하는 점과 청소년쉘터가 청소년 관리에 맞춰 운영되길 바라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쉘터의 아동·청소년이 자립지원에서 배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은 취업, 생필품, 의료 등 금전적인 영역에 대한 지원이 자립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호 체계	청소년 인터뷰 결과
증장기쉘터 (보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전적인 부분을 조금 많이 넓혀줬으면 좋겠다. ... 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못 하고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은 있죠. (A1) • 청소년 관리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사실, 다른 일도 많이 하고 계시면서 같이 접입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B1) • 청소년 쉘터 같은 데는 애들이 자립할 때 자립지원금을 따로 안 주잖아요. 그게 좀 크지 않나. ... 거기서 일단 너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B2) • 사후관리 그런 측면에서도 좀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단절하기에는 그동안 너무 선생님들의 손길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조금 씩은 가서 챙겨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B3)
청소년 자립지원관 (보호 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관련 도움. 생필품이라든가 의료, 뭐 그런 도움들 있잖아요. 금전적인 게 제일 아무래도 제일 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도와주면 잘 갈피를 잡지 않을까. (C2)

다. 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안

종사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법, 제도적 체계와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각종 법과 제도가 얽혀 있어 문제 발생 시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 시설유형과 관할 부처가 아동보호체계와 분리되어 있어서 생기는 어려움, 청소년쉘터 아동·청소년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특히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의 지원 수준 간에 격차가 큰 상황에서, 비슷한 배경을 지닌 아이들이 어떤 경로로 어느 보호체계에 진입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법인 여건이나 담당 부처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적 투자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호 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중장기쉼터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또 여건에 따라서 쉼터 서비스의 질이 확연히 좀 차이가 나는 걸 많이 봐서. 이런 근본적인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걸 사실 공적인 재원이 진짜 투자가 되어야 좀 평준화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너무 민간자원으로만... (D1) • 그리고 쉼터를 복지로 뺄 거면, 아동은 나이대를 좀 구분을 제대로 해서, 아동과 청소년의. 지금 아마 아동복지법이 또 20세까지로 되어있으니까, 여기서도 되고. 청소년도 9세에서 23세니까. (D1) • (어떤 아이가)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 통해서 입소를 했고, 조사 과정 중에 있고.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애는 청소년복지법으로 입소한 게 아니고, 아동보호차원에서 입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신 거죠, 법이 달라서. (웃음) (D1) • 대전이나 세종 같은 경우에 여자보호소가 없어요. 남자청소년인 아동, 남자 아동보호소는 있는데. 여자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단기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D2) • 아동복지랑 노인복지는 딱 보건복지부 관할이잖아요. 근데 왜 청소년복지만 여가부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 쉼터에 아동학대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보호자랑 격리, 법원에서 명령받으려면 아동보호시설로 가야 된대요. 근데 저희는 청소년복지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가 없대요. ... 근데 공주에는 아동복지 시설, 보육원, 그룹홈 아무것도 없으니까. 타 시설, 타 기관. 아니,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학교도 전학 가야 되고.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죠. (D3)
청소년 자립지원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연계를 위해) 고시원에 넣고 주거 취약계층으로 ... 아동 그쪽에서는 디딤씨앗통장이니, 자립수당이니, 월마다 30만 원씩 주는데. 쉼터에 온 애들은 그런 게 일절 없는 상황이에요. ... 최소한 너무 비교가, 격차가 나지 않는 수준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E1) • 그만둔 애를 쫓아다니면서 집은 잘하는지, 월세 안 밀리는지, 이자는 잘 내는지, 할 수 없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 이 아이를 사례관리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맡는 게 맞죠. (E3) • 같은 가정폭력이고 해체 가정인데, 전부 다들 그런 아이들인데. 제가 잘하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아이는 경찰서에서 보육시설로 데려다주고, 어떤 아이는, 가정과 단결시켜주세요, 하고 쉼터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18세가 지났을 때 인생이 바뀌어요. (E3) • (자립지원관 지원이 2년인데) 아이들이 19세 때 왔다면 지원이 스물한 살에

보호 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p>끝나. 그럼 이 아이들은 스물두 살부터 누가 돕지? 이런 거죠. (E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퇴소자들은 보육 시설을 퇴소했다는 것만으로도 월 30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 국기초 만들기도 어려워요. (E3)

또한, 중장기쉼터 종사자들은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점으로는 사업예산은 줄어들지만 항목에 대한 지출 비율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개선과 임대차계약 교육이나 가계부 작성 교육 등 실용적인 교육 확충, 표준화된 매뉴얼 마련, 쉼터의 지역 격차 해소 등을 언급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들은 청소년들과 소상공인을 연계해 청소년이 취업하게 되면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의견으로 밝혔다. 또한, 청소년들이 결과뿐만 아니라 생활이나 과정도 평가받을 수 있으면 한다는 점, 사후관리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들을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으면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호 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중장기쉼터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쉼터는 지자체에서 내려주는데, 일단 이 본포 자체도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곳과 수도권에 있는 곳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해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방 상황을 잘 몰라서. 수도권은 수요가 계속 있어요, 사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애들이 거의 수도권으로 많이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D1) • 사업비를 통으로 주고 사업비 20% 이상 맞춰라 ... 그럼 사람들은, 장기 근속하는 사람들은 호봉 계속 올라가는데, 사업비는 점점 줄고... . (D1) • 권리교육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상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교육들, 임대차 계약서 쓰는 거라든지. 이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D2) • 표준화된 매뉴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D3) • 지자체의 그 공무원분들이 ...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청소년쉼터에만 신경 쓰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분들의 일을 좀 줄여주고자 공무원을 많이 선발해서 청소년쉼터 공무원이 청소년쉼터와 상담복지센터, 이 정도 청소년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D3)
청소년 자립지원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같은 경우 이렇게 연계를 해서 취업을 하게끔 도와주는 경우에 소상공인에게도 혜택 같은 걸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됴으로써, 저희 아이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E1) • 결과가 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하거나 바라봐 줄 수 있는 어떤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이 생각

보호 체계	종사자 인터뷰 결과
	<p>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E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법으로 24세까지밖에 아이를 관리 못 해요. ... 저희가 (24세 이후) 사후관리를 사례관리로 할 때 지출이 비용이 될 수 있냐, 법령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저희는 계속 반문하고 있어요. ...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는 거죠. (E3)

제5절 소결

1.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특성

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양적·질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보호체계 내 중장기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은 아동보호체계의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보다 평균 연령이 높고, 만 19세 이상의 비율이 높아 이미 성인기 초기에 진입하여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휴학 또는 중퇴한 비율은 약 5배 이상 높았으며, 교육 및 훈련 기관을 통해 취업 등을 준비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 또한 약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정 외 보호 기간은 평균 3.1년으로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단기로 거주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또한, 아동보호체계의 보호 아동·청소년과 같이 부모와의 갈등, 가정폭력, 빈곤, 부모의 이혼 및 양육 거부 등으로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아동 및 청소년보호체계를 표류하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아동·청소년과 같이, 부모나 원가정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공공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

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은 아동보호체계의 보호 아동·청소년과 같이 원가정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한편, 성인기 진입에 더 압박해 있는 상황으로 공공 영역의 자립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 경험

자립준비 경험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아동보호체계와 유사한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생활가정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과 비교해도 그 경험률이 낮지 않았다. 그러나 자립지원과 관련된 청소년보호체계 내 프로그램은 개개인의 청소년쉼터의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과 아동·청소년 개개인의 관련 경험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자립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아동보호체계 공동생활가정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이용 경험 비율이 더 높았는데, 그중에서도 용돈 지원, 장학금, 디딤씨앗통장과 같은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자립준비 경험은 청소년보호체계 자립준비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와 관련된 일부 지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관 이용 여부는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웰빙 지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직업교육 또는 훈련, 자격증 취득 서비스 경험은 취업 또는 대학 공부의 희망 진로를 정한 비율과 관련성을 나타냈다. 멘토링은 주관적 웰빙 지표의 삶(생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용돈 지원은 낮은 걱정 수준과 관련성을 나타냈다. 또한 장학금 이용 여부는 자기효능감과 학업 성적과 정적 연관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자립준비 지원과 관

련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청소년보호체계의 청소년쉼터 보호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를 지원하여 개개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더 많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3.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

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은 여러 영역에 걸쳐 아동보호체계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사적 자본 영역에서는 삶의 만족도, 주관적 웰빙의 행복, 걱정, 우울, 삶(생활) 만족도, 유데모니아,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의 모든 지표에서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인적 자본 영역에서도 휴학 및 중퇴 비율이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보다 현저히 높고, 희망 진로에서도 ‘모른다’는 비율과 취업의 비율이 높고, 대학 진학 비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자본 영역 또한 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지표가 낮게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사회적 지지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고, 응급 시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보호체계의 아동·청소년이 아동보호체계의 아동·청소년보다 자립준비 수준이 낮아 퇴소 후 자립이 더욱 어려울 수 있음을 암시하며, 퇴소 후의 사회경제적인 어려움과 노숙, 빈곤, 범죄 등의 잠재적인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동보호체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준의 자립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4.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서비스 욕구도

청소년보호체계의 아동·청소년은 자립서비스 욕구와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령이 증가하여 퇴소 시기에 임박할수록 주거 지원을 더욱더 필요로 하였다. 또한, 이는 아동보호체계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 욕구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경제, 주거와 관련된 위기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은 아동보호체계를 중심으로 제공되어 왔으며, 청소년보호체계 내 아동·청소년은 정보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자격 여부에 따른 이용 경험에 개인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가정 외 보호 또는 아동복지시설 생활 이력 자체만으로 경제 및 주거 등의 자립지원을 비롯하여 사회적 지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아동보호체계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과 달리, 청소년보호체계의 청소년쉼터 생활 아동·청소년은 원가정의 상황과 형편에 따른 자격 요건에 판단이 필요하고, 이 중 수혜, 부모 동의 등과 같은 현실적인 장애로 접근 가능한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보호 및 지원의 필요도는 아동청소년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의 아동·청소년 간에 유사하다. 오히려, 청소년보호체계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이 낮아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립지원 관련해서 동일한 욕구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두 체계 간 자립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수준을 동일하게 맞춰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및 결론

제2절 연구 함의 및 정책 제언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체계 간 격차를 확인하고, 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체계 자립지원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하고, 해외의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정책과 서비스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보호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 실태와 서비스 욕구를 양적·질적 자료 수집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

가.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현황 및 특성

아동보호체계 내 위탁가정과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5세 이상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은 연간 약 1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 연령대의 가출·노숙 청소년을 보호 및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체계의 청소년쉼터 입소자 수는 연간 3만 2,000명이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쉼터에서 장기적으로 거주 및 생활하며, 자립지원이 필요한 15세 이상의 대상자는 약 1만 7,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아동보호체계 내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은 부모의 학대(40%), 부모의 이혼(29%)과 미혼부모 및 혼외자(29%)로 인해 보호 조치되는 경우가 가

장 많았으며, 청소년쉼터 입소자의 경우에도 가족해체 및 가족갈등(46%)이 입소 사유의 전발 정도를 차지했다. 이를 보면 아동보호체계 내 아동과 마찬가지로 원가정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아동·청소년이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보호체계 아동·청소년 모두 퇴소나 보호종료 후 부모나 원가족으로부터 지원이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열악한 자립 경험 또한 유사했다. 많은 아동·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문제를 경험하였고(이상정 외, 2019a; 진선미, 이주연, 주보라, 2016; 장정은, 전종설, 2018; 장주현, 김정애, 2015; 장혜림, 정익중, 2017),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재로 외로움 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정은, 전종설, 2018; 장혜림, 정익중, 2017; 정문진, 김수정, 2016).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은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 체계는 다르지만,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이 된 이유, 자립 과정의 경험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는 현재 두 체계 모두 시도 단위 지원기관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자립서비스의 지역적 격차와 서비스 전달에서 분절을 초래하고 있다. 아동보호체계에서는 2005년 아동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아동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에서 지역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류정희 외, 2018).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는 그동안 아동복지법의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자립지원 서비스는 광역전달 체계가 부재한 지역이 많았는데(이상정 외, 2019a), 이마저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설치보다 민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립통합지원센터사업 선정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지원과 운영이 담보되더라도 민간자원 기반의 자립통합지원센터가 자립지원 서비스의 공공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불안정할 수 있다. 현 상황과 같이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국비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법적 강제성이 부재할 경우 아동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더 이상 확보되지 않을 것이다.

시·도 단위로 설치되고 있는 청소년보호체계의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최근에 개소한 충남 지역과 2020년 7월부터 운영 예정인 대구 지역을 포함하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9개소가 분포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의 중장기 청소년쉼터가 자립지원 기능 위주로 개편해나가는 과정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은 전무한 상황이다. 나아가 청소년보호체계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시설 입·퇴소 과정에서 시·도와 시·군·구의 개입이 전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광역시·도 단위에서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간 지원기능을 통합,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고 일선 기관의 서비스 질과 내용을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 자립지원 서비스 현황

아동보호체계의 보호대상 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은 「아동복지법」 제38조부터 제44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과 하위 법령에서 명시한 자립지원은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이다. 따라서 아동보호체계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은 주거 지원과 관련하여 매입·전세 임대주택, 주거 지원통합서비스, 자립지원시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립지원전담요원을

통해 자립준비와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CDA)를 통해 보호기간 동안 자산형성이 가능하며,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으로 생활지원을 받는다.

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이 보호하는 청소년의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서비스의 세부내용과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장기 청소년쉼터에서는 '자립생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립 관련 상담 정도가 제공되고 있다. 자립생활을 준비할 경우 청소년자립지원관이나 다른 시설에의 재입소를 연계하거나, 독립생활을 계획할 경우 주거비 부담 및 계약 관련 지원과 지출 관리, 가사 관리 등의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2018년도부터 국비 지원이 시작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사업비가 연간 2,5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직접 지원보다 연계를 통한 월세 지원, 생활관 입소, 금융교육 및 저축 관리, 일상생활 상담 등을 주로 지원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아동보호체계의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 기능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청소년보호체계 내 청소년에 대한 주거 지원을 포함한 자립지원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시설별 자립지원 내용 간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청소년보호체계의 중장기 청소년쉼터와 같은 시설에 '자립지원전담요원'과 같이 자립을 지원하는 별도의 전담인력이 부재하고, 입소 청소년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CDA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과 퇴소 시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아동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를 고려할 때, 체계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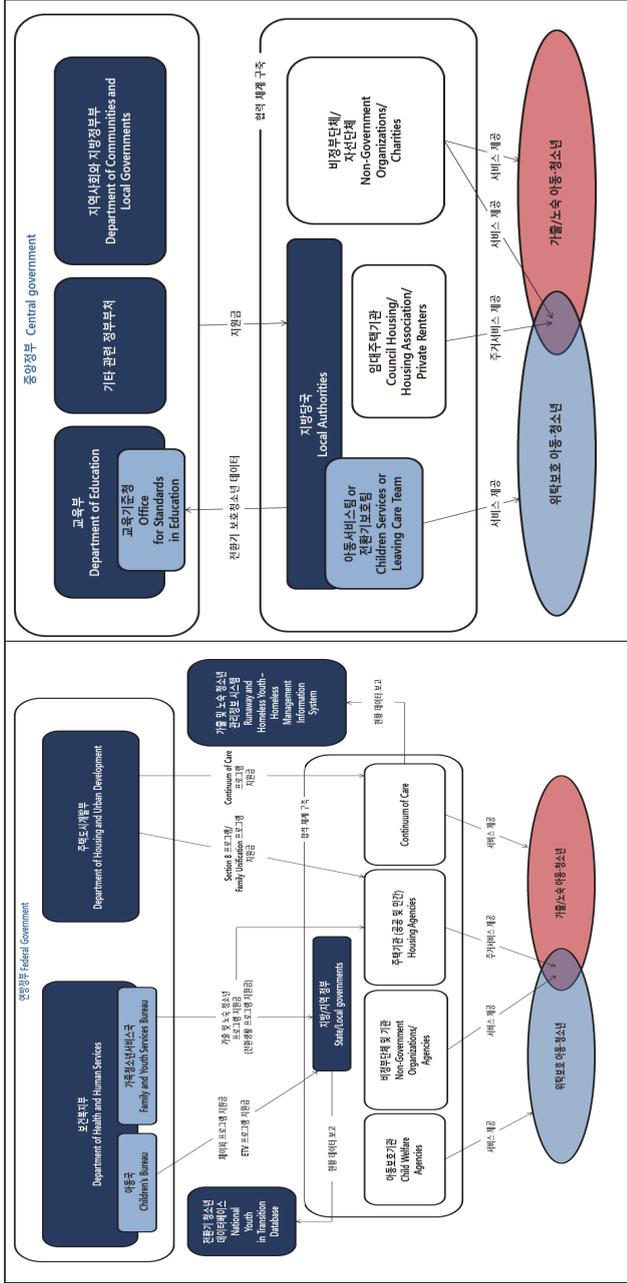
2. 보호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해외 사례

가.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사례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위탁보호와 청소년보호체계로 대표할 수 있는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는 미국과 영국 역시 완벽히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았다. 미국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국에서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을,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가족청소년서비스국과 주택도시개발부에서는 주거를 중심으로 자립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도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은 교육부가,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은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위탁보호 아동·청소년과 가출·노숙 아동·청소년 부서가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고, 영국은 지방 당국에 아동의 지원에 대해 사회적 부모로서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체계 분리로 인한 자립지원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 위탁보호와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자립지원 서비스의 가장 공통적인 부분은 주거 지원이다. 위탁보호와 가출·노숙 아동·청소년 모두에게 주거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은 개개인의 상황이나 욕구에 부합하는 주거 형태와 관련 자립 지원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되거나 자립 적응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림 5-1] 미국과 영국의 위탁보호 및 기숙·노숙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자료: 저자 작성.

나. 자립지원 서비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영국에서도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리는 역시 자립지원 서비스의 격차 발생으로 연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영국 모두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지원서비스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수혜 연령을 점차 늘려가는 추세이나,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의 경우, 특정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서비스의 대상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이용 가능 기간이 훨씬 짧다. 특히 영국은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거 지원을 보장하는 법적 연령이 만 18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위탁보호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거 지원이 만 21세(혹은 고등교육을 받게 되면 만 24세)까지 법적으로 보장되어 두 집단 간의 주거 지원 연령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미국과 영국 모두,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 사례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있다. 역할과 기능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자립지원전담요원과 같이 미국은 independent living coordinator, 영국은 personal advisor가 위탁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해 통합적 사례관리를 통해 자립을 지원한다. 그러나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집중 또는 전담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통합적 자립지원

미국과 영국에서도 통합적이지 못한 보호 및 자립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위탁보호 아동·청소년과 가출·노숙 아동·청소년 간 자립지원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부처 간 협업 노력과 사회적 책임의 강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탁보호 아동·청소년과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양성이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위탁보호 아동·청소년과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에 있어 질적 차이를 줄이는 통합적 지원의 노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주체 간 협력이다. 미국과 영국 모두 지방 정부 혹은 지역사회 내 공공부서 간의 협력, 특히 아동서비스와 주거서비스 관련 부서 간의 협력, 그리고 지역사회 내 서비스 자원들과의 연계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영국의 예를 살펴보면, 지방 당국의 부서들 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주거 선택지와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가장 적합한 대상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위탁보호와 가출·노숙 아동·청소년 담당 부서가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 연계 협력이 용이하다. 또한,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가출 및 노숙 청소년 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가출 및 노숙 청소년 정보관리 시스템은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호서비스와 자립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에게 지원되지 않는 보호와 자립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가출·노숙 아동·청소년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자립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주거서비스 기반 통합적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이다. 미국과 영국에서 위탁보호와 가출·노숙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립지원

서비스의 가장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주거 지원이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주거 지원을 기반으로 자립 생활 기술을 익히고,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체 및 정신 건강, 심리사회적인 영역의 지원까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continuum of care 프로그램, 영국의 5단계 맞춤형 주거서비스의 경우, 주거 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에게 개개인의 상황이나 욕구에 부합하는 주거 형태와 관련 지원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거나 자립 적응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3.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준비 및 서비스 욕구 비교 분석

가.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특성

청소년보호체계 내 중장기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은 아동보호체계의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보다 평균 연령이 높고, 만 19세 이상의 비율이 높아 이미 성인기 초기에 진입하여 자립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외 보호 기간은 평균 3.1년으로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단기로 거주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아동보호체계의 보호 아동·청소년과 같이 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또한, 부모와의 갈등, 가정폭력, 빈곤, 부모의 이혼 및 양육 거부 등으로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를 넘나들며 표류하는 등 부모나 원가정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 공공 영역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 경험과 자립 수준

자립준비 경험과 관련해서는 아동보호체계의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과 비교해도 그 경험률이 낮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중장기 청소년쉼터 아동·청소년 아동보호체계와 유사한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립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과 관련해서는 아동보호체계 공동생활가정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이용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더 높았다. 특히 용돈 지원, 장학금, 디딤씨앗통장과 같은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자립준비 경험은 청소년보호체계 자립준비 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와 관련된 일부 지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립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자립지원관 이용 여부는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직업교육이나 훈련, 자격증 취득 서비스는 취업 또는 대학 공부(‘모른다’는 응답 대비)의 희망 진로 선택률을 높였다. 멘토링은 주관적 웰빙 지표의 삶(생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용돈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걱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장학금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자기효능감과 학업 성적에서 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과 자립서비스 욕구

아동보호체계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에 비해 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사적 자본 영역에서 삶의 만족도, 주관적 웰빙의 행복, 걱정, 우울, 삶(생활) 만족도, 유데모니아,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의 모든 지표에서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보다 부정적인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인적 자본 영역에서 휴학 및 중퇴 비율이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보다 현저히 높고, 희망 진로에서도 ‘모른다’는 응답 비율과 취업의 비율이 높고, 대학 진학 비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도 사회적 지지 수준이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보다 낮고, 응급 시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망 수가 적어 사회적 지지 자원도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체계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은 아동보호체계의 아동·청소년보다 자립준비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그들에 비해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청소년보호체계의 아동·청소년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여 아동보호체계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서비스 욕구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 연령이 증가하여 퇴소 시기에 임박할수록 주거 지원을 더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은 아동보호체계를 중심으로 제공되어 청소년보호체계 내 아동·청소년은 배제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은 관련 정보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자격 여부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어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서도 개인 간 차이가 나타났다. 청소년보호체계의 청소년쉼터 생활 아동·청소년은 원가정의 상황과 형편에 따른 자격 요건에 판단이 필요하고, 이중 수혜, 부모 동의 등과 같은 현실적인 장애로 접근 가능한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보호 및 지원의 필요도는 아동청소년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의 아동·청소년 간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청소년

보호체계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이 낮아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자립지원 관련 동일한 욕구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정 외 보호 또는 아동복지시설 생활 이력 자체만으로 보호와 자립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보호체계 아동·청소년과 달리, 청소년보호체계의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은 자립 서비스 자체가 부재하거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도 자격 요건 판단이 필요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2절 연구 함의 및 정책 제언

1. 자립지원 관련 법적 제도 개선 방안

가. 권리로서의 자립지원 법적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간 자립지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한 ‘자립지원’의 내용과 수준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위기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역할 중 하나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하위 법령에서 자립지원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보호기간 중 자산형성 지원, 주거 지원, 실태조사,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 자립준비 및 자립지원을 위한 핵심요소가 사실상 공백 상태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복지시설의 사업비(전체 사업비의 20% 수준) 중 일부가 자립지원에 사용되기 때문에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예산 자체도 조악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

영국과 독일은 청년 성인의 자립지원을 청년의 사회보장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제철웅, 2020, 재인용, p.355). 관련하여 제철웅(2020)은 아동보호체계 내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적 규정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자립지원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을 두고,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각각에 보호아동·청소년이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거나, 나아가 두 체계를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소년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기관에서도 아동·청소년의 대안양육과 자립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다종다양한 개별 법률의 개정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다. 다만 기존의 개별 법률과 비교할 때 특정 대상에게 유불리가 있거나, 지원내용이 개악(改惡)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자립지원의 공공 책임 명시

아동·청소년보호체계 모두 자립지원 서비스는 지자체가 아닌 개별 법률에서 각각 명시한 시설(agency)을 중심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해당 시설의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자립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구조다. 즉, 같은 아동보호체계 내에서도 자립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고, 아동·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퇴소 시 아동보호체계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은 이용할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영국의 사례에서는 지자체가 사회적 부모의 역할을 수

행하는 corporate parenting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호 아동의 사회적 부모는 지방 당국이며 사회적 부모로서 보호아동의 자립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도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의 의무자를 지방자치단체로 명문화하면 중앙부처의 담당 체계가 다르더라도 지역 단위에서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격차는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아동과 청소년보호체계에서 시·군·구 지자체 중심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와 함께 자립지원을 지자체의 담당으로 한다면 보호서비스의 연속성 효과도 있을 것이다.

2. 정책대상의 특성 및 지원 효과 분석 기반 구축

아동·청소년보호체계 내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특성을 제한적이거나 비교 검토하였다. 그러나 통계 생산 및 관리 목적과 주체가 상이하고 DB 구축 정도와 내용에도 편차가 커서 보호체계 내 대상자의 특성과 자립지원 요구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의 특성과 자립준비 정도, 자립지원 요구와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자립 실태조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어렵다면 별도의 법정 조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위기청소년 자립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자립 실태조사와 조사주기를 맞추고 비교 가능한 문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만 조사대상으로 한다면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게 되므로 ‘위기 청소년’이

라는 대상에 초점을 맞춘 조사 설계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이 구축관리하고 시설의 자립 업무 실무자가 입력하는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을 대상자(사례) 중심으로 개선하고, 지자체의 아동·청소년 자립 업무 담당자가 접근 가능한 행정망 기능을 포함하여 지역 내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실태조사와 자립지원 대상자 DB 구축은 정책대상의 특성과 욕구를 분석하고 지원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그간 아동보호체계의 자립서비스를 청소년보호체계 아동·청소년에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실태조사와 자립지원 대상자 DB 구축은 이러한 문제점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3.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가. 중앙정부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가정 외 보호체계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자체가 아동보호 업무와 자립 업무를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적정 인력과 예산 수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포함한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앙정부 수준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적 통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지원 서비스 격차는 최초의 진입체계에 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

년의 특성과 욕구는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 업무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 업무의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호·지원의 관련 예산, 관리 체계, 인력 등의 규모가 보건복지부가 더 크고 체계의 안정성이 있으므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복지시설지원팀)으로 다원화된 중앙 지원기구 간의 실질적 협업 기반을 강구하거나 대상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구분하는 등 개편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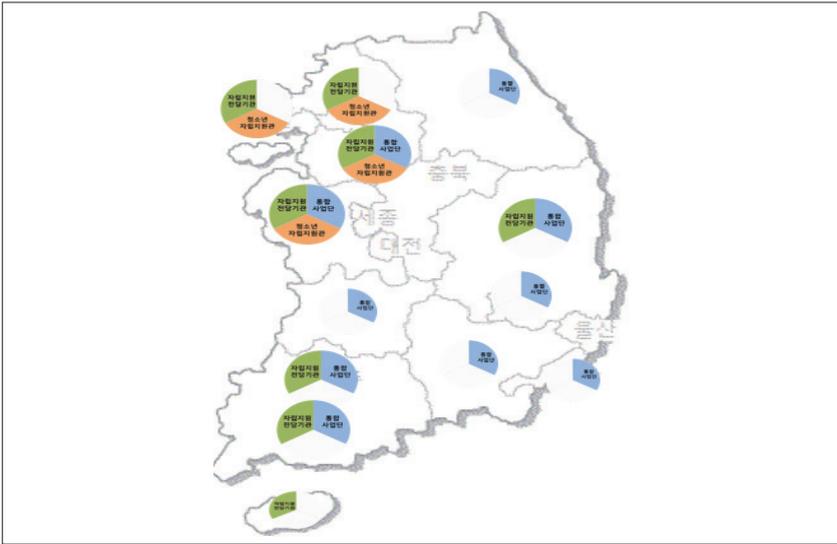
나. 광역 시·도

광역시·도(아동자립사무 담당, 청소년안전망팀)와 시·군·구(시설)로 연결되는 자립업무 서비스 전달체계가 매우 부실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기관의 시·도 단위 분포를 살펴보면 중복과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그림 5-2). 통합 운영 가능성이 있는 아동보호체계의 8개 자립전담기관과 자립통합지원센터 10개, 그리고 주거 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 지역 10개 지역이 있다.

청소년보호체계의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최근에 개소한 충남 지역과 2020년 7월부터 운영 예정인 대구 지역을 포함하여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9개소가 분포될 전망이다. 종합하면 전국적으로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기관은 27개소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충북, 세종, 대전, 울산 지역은 아동·청소년보호체계를 통틀어 자립지원기관이 1개소도 운영되고 있지 않다. 보호종료 혹은 퇴소 아

동·청소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동이 많은 것을 고려하더라도 지역적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을 알 수 있다.

[그림 5-2] 자립지원기관 분포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아동·청소년보호체계 자립지원기관들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자립지원 관련 자원연계와 발굴, 사례관리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주거자원 연계, 사후관리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숙박형 청소년자립지원관과 유사하다. 또한, 생활관 운영과 사례관리 기능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자립통합지원센터는 역시 생활관 운영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혼합형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그 기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유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지원 대상을 구분하여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자립지원

전담기관, 자립지원통합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시·도 자립업무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유사 기능 기관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자립지원 업무의 효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기관 설치 및 운영의 비용을 고려할 때,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광역·시·도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는 지역은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합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은 관련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자립지원 기능을 확대,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자립통합지원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은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통합센터, 혹은 청소년자립지원관 중 광역 전달체계의 기능을 부여하면 충북, 대전, 세종, 울산 지역에 여전히 공백이 발생한다. 또한, 국비 투입이 이루어지 않거나 민간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자립통합지원 기관을 통해서 시·도간 편차를 줄이기 어렵고 중앙부처의 자립 업무와 서비스 전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발달적 특성상 자립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보호체계의 아동·청소년은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립 업무와 서비스는 전국 단위로 전달되고 통합·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16개(세종시 제외) 시·도에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 국비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같은 자립지원통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김지연, 백혜정, 이상정, 최수정, 2020).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 중앙가정위탁지원

센터가 통합·운영되고 있어 전국 단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김지연 외, 2020). 16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거점기관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통합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자립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운영함으로써 체계에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의 개별 욕구에 더 부합하게 자립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다. 시·군·구

시·군·구 단위에서는 일선 시설 간의 정보와 자원, 사례 연계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 DB를 구축하는 등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도적, 공식적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체계에서는 장기간 원가정 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기청소년에 대해 아동보호체계와 같이 입·퇴소에 대한 지자체의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감독 아래에 있는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혹은 위탁가정, 청소년쉼터 중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가장 부합하는 기관에 연계하여야 하며, 해당 아동·청소년의 입퇴소, 자립지원과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장기적인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보호체계 기관으로 연계하여 더 안정적으로 공공의 보호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의 연계·통합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4. 주거 지원 기반 통합적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미국과 영국 모두 일선의 주거서비스는 두 체계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이용 가능하며,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자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보호체계에서 가장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자립지원 중 하나는 주거 지원이다. 2019년부터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대한 국비 투입이 이루어져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주거 지원 가능성이 일부 마련되었고, 특히 지난해 10월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아동 주거권 종합대책’에서 청소년쉼터와 소년원 출원생을 위한 자립생활관 퇴소자도 ‘지자체가 인정하는 사례의 경우’ 아동 보호체계의 보호종료아동에 준한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획기적인 진전이 겨우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쉼터의 경우 지자체(광역시도, 시·군·구)가 개별 청소년의 입·퇴소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고 청소년의 쉼터 입·퇴소 전체 이력을 DB로 관리하지 않아 쉼터에서 생활한 총 기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이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한 곳에서 오랜 기간을 머물기보다 여러 곳의 청소년쉼터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은 ‘노숙자’의 상황과 대동소이한 핵심적 ‘주거취약계층’임에도 주거취약 상황을 입증할 자료 자체가 부실하여 주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청소년보호체계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서비스의 차별과 배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주거 지원을 받는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체계에 상관없이 교육 및 취업, 심리정서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원 받는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퇴소 또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사례관리 서비

스 이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 및 취업, 심리정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당시 아동보호체계 보호종료아동의 만족도가 높았던 주거지원통합서비스(이상정 외, 2019a)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체계의 장벽을 낮춰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모든 퇴소 청소년 또는 보호종료아동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기준 마련 및 공유

사각지대와 배제,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하위 법령을 기반으로하는 자립지원 서비스 내용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이 이를 공유,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호기간 중 자산형성을 포함한 경제적 자립준비, 보호종료 후 주거 지원, 심리정서 지원, 사후관리 등 자립지원의 핵심적 영역에 아동·청소년 체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떤 보호체제로 진입했는지에 관계 없이 아동·청소년의 개별 상황과 욕구에 기반하는 영역별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맞춤형 자립지원이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아동의 욕구에 맞는 자립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경제적, 주거, 건강, 심리정서 등의 영역에서 가용 자립지원서비스가 다양하게 양적·질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 (n.d.).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_N005에서 2020.08.21. 인출
- 강원도아동자립지원시설 현황. (n.d.). http://www.gwjarip.co.kr/user_sub.php?gid=www&mu_idx=16에서 2020.08.21. 인출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7734호 (2020. 12. 22., 일부개정)
- 공동생활가정 현황. (n.d.).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에서 2020.08.21. 인출
- 관계부처 합동. (2019.5.23.).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9522&page=1에서 인출.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주거복지정책과. (2019.10.24.).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발걸음 내딛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2959에서 인출.
- 김예성, 이경상. (2015).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42), 7-32.
- 김은녕. (2019). 여자 가출청소년의 쉼터 퇴소 후 자립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6(1), 55-77.
- 김은녕, 서보람. (2018).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진로태도 성숙이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 일시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2), 197-207.
- 김소연, 전종설. (2015).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6(4), 193-208.
- 김지선, 이민주, 정익중. (2018). 시설보호 종료 후 자립을 유예한 대학생의 자립준비 경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들. **한국아동복지학**, (62), 93-129.

- 김지연, 강현주, 유미상, 이상정, 주보라. (2017). **자립지원잔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 백혜정, 이상정, 최수정. (2020).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 사례관리사 및 자립업무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세종: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201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n.d.-a). **“통계로 보는 디딤씨앗통장”**, <https://www.adongcda.or.kr/?goPage=177>에서 2020.08.21. 인출.
-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n.d.-b). **“디딤씨앗통장 소개”**, <https://www.adongcda.or.kr/?goPage=107>에서 2020.06.02. 인출.
-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김지민, 송현중, 유민상, 이봉주. (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정희, 함영진, 이상정, 김지연, 김가희, 김지민, 권영지. (2018).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전달체계 심층분석**.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세경, 하태정, 김보영, 김용득, 김은정, 이봉주, 이인재. (2016). **사회서비스 정책 진단과 고도화 전략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진규. (2008). **아동청소년 통합정책 개발 방향, 법률과 정책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가능성 탐색**. *청소년학연구*, 15(4), 203-231.
- 보건복지부. (2019). **2018년 보호대상 아동 현황보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에서 2019.10.12. 인출.
- 보건복지부. (2019). **2019년 보호대상 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1&page=1&CONT_SEQ=358451&PAR_CONT_SEQ=356036에서 2020.08.23. 인출
- 보건복지부. (2020a). **자립지원업무 매뉴얼**.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b), **아동복지시설 현황**.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9). **2018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2020 자립정보북**.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7782호, 2020. 12. 29., 일부개정
- 소년법, 법률 제13524호, 2015.12.1., 일부개정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 신지혜, 강현아. (2017). 가정외보호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을 매개로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8, 77-102.
- 신혜령. (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1, 90-124.
- 아동권리보장원. (n.d.-a). **“자립지원시설 현황”**, <http://www.ncrc.or.kr/jarip/info/jaripFacility.do>에서 2020.08.21. 인출
- 아동권리보장원. (n.d.-b). <http://ncrc.or.kr/jarip/info/jaripOrgan.do>에서 2020.6.26. 인출
- 아동복지법. 법률 제16248호. (2019).
- 아동복지시설 현황. (n.d.). http://www.adongbokji.or.kr/adong/html/news_view.asp?num=60602703398793&page=1&keyword1=&keyword2=&cate=4&PB=보건복지부발간자료&mode=에서 2020.08.21. 인출
- 여성가족부. (2019a).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9b). **내부자료**.
- 여성가족부. (2019c).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 내부자료**.
- 여성가족부. (2019d). **청소년쉼터 운영매뉴얼**.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9e).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매뉴얼**.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0). **내부자료**.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2020.9.1.). 여성가족부 2021년 예산안, 전년 대비 5.3% 증액된 1조 1,789억 원 편성.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87에서 인출.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2017.07.31.), **“(2017-08)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http://www.mogef.go.kr/io/ind/io_ind_s044d.do?mid=info310&bbtSn=703125에서 2020.08.12.에 인출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과. (2020.5.11.). ‘육성과 수련’의 대상에서 ‘성장과 체험’의 주체로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7&bbtSn=707012에서 인출.

우수명, 정지원, 김재환. (2020). 증장기شط터 내 청소년간 사회적지지 네트워크가 자립의지와 자립역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7(4), 23-41.

이경상, 안선영, 곽수민, 유동훈, 반호준. (2009).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KYPS) VII: 1-6 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 김기현, 임희진, 오소연, 소용준, 김유미. (2007).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KYPS) V: 조사개요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상정, 류정희, 임정미, 이주연, 노혜련, 변미희. (2018). **아동보호체계 강화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2019a).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정희선. (2019b).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주거 지원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및 효과성 연구**. 세종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애, 이화조, 정익중. (2017). 가정외보호 퇴소 아동의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가 자립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지역과 세계**, 41(1), 181-207.

이정애, 정익중. (2018).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위험요인이 자립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5(3), 95-126.

- 이정애, 정익중. (2020).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의 건강관련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아동복지학**, 69, 81-109.
- 이재완. (2018).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7, pp.35~73.
- 장정은, 전종철. (2018). 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초기 자립경험. **청소년복지연구**, 20(2), 95-125.
- 장주현, 김정애. (2015). 퇴소를 앞둔 중장기 쉼터입소 가출청소년의 퇴소준비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연구. **청소년학연구**, 22(8), 1-24.
- 장혜림, 정익중. (2017). 가정외보호 퇴소 대학생의 생활경험. **청소년복지연구**, 19(2), 47-80.
- 전미숙, 김형모. (2017). 쉼터이용 청소년의 생태체계적 요인이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5), 231-253.
- 정문진, 김수정. (2016). 쉼터 청소년 자립준비 경험 연구. **사회과학연구**, 42(1), 177-207.
- 정선옥, 강현주, 김진숙, 정익중, 김지은, 임혜리. (2019).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 세종: 보건복지부, 서울: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정연정. (2015). 그룹홈 아동의 자립기술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9, 117-151.
- 정영철, 이아리, 류정희, 이기호, 유용덕, 김경준. (2014). **아동친화적 아동보호 체계 지원을 위한 정보관리방안 마련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혜옥, 손병덕. (2018). 아동양육시설 중도퇴소 청소년의 자립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청소년학연구**, 25(5), 291-315.
- 제철웅. (2020).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법학논총**, 37(1), 339-371.
- 조규필, & 정경은. (2016).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 분석: 두드림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3), 267-292.

중앙아동청소년자립통합사업단. (n.d.-a). **“사업단 소개”**, <http://www.adongbokji.or.kr/jarip/html/3.asp>에서 2020.08.21. 인출

중앙아동청소년자립통합사업단. (n.d.-b). http://www.adongbokji.or.kr/adong/html/3_4.asp에서 2020.6.26. 인출.

진선미, 이주연, 주보라. (2016).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최경옥, 김수정. (2018). 그룹홈 퇴소 청소년의 자립준비과정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사회과학연구**, 44(3), 211-245.

최경옥, 김재환, 김형태. (2019). 증장기 쉼터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퇴소 여자 청소년의 목소리. **학교사회복지**, 48, 45-77.

최은숙, 이태연. (2015). 시설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2(7), 445-468.

한국아동복지협회. (n.d.). **“삼성희망디딤돌센터 사업개요”**, [http://www.adongbokji.or.kr/adong/html/3_4.asp?PB=%BA%B8%C8%A3%C1%BE%B7%E1%BE%C6%B5%BF%C3%BB%BC%D2%B3%E2%C0%DA%B8%B3%C5%EB%C7%D5%C1%F6%BF%F8%BB%E7%BE%F7\(%BB%EF%BC%BA%C8%F1%B8%C1%B5%F0%B5%F5%B9%BC%BE%5%CD](http://www.adongbokji.or.kr/adong/html/3_4.asp?PB=%BA%B8%C8%A3%C1%BE%B7%E1%BE%C6%B5%BF%C3%BB%BC%D2%B3%E2%C0%DA%B8%B3%C5%EB%C7%D5%C1%F6%BF%F8%BB%E7%BE%F7(%BB%EF%BC%BA%C8%F1%B8%C1%B5%F0%B5%F5%B9%BC%BE%5%CD)에서 2020.09.01. 인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n.d.). https://www.kyci.or.kr/userSite/Local_recovery/list.asp?basicNum=1에서 2020.6.26. 인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19). **가정 밖 청소년 가출뎀 과정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허민숙. (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황정하, 박수지. (2017).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자립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4(9), 119-143.

Alvord, M. K., & Grados, J. J. (2005). Enhancing resilience in children: A proactive approach.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 practice*, 36(3), 238.
- Bandura, A. (2010). *Self-efficacy*. The Corsini encyclopedia of psychology, 1-3.
- Brandford, C., & English, D. (2004). *Foster youth transition to independence study*. Seattle, WA: Office of Children's Administration Research,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 Cantril, H. (1965). *Pattern of human concerns*.
- Caspi, A., Wright, B. R. E., Moffitt, T. E., & Silva, P. A. (1998). Early failure in the labor market: Childhood and adolescent predictors of unemployment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424-451.
- Centerpoint. (2018). *Making Homeless Young People Count: The Scale of Youth Homelessness in the UK*. retrieved from <https://centrepoint.org.uk/media/3069/making-homeless-young-people-count.pdf> 2020.09.01.
- Coalition for the Homeless. (2019). *Louisville, Kentucky's Coordinated Community Plan to Prevent and End Youth Homelessness*. retrieved from <https://louhomeless.org/wp-content/uploads/2019/03-/Louisville-Coordinated-Community-Plan-to-Prevent-and-End-Youth-Homelessness-FINAL.pdf> 2020.11.01.
- Collins, M. E., Spencer, R., & Ward, R. (2010). Supporting youth in the transition from foster care: formal and informal connections. *Child welfare*, 89(1).
- Courtney, M. E., Stagner, M. W., & Pergamit, M. (2013). *Multi-site Evaluation of Foster Youth Programs(Chaffee Independent Living Evaluation Project), 2001-2010. User's guide and codebook*. National Data Arch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

Bronfenbrenner Center for Translational Research Cornell University.. Ithaca : New York.

Department for Education. (2015, July 17). *Care Leavers' Transitions to Adulthood*. National Audit Office. retrieved from <https://www.nao.org.uk/wp-content/uploads/2015/07/Care-leavers-transition-to-adulthood.pdf> 2020.11.01.

Department for Education. (2019, December 5). *Children looked after in England including adoption: 2018 to 2019*. GOV.UK. retrieved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50306/Children_looked_after_in_England_2019_Text.pdf 2020.12.01.

Department for Education. (2020a, September 24). *Statistics: looked-after children*. GOV.UK.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statistics-looked-after-children> 2020.09.2.5.

Department for Education. (2020b). *Looked after Children in Independent or Semi-independent Placements*. retrieved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64075/Looked_after_children_in_independent_or_semi-independent_placements_Feb_2020.pdf 2020.11.01.

Dion, M., Kleinman, R., Kauff, J., & Dworsky, A. (2014). *The Family Unification Program: A Housing Resource for Youth Aging Out of Foster Car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retrieved from https://www.huduser.gov/portal/publications-/Supportive_housing_for_youth.pdf 2020.11.01.

Dworsky, A., Dillman, K., Dion, M., Coffee-Borden, B., & Rosenau, M. (2012). *Housing for Youth Aging Out of Foster Care: A Review of*

- the Literature and Program Typology*.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retrieved from https://www.huduser.gov/portal/-/publications/pdf/HousingFosterCare_LiteratureReview_0412_v2.pdf 2020.09.01.
- Family & Youth Services Bureau. (n.d.). *Runaway & Homeless Youth Program Fact Sheet*. retrieved from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fysb/rhy_factsheet_043018_508.pdf 2020.11.01.
- Fernandes-Alcantara, A. (2019). *Youth Transitioning from Foster Care: Background and Federal Program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trieved from <https://fas.org/sgp/crs/misc/RL34499.pdf> 2020.11.01.
- Heselwood, L., Farhan, I., & Shilson-Thomas, A. (2019). *Preventing Youth Homelessness: An Assessment of Local Approaches*. retrieved from <https://1library.net/document/1y9gwjqg-preventing-youth-homelessness-an-assessment-of-local-approaches.html> 2020.09.01.
- Homeless Link. (2015). *Young & Homeless 2015*. retrieved from <https://www.homeless.org.uk/sites/default/files/-/site-attachments/201512%20-%20Young%20and%20Homeless%20-%20Full%20Report.pdf> 2020.12.01.
- Homeless Link. (2017). *Support for Single homeless People in England: Annual Review 2017*. retrieved from https://www.homeless.org.uk/sites/default/files/site-attachments/Annual%20Review-%202017_0_0.pdf 2020.11.01.
- Homeless link. (2018). *Young & Homeless 2018*. retrieved from <https://www.homeless.org.uk/sites/default/files/site-attachments/Young%20and%20-Homeless%202018.pdf> 2020.11.01.

- Homeless Link. (2019). *Support for People Experiencing Single Homelessness in England: Annual Review 2019*. retrieved from <https://www.homeless.org.uk/sites/default/files/site-attachments/Single%20-Homelessness%20Support%20in%20England%20-%20Annual%20Review%202019.pdf> 2020.06.21.
- HUD Exchange. (2020). *CoC System Performance Measures Data Since FY 2015*. retrieved from <https://www.hudexchange.info/resource/5691/system-performance-measures-data-since-fy-2015/> 2020.06.21.
- HUD Exchange. (n.d.). *Continuum of Care Program Eligibility Requirements*. retrieved from <https://www.-hudexchange.info/programs/coc/coc-program-eligibility-requirements/> 2020.12.01.
- Looked after children in independent or semi-independent placements*. (n.d.). Retrieved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64083/Looked_after_children_in_independent_placements.xlsx 2020.06.23.
- Morton, M., Dworsky, A., Samuels, G., & Patel, S. (2018). *Voices of Youth Count Comprehensive Report: Youth Homelessness in America*.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retrieved from <https://www.huduser.gov/portal/sites/default/files/pdf/Voices-of-Youth-Report.pdf> 2020.11.01.
- National tables: children looked after in England including adoption 2018 to 2019*. (n.d.). retrieved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50322/Children_looked_after_in_England_2019_National_Tables.xlsx. 2020.06.23.
- Office of Housing Voucher Programs. (2017). *Fact Sheet: Housing*

- Choice Voucher Program: Family Unification Program.* retrieved from https://www.hud.gov/sites/documents/FUP_FACT_SHEET.PDF 2020.11.01.
- Pergamit, M., McDaniel, M., & Hawkins, A. (2012). *Housing Assistance for Youth Who Have Aged Out of Foster Care: The Role of The 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 The Urban Institute. retrieved from <https://www.urban.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23461/412787-Housing-Assistance-for-Youth-Who-Have-Aged-Out-of-Foster-Care.PDF> 2020.11.01.
- Roberts, N., Gheera, M., Harker, R., Jarrett, T., Powell, S., & Wilson, W. (2019, October 28). *Support for Care Leavers.* retrieved from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8429/> 2020.09.29.
- St Basils. (2020). *Positive Pathway Framework: Preventing Youth Homelessness and Promoting Positive Transitions.* retrieved from https://stbasils.org.uk/wp-content/uploads/2020/01/Final-framework1-PositivePathway_A4.pdf 2020.11.01.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9). *The AFCARS Report: Preliminary FY2019 Estimates as of June 23, 2020-No.27.* retrieved from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cb-/afcarsreport27.pdf> 2020.09.29.
-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19). *HUD 2019 Continuum of Care Homeless Assistance Programs Homeless Populations and Subpopulations.* retrieved from https://files.hudexchange.info/reports/published/CoC_PopSub_NatlTerrDC_2019.pdf 2020.11.01.
-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20). *The 2019 Annual Homeless Assessment Report to Congress: Part 1*

Point-in-Time Estimates of Homelessness. retrieved from <https://www.huduser.gov/portal/sites/default/files/pdf/2019-AHAR-Part-1.pdf> 2020.11.01.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n.d.). *Ending Youth Homelessness: Guidebook Series: Promising Program Models*. retrieved from <https://files.hudexchange.info/resources/documents/Ending-Youth-Homelessness-Promising-Program-Models.pdf> 2020.12.21.

Wubbenhorst, W. (2018, August 16). *The World of Work: A Spotlight on Runaway and Homeless Youth*. HHS.gov. retrieved from <https://www.hhs.gov/blog/2018/08/016/the-world-of-work-a-spotlight-on-runaway-and-homeless-youth.html> 2020.11.01.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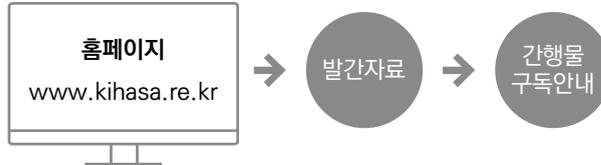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